

연구보고 2013-28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문희 이해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보육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여 왔고, 특히 2004년 이후 보육예산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정부 정책에서 보육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증대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 원년인 2013년에는 무상보육이 실현된 해로, 그 어느 때보다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크다. 여기에는 보육정책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모드와 더불어 저출산 정책으로,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으로 효과를 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그 간의 보육정책은 사업이나 예산 확대 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다. 누리과정,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양육수당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다. 보육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도 9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외향적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 보육 수요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을 동일시하는 불합리성, 불충분한 국공립어린이집 배치, 교사의 근로환경이나 처우도 아직 근본적 문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동일한 과제명으로 추진하는 과제로, 다양한 중앙 및 지방의 보육 정책들을 검토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으로 모색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며, 특히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일부 주제를 집중 검토하는 형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올해에도 정부 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심층 분석으로 전 연령층, 모든 아동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된 양육수당 제도와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수단으로 도입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가 보육정책 관계자들에게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정부, 현장 관계자 및 학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내용	8
3. 연구방법	9
4. 선행연구	13
5. 보고서 구성과 한계	17
II. 보육정책의 현황	18
1.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18
2. 보육비용 지원	32
3. 시간연장형 보육	43
4. 어린이집 평가인증	45
5. 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48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2
7.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54
8.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55
9.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56
10. 보육 재정	58
11. 주요 지표 및 소결	61
III.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63
1.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 개요	63
2. 시·도 특수보육시책	65
3.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례	73
4. 소결	74
IV. 공공형 어린이집의 모니터링과 평가	75
1. 공공형 어린이집 개요	75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과 관리의 적절성	86

3.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결과의 적절성	100
4. 부모의 인식	115
5.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 관련 의견	128
6. 요약 및 논의	132
V. 양육수당 수혜와 관련 인식	135
1. 양육수당의 수혜자 특성	135
2. 양육수당의 사용처과 영향	143
3. 양육수당 마우처 관련 논의	154
4. 정책 시사점	160
VI.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162
1. 향후 정책과제	162
2. 맺는 말	176
참고문헌	178
Abstract	181
부 록	183

표 차례

〈표 I-3- 1〉 양육수당 수혜 부모 설문조사 내용	10
〈표 I-3- 2〉 공공형 어린이집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내용	10
〈표 I-3- 3〉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대상 설문조사 내용	11
〈표 I-3- 4〉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11
〈표 I-3- 5〉 양육수당 수혜 부모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12
〈표 II-1- 1〉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사업 중앙정부 예산 현황: 2007~2013 ...	19
〈표 II-1- 2〉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 2012	19
〈표 II-1- 3〉 연도별 직장보육 설치 의무 이행률	21
〈표 II-1- 4〉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설치 의무 이행률	21
〈표 II-1- 5〉 지역별 직장보육 의무이행 및 시설 설치율	22
〈표 II-1- 6〉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유	22
〈표 II-1- 7〉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1995-2012	23
〈표 II-1- 8〉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1995-2012	24
〈표 II-1- 9〉 어린이집 공급 정원 대비 현원: 2012년	24
〈표 II-1-10〉 유치원 설치 및 원아수	24
〈표 II-1-11〉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12	25
〈표 II-1-12〉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및 비율: 2010-2011	25
〈표 II-1-13〉 시설유형별 정원과 현원 지역 분포: 2012	26
〈표 II-1-14〉 지역규모별 시설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	27
〈표 II-1-15〉 시·도 단위 어린이집 정원 비율 평균: 2012	27
〈표 II-1-16〉 보육아동 연령 분포	29
〈표 II-1-17〉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30
〈표 II-1-18〉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수	31
〈표 II-2- 1〉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3	33
〈표 II-2- 2〉 최근 연도별 지원단가	33
〈표 II-2- 3〉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2013	34
〈표 II-2- 4〉 서울시 구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액: 2013 기준	35
〈표 II-2- 5〉 연도별 영아 보육비용 구성과 규모	39

〈표 II-2- 6〉	영아기본보육료 지원 아동 규모	39
〈표 II-2- 7〉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2012	41
〈표 II-2- 8〉	연령별 사유별 보육료 지원 아동: 2012	42
〈표 II-3- 1〉	시·도별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및 제공 개요: 2012	44
〈표 II-4 1〉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인증률: 2013년 1월 기준	47
〈표 II-4 2〉	참여연도별, 설립유형별 신규인증 통과점수 현황: 2012.11.30 기준 ..	47
〈표 II-4 3〉	참여연도별, 설립유형별 재인증 통과점수 현황: 2012.11.30 기준	47
〈표 II-5- 1〉	보육교직원 자격증 취득자 현황 및 현직 종사 비율: 2012.11.30 기준	49
〈표 II-5- 2〉	원장 자격증 취득자 현황 및 현직 종사 비율: 2012.11.30 기준	49
〈표 II-5- 3〉	보육교직원 수	49
〈표 II-5- 4〉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별 수 및 비율	50
〈표 II-6-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제 특성	52
〈표 II-6- 2〉	인력 규모	53
〈표 II-7- 1〉	양육수당 지원아 수: 2012~2013	54
〈표 II-8- 1〉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 사업 예산	56
〈표 II-9- 1〉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	57
〈표 II-10-1〉	국고 지원 예산: 2008~2013	59
〈표 II-10-2〉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9~2013	59
〈표 II-10-3〉	유아교육·보육 예산: 2005~2012	60
〈표 II-11-1〉	국가 단위 보육 관련 주요 지표	61
〈표 III-1- 1〉	연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1~2013	63
〈표 III-1- 2〉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3	64
〈표 III-2- 1〉	특수보육시책 실시 개요	65
〈표 III-3- 1〉	강남구 특수보육시책: 2013년	73
〈표 III-3- 2〉	광주시 시·군·구 특수시책: 2013년	74
〈표 IV-1- 1〉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제외 기준	76
〈표 IV-1-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배점 기준	77
〈표 IV-1- 3〉	공공형 어린이집 규모별 월 지원액	80
〈표 IV-1- 4〉	공공형 어린이집 상세 정보 공개사항	81
〈표 IV-1- 5〉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기준	82
〈표 IV-1- 6〉	시·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유형: 2011~2013	83

〈표 IV-1- 7〉	지역규모별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	84
〈표 IV-1- 8〉	공공형 어린이집 정원과 현원	84
〈표 IV-1- 9〉	시설유형 및 지정 연도별 건물유형	85
〈표 IV-1-10〉	누리과정 운영 비율	86
〈표 IV-2- 1〉	신청 제외 기준 적절성	87
〈표 IV-2- 2〉	기본 신청 자격 기준 적절성	88
〈표 IV-2- 3〉	선정 점수 산정 방식의 적절성	88
〈표 IV-2- 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본 점수 적절성 개요	89
〈표 IV-2- 5〉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본 점수 적절성 응답자 차이: 5점 평균	90
〈표 IV-2- 6〉	항목별 배점 비중 적절성	91
〈표 IV-2- 7〉	항목별 적절한 배점	91
〈표 IV-2- 8〉	각 항목의 조건별 변별력 적절성 개요	92
〈표 IV-2- 9〉	각 항목의 조건별 변별력 적절성 응답자 차이: 5점 평균	92
〈표 IV-2-10〉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 항목 적절성	93
〈표 IV-2-1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 항목 적절성: 5점 평균	94
〈표 IV-2-12〉	가점 항목의 배점 적절성	95
〈표 IV-2-13〉	가점 항목의 배점 적절성: 5점 척도	95
〈표 IV-2-1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감점 항목 적절성	96
〈표 IV-2-15〉	감점 항목의 배점 적절성	96
〈표 IV-2-16〉	가점 부여에 대한 대안	97
〈표 IV-2-17〉	감점 부여에 대한 대안	98
〈표 IV-2-18〉	선정 기준 점수 80점 이상의 적절성	99
〈표 IV-2-19〉	적절한 산정기준 점수	99
〈표 IV-2-20〉	동 점수 시 우선 순서 적절성	100
〈표 IV-3- 1〉	시설유형별 기본 사항 준수	100
〈표 IV-3- 2〉	시설유형별 건물소유형태	101
〈표 IV-3- 3〉	시설유형별 연도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	102
〈표 IV-3- 4〉	시설유형별 취약보육 실시 비율	103
〈표 IV-3- 5〉	연도별 시간연장형 보육 비율	103
〈표 IV-3- 6〉	시설유형별 차량 운행 및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비율	104
〈표 IV-3- 7〉	시설유형별 석면검사 여부	104

〈표 IV-3- 8〉 시설유형별 1급 교사 비율 30% 이상 비율	105
〈표 IV-3- 9〉 시설유형별 교사 자격 급수	105
〈표 IV-3-10〉 시설유형별 교사 임용 시기	106
〈표 IV-3-11〉 시설유형별 3년 이상 근무 교사 70% 이상 비율	107
〈표 IV-3-12〉 연도별 시설유형별 평가인증 총점	108
〈표 IV-3-13〉 40인 이상 어린이집 현장관찰 평균: 2012년 평가인증	109
〈표 IV-3-14〉 39인 이하 어린이집 시설유형별 현장관찰 평균: 2013년 평가인증	109
〈표 IV-3-15〉 추가 비용 지불 특별활동	110
〈표 IV-3-16〉 특별활동 부모 선택 여부	110
〈표 IV-3-17〉 어린이집 납부 비용: 기타 필요 경비	111
〈표 IV-3-18〉 공공형 추가 비용 지불 특별활동	112
〈표 IV-3-19〉 공공형 특별활동 부모 선택 여부	112
〈표 IV-3-20〉 공공형 어린이집 납부 비용: 특별활동비	113
〈표 IV-3-21〉 공공형 어린이집 납부 비용: 기타 비용	113
〈표 IV-3-22〉 공공형 어린이집 납부 비용: 총계	114
〈표 IV-4 1〉 공공형 어린이집 인지 비율	115
〈표 IV-4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인식	116
〈표 IV-4 3〉 공공형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의 유사성	117
〈표 IV-4 4〉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가 이용 결정에 미친 영향	118
〈표 IV-4 5〉 부모의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 인식	118
〈표 IV-4 6〉 공공형 어린이집 정보 공개 인지 및 검색	119
〈표 IV-4 7〉 어린이집 정보 인지 여부 비교	121
〈표 IV-4 8〉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총 점수 및 영역별 점수 인지 여부	122
〈표 IV-4 9〉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 경력 및 전체 교사 자격 현황 인지 여부	123
〈표 IV-4-10〉 공공형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 및 급간식 식단 인지 여부	124
〈표 IV-4-11〉 어린이집 만족도 비교	125
〈표 IV-4-12〉 공공형 어린이집 특성별 만족도	127
〈표 IV-5- 1〉 운영비 차등 지급하는 방법	128
〈표 IV-5- 2〉 운영비 지원 체계 개선안	129
〈표 IV-5- 3〉 사후 관리체계 필요성	130
〈표 IV-5- 4〉 응답자 특성별 사후 관리체계 필요성: 5점 평균	130

〈표 IV-5- 5〉	공공형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가능 여부	131
〈표 IV-5- 6〉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국적 적정 분포 의견	132
〈표 IV-5- 7〉	공공형 어린이집의 민간 어린이집 대비 적정 분포 의견	132
〈표 V-1- 1〉	양육수당 신청 아동 연령 분포: 2013. 3 기준	135
〈표 V-1- 2〉	지역규모 분포: 2013. 3 기준	136
〈표 V-1- 3〉	시·도 분포: 2013. 3 기준	136
〈표 V-1- 4〉	연령별 모취업 및 소득수준 분포	136
〈표 V-1- 5〉	어린이집, 유치원 외 다른 기관 이용 여부 및 기관 종류	138
〈표 V-1- 6〉	어린이집, 유치원 외 다른 기관 이용 빈도	138
〈표 V-1- 7〉	연령별 최근 보육 관련 기관 이용 여부	140
〈표 V-1- 8〉	가구소득 수준별 기관 이용 중단과 양육수당 관계 여부	140
〈표 V-1- 9〉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이유	140
〈표 V-1-10〉	향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의사	141
〈표 V-1-11〉	향후 기관 이용 시기	141
〈표 V-1-12〉	제 특성별 수당 지급후 부모 근로시간 변동 여부	142
〈표 V-2- 1〉	제 특성별 자녀를 위한 양육수당 사용 여부	144
〈표 V-2- 2〉	연령 및 소득수준별 자녀를 위한 양육수당 사용 여부	145
〈표 V-2- 3〉	제 특성별 가장 많이 구매한 물품(1순위)	146
〈표 V-2- 4〉	연령 및 소득수준별 가장 많이 구매한 물품(1순위)	146
〈표 V-2- 5〉	제 특성별 가장 많이 구매한 물품(1+2+3순위)	147
〈표 V-2- 6〉	연령 및 소득수준별 가장 많이 구매한 물품(1+2+3순위)	147
〈표 V-2- 7〉	(돌봄 비용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제 특성별 많이 사용하는 사람	148
〈표 V-2- 8〉	제 특성별 양육 이외에 사용한 경우 사용처	148
〈표 V-2- 9〉	제 특성별 보육·교육비	149
〈표 V-2-10〉	자녀 연령별 보육·교육비 외 비용	150
〈표 V-2-11〉	제 특성별 양육수당 가계 도움 여부와 비용 지출	150
〈표 V-2-12〉	양육수당 도움에 대한 다분류 회귀분석	151
〈표 V-2-13〉	제 특성별 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152
〈표 V-2-14〉	양육수당 만족에 대한 다분류 회귀분석	153
〈표 V-2-15〉	제 특성별 (양육수당 불만족 시) 적정 금액	153
〈표 V-3- 1〉	제 특성별 양육수당 바우처 전환 시 의견	156

〈표 V-3- 2〉 연령 및 소득수준별 양육수당 바우처 전환 시 의견	158
〈표 V-3- 3〉 양육수당 바우처 전환 찬성 의견에 대한 다분류 회귀분석	159

그림 차례

[그림 IV-1-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절차	79
----------------------------------	----

부록 표 차례

〈부표 III-2- 1〉 서울시 특수보육시책: 2013	184
〈부표 III-2- 2〉 대구시 특수보육시책: 2013	184
〈부표 III-2- 3〉 부산시 특수보육시책: 2013	185
〈부표 III-2- 4〉 인천시 특수보육시책: 2013	185
〈부표 III-2- 5〉 광주시 특수보육시책: 2013	186
〈부표 III-2- 6〉 대전시 특수보육시책: 2013	186
〈부표 III-2- 7〉 울산시 특수보육시책: 2013	187
〈부표 III-2- 8〉 경기도 특수보육시책: 2013	187
〈부표 III-2- 9〉 강원도 특수보육시책: 2013	188
〈부표 III-2-10〉 충북과 충남 특수보육시책: 2013	189
〈부표 III-2-11〉 전북 특수보육시책: 2013	189
〈부표 III-2-12〉 전남 특수보육시책: 2013	190
〈부표 III-2-13〉 경북과 경남 특수보육시책: 2013	190
〈부표 III-2-14〉 제주 특수보육시책: 2013	191
〈부표 IV-1- 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과 배점	192

요 약

1. 서론

- 본 연구는 예산 사업 중심으로 중앙 및 지방의 보육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정책인 양육수당과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으로 실시되는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을 집중 검토하고자 하였음.
-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함. 핵심 인프라와 서비스의 다양성 및 질 제고 측면을 중심으로 전년도 사업 성과와 당해 연도 계획을 검토하였음.
 - 지방정부 고유의 보육 정보를 수집하여 예산 구조를 파악하고 지역별 특성을 알아봄.
 - 보육정책 중 공공형 어린이집과 양육수당 제도와 현황을 검토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육정책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 과제를 도출함.
-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연구, 설문조사,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 통계자료, 전국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보육정책 자료와 통계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 보육관계자 100명, 양육수당 수혜자 2,000명,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와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2. 보육정책 현황

- 보육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보육정책 성과 지표를 제시하였음. 주요 지표는 보육정책의 추진 방향과 성과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줌.
- 2012년 어린이집 공급률은 61.1%, 아동 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은 52.8%임.

- 아동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10% 수준에서 변동이 없음.
- 2013년 보육료 전액지원으로 무상보육을 달성함.
 -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2년 말 62.0%이고 전체 이용률은 52.4%임.
 - 보육은 영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유아 기관 이용 증가는 유치원으로 집중됨.
 - 특별활동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어린이집의 24.8% 정도가 시간연장형 보육에 참여하고, 총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아동 수는 전체 보육아동의 약 3.2%에 지나지 않음.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2013년 6월 현재 통과 비율은 85.1%이나 유지율은 68% 수준임. 평가인증 상세 정보 공개는 2013년 중요한 성과임.
- 보육교사 월 수당이 누리과정 확대 및 영아 교사 수당 증액으로 개선되었음.
- 보육정보센터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고 시·군·구 센터 16개소 설치비를 지원함.
- 양육수당의 전 계층, 전 연령 확대로 수혜자가 28%로 증가하였음.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었고, 2013년 공동아이 돌봄센터 36개소를 설치함.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49,000여 가구가 수혜를 받으며 돌보미는 2012년 10월 11,376명이 활동 중이고, 신규양성 목표는 2013년 8,720명임.
- 보육예산은 국고지원사업 8조 3,400억원, 누리과정 지방재정교부금 7,008억으로 총 9조 400억원 정도가 됨.
 - 유아교육 예산 2조 6500억원을 추가하면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은 모두 12조 규모로 GDP 대비 0.9 정도로 추정됨.
- 국고 지원사업 이외에 각 지방정부가 특수시책사업을 실시함.
 - 시·도와 시·군·구 특수사업 예산은 각각 5,947억원, 4,416억원으로 총 1조를 조금 넘어서 국고 지원사업비 8조 3,400억원의 약 12%를 차지함.
 - 지역 차이가 커서 서울시는 국고 지원사업비의 35%를 추가로 사용함.

3. 재정 지원 사업 검토

가. 공공형 어린이집

- 전문가와 부모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및 선정 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아졌음.
 - 기본 항목에서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84%로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자격 하한선을 두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졌음.
 - 배점을 20점으로 30점으로 대폭 조정한 1급 보육교사 비율 항목의 경우, 2년 전보다 변별성이 높다는 응답이 늘어났음.
 - 그러나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로 보는 항목은 변별성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20% 정도로 나타났음.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어린이집 중 10% 이상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사용하여 준수 요건에 미달되었음.
 -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실내공기 질 측정 비율이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을 필요로 함.
- 국공립어린이집보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 시 특별활동을 더 많이 하고, 특별활동비도 더 많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별활동 선택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의무 수강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수강 비율보다 높았음.
-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나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인지율은 높았으나,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인지율은 낮았음.
 -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임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약 95%에 달하였고, 보육료가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함과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80% 이상이었음.
 - 반면 아이사랑 보육포털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은 60% 미만이었고, 한 번도 검색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약 70%에 달했으며, 특히 평가인증 관련 정보 인지율은 낮았음.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인지율보다는 높았음.

- 어린이집 원장, 교사, 주변환경 등 어린이집 각 항목의 만족도는 대부분 5점 만점에서 4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 비용과 급간식 관리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주변 환경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음.
- 전문가들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을지 묻는 문항에서 3/4 정도가 대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다만 운영비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에서 반 수에 따른 차등 지원, 구간 세분화, 구간 지원금 상향 조정 순으로 체계 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음.

나. 양육수당

- 양육수당 수혜 부모 조사와 간담회 결과의 요약 및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양육수당 대상은 대부분 영아임. 12개월 미만 46.0%,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0.2%,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0.3%로 영아가 86.5%이고, 나머지 13.5% 정도만이 유아임.
- 대다수가 양육수당을 자녀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별도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음을 나타냈음.
 - 수혜자의 90% 정도는 전액을 자녀에 사용하고, 8%는 일부를 자녀에게 사용하며 2.5%는 구분없이 가계지출에 사용한다고 하였음.
- 소득계층이나 어머니의 취업 관련된 양육수당의 영향 가능성은 여전함을 나타내어서 향후 정책 추진 시 민감한 대응이 요구됨을 시사하였음.
 - 연령이 어릴수록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수혜 비율이 높음.
 - 양육수당 수혜 후 부모가 일을 그만 두었다는 비율이 14.7%이고 일을 줄였다는 비율이 3.2%임. 특히 0세아 부모는 22.7%가 일을 그만 두고 5.9%가 일을 줄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 지원 수준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도나 만족도가 높음. 제도 도입 초기 조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일단 정책적 성과는 거두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양육수당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70% 정도가 되고, 7%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음. 양육수당 금액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56.2%로 높았음.
- 현금 지원인 양육수당을 바우처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85.5%가 반대하였으나 만약에 제도가 도입된다면 구입 불가 항목 제한 방식을 선호하였음.

4. 정책방향

-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정책방향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침 준수 및 기타 경비 부담 해소 조치를 강화함.
 -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점차 현실화함.
 - 저소득층 아동에 기타 필요경비 지원 검토하여 우선 순위 항목을 설정함
 - 지방정부 분담 부담 완화 조치를 강구하고 지방 정부 중복 지원을 조정함.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
 - 일하는 부모 우선 보육 지원체계를 마련함.
 - 이용시간 개념을 도입하고 서비스 시간 유형을 다양화함.
 - 자녀양육 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함.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육아종합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적 형평을 도모함.
 - 거점형 등 일시보육 체계를 구축함.
 - 아이돌봄 인력 접근성을 제고하고 자격을 관리함.
- 양육수당 관련 정책방향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저소득층 영아에게서 보육서비스 대체효과가 부분적으로 작동하겠으므로 양육수당의 정책 대상을 0, 1세로 제한하고 유아로의 확대는 금지함.
 - 수당 금액은 부작용 발생 최소화 수준에서 다소 증액함.
 - 바우처와 현금 지원은 제도 성격이 다르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비용이 들므로 현금 지원 방식을 유지함.
- 보육 인프라 공급

- 국공립어린이집 전국 균형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자 다수가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함.
- 공공형 어린이집은 운영비 지원 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클린카드 사용, 운영 시설 제한, 특별활동 지침 준수, 1시설 1계좌 사용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이 꾸준히 실시되어야 함.

□ 보육서비스 품질

- 건물 자가, 부채 비율 등 민간어린이집 설치 조건을 강화함.
- 평가인증제도는 의무신청제나 평가제도로 전환하여 보육비용 지원과 연계를 강화함.
- 과정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사 지원을 강화함.

□ 보육교사 전문성

- 당분간 대체교사 수를 증가시켜 연가 이외에 교육이나 단기휴가 등에도 활용하고, 보조교사 제도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1개반 1교사 제도에서 탈피하여 보조교사 또는 종일제 교사 추가 인력 배치와 더불어 이용시간 체계를 개편함.
- 보육교직원 교육 및 경력 관리 전산체계를 구축함.
- 보육인력 자격체계를 개편하고, 급여 수준을 조정함.

□ 점검의 실효성 제고

-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어린이집 기본정보 공개를 의무화함. 이외에도 외부 사업체와의 계약 관련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을 촉진함.
-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 어린이집 재무회계 보고 자료를 추출하여 점검하고, 더불어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함.
- 평가인증, 부모모니터링, 아이사랑모니터링, 행정 담당자 지도 점검 등의 여러 가지 종류의 점검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전반적 운영 체계를 개선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4년부터 추진된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정책은 2013년 정부가 책정한 지원금 전액을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전액지원으로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2012년도 만5세아 누리과정을 도입하였고, 2013년에 3, 4세로 확대되었으며,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시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0년 0~2세 저소득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한 양육수당이 2013년부터 전연령 전계층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영유아에 대한 투자 확대로 소요되는 총 예산은 GDP 대비 1%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의 공급이 시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주요 과제가 된다.

또한 각 지방정부마다 별도의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 이외에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지방정부 정책들을 연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여건이 좋은 지방정부 정책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간 격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아울러 양육수당과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모가 두 가지 중에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는 파악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고, 지원 수당의 합목적적 사용 관점에서 제기된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2013년부터 새로운 정부 하에서 새로이 제시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중장기 보육 플랜을 마련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요청된다. 특히 새 정부가 민간어린이집 질 제고 방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성과 분석도 필요하다.

2009년부터 동일한 과제명으로 추진하는 본 연구¹⁾는 다양한 중앙 및 지방의

보육 정책들을 검토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으로 모색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며, 특히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보육료 지원 대체로 제공되는 양육수당,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으로 실시되는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을 집중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당해 연도 보육사업을 검토하고 변화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기본 통계를 생산하여 사업별로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여 향후 바람직한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과제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정책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 검토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검토한다. 핵심 인프라와 서비스의 다양성 및 질 제고 측면을 중심으로 전년도 사업 성과와 당해 연도 계획을 검토하였다. 어린이집 공급 및 설치 관련 정책, 보육료 지원정책, 교사 인건비 등 교사 관련 지원정책, 평가인증 등 질 관리 정책 등 예산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문제점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둘째,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을 검토한다.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고유의 보육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시·군·구 보육 공급 및 이용률을 산출하여 지역간 보육 공급과 이용 차이를 파악하였다.

셋째,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정 지원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 정책으로 중앙정부가 2011년부터 실시한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부모 대상 자녀양육 지원 정책으로 정부가 2011년부터 실시하여 2013년에 전계층, 전연령으로 확대한 양육수당 제도의 수혜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지원금의 합목적적 사용을 근거로 제기된 바우처로의 지원 방식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육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일반과제로 5년 한시적으로 매년 연속하여 추진하는 과제임.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함.

3. 연구방법

가.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보육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보건복지부 12월말 보육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2012년 동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와 동일한 자료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나. 행정기관 자료 분석

전국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보육정책 자료와 통계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다. 자료 수집은 부분적으로는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일부는 부처가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의 제 특성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시행하는 1,056개 어린이집의 운영 특성 자료를 수집하여 선정결과의 적절성 평가에 사용하였다.

다. 설문조사

양육수당과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모와 어린이집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양육수당 수혜 부모 전화조사

양육수당 지원의 실태, 성과 및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규모는 양육수당 수혜 부모 2,000명이다. 표본은 전국 양육수당 수혜자를 아동연령별로 비례 배분하고 이를 다시 시·도와 대도시의 동, 중소도시의 동, 읍·면으로 층화하여 비례 배분하였다.

조사 내용은 양육수당 선택 동기 및 배경, 기관 및 개인 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 양육수당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및 요구, 양육수당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 및 요구, 양육수당 지원금 사용처 및 바우처 방식으로의 전환 관련 의견 등이다(표 I-3-1 참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2013년 3월 25일

기준 양육수당 수혜자를 각 집단별로 5배수 표본을 추출하여 제공하였다. 조사는 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부모 조사의 결과 분석은 교차분석, 집단간 평균 차이 분석 및 다분류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3-1〉 양육수당 수혜 부모 설문조사 내용

구분	문항
일반 특성	- 부모 연령, 취업 특성, 가구소득 등 - 가족 유형
양육수당 관련 실태 및 의견	- 서비스 이용 대신 양육수당 선택 배경 - 양육수당 사용처 - 만족도 및 금액의 적절성 - 양육수당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에 대한 의견 - 양육비 수준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및 계획	- 양육수당 수혜 이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 - 현재 기관, 개인 서비스 등 이용 여부, 비용 등 실태 - 향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의사
부모에 미치는 영향	- 취업 등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2)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보육 관련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에 대한 관련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1-3-2〉 공공형 어린이집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문항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자격 기준의 적절성	- 신청 제외 자격 내용 - 기본적인 신청 자격 기준의 적절성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의 적절성	- 기본적인 선정 기준의 적절성 - 선정기준 및 세부 항목별 점수 배점의 적절성 - 선정기준 세부 항목의 가점배점의 적절성 - 선정점수 산정 방식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운영비 차등 지원 방식의 적절성 - 운영비 지원 체계 개선안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체계	- 사후 관리체계의 적절성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 관련	- 국공립 어린이집 대체 가능성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가능성 - 공공형 어린이집 적정 개소수

조사 내용은 비용 지원 및 기준, 방식 등 제도의 적절성 및 기대하는 효과성,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의 필요성, 정책방안 등이다(표 I-3-2 참조).

조사는 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전자 메일을 이용한 웹조사로 실시한다.

3) 어린이집 이용 부모 의견조사

공공형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 정도 등을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조사 시기는 2013년 9월 동안이었다.

조사 내용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전반적인 의견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지 및 인식 등이었다(표 I-3-3 참조).

〈표 I-3-3〉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문항
어린이집 관련 전반적 의견	- 어린이집 정보 인지 여부 - 어린이집 만족도 - 특별활동 관련 비용 및 부모 선택여부
공공형 어린이집 인지 및 인식	- 공공형 어린이집 인지 여부 -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표 I-3-4〉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구분	국공립		공공형		단위: %(명)
	구분	국공립	공공형	구분	
성별					
남아	50.8	51.3	거주 지역		
여아	49.2	48.7	대도시	26.0	32.4
영유아 구분			중소도시	52.8	45.1
영아	37.4	44.0	읍면	21.2	22.5
유아	62.6	56.0	현재 이용 기관		
아동 연령			국공립어린이집	100.0	-
0세	2.2	4.3	민간어린이집	-	90.8
1세	13.2	14.8	가정어린이집	-	9.2
2세	22.0	24.9	어린이집 다닌 기간		
3세	23.5	23.2	1년 미만	37.1	36.3
4세	20.7	18.1	1년~2년	43.7	47.8
5세	18.4	14.7	3년 이상	19.2	15.9
계(수)	100.0(1,000)	100.0(1,000)	계(수)	100.0(1,000)	100.0(1,000)

설문대상 아동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유아가 많고,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영아가 상대적으로 많다(표 I-3-4 참조).

라. 심층 면담

2013년 3~4월, 양육수당 수혜 부모 2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자는 각 지역의 보육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역별로 배분하여 선정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인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어머니의 특성을 보면 대체로 미취업이고 3월 이전부터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던 부모도 일부 있었다(표 I-3-5 참조).

〈표 I-3-5〉 양육수당 수혜 부모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지역	번호	아동 월령	출생순위	형제 연령	모 연령	모 취업상태	수혜시기
대전	A	10개월	첫째	형제 없음	29세	미취업	3월 신규
	B	8개월	둘째	4세	31세	시간제 취업	3월 신규
	C	4개월	첫째	형제 없음	41세	미취업	3월 신규
	D	4개월	셋째	10세, 8세	31세	전일제 취업	3월 신규
	E	8개월	둘째	5세	33세	미취업	3월 신규
평택	A	15개월	둘째	6세	30세	미취업	기존 수혜자
	B	9개월	둘째	8세	34세	미취업	기존 수혜자
	C	9개월	둘째	5세	40세	휴직 중	3월 신규
	D	11개월	셋째	8세, 5세	31세	미취업	3월 신규
의정부	A	28개월	넷째	고등학생	41세	미취업	기존 수혜자
	B	22개월	첫째	형제 없음	42세	미취업	기존 수혜자
	C	49개월	첫째	3세	36세	휴직 중	수혜 예정(4월)
	D	23개월	첫째	형제 없음	28세	미취업	3월 신규
인천	A	14개월	첫째	형제 없음	33세	미취업	기존 수혜자
	B	39개월	둘째	8세	35세	미취업	3월 신규
	C	20개월	첫째	형제 없음	39세	미취업	기존 수혜자
	D	9개월	첫째	형제 없음	33세	미취업	3월 신규
서울	A	7개월	둘째	4세	31세	미취업	3월 신규
	B	8개월	둘째	4세	34세	미취업	기존 수혜자
	C	25개월	첫째	둘째 임신	29세	미취업	기존 수혜자
	D	13개월	둘째	4세	32세	미취업	3월 신규
	E	9개월	셋째	6세/4세	35세	미취업	3월 신규
서울	A	16개월	첫째	형제 없음	33세	미취업	3월 신규
	B	16개월	첫째	형제 없음	32세	미취업	3월 신규
	C	15개월	첫째	형제 없음	30세	미취업	3월 신규
	D	16개월	첫째	형제 없음	35세	미취업	3월 신규

면접 내용은 기관 이용 사항, 양육수당 사용 관련 사항으로 사용처, 양육수당 만족도, 바우처 전환에 대한 찬반 의견, 바우처로의 전환을 가정할 때 구체적인 전환 방식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다.

마. 자문회의 및 간담회

과제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지표 및 조사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집 원장, 교사, 부모,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각 집단별 그룹 면담을 실시하여 의견을 파악하였다.

4. 선행연구

가.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육정책들을 검토하여 기초 통계를 산출하고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정책 발전 가능성으로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2010년(서문희·최혜선, 2010), 2011년(서문희·최윤경·김문정, 2011), 2012년(서문희·김혜진, 2012)에 추진되었고, 2013년이 4차년도 연구이다.

2010년에는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예산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어린이집 공급 및 설치 관련 정책, 차등 지원 및 만 5세아 전액지원 등 보육료 지원 정책, 교사 인건비 등 교사 관련 지원정책, 프로그램 및 평가 등 질 관리 정책 등 각종 예산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문제점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고유의 특수시책사업을 수집·분석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특수보육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효과성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심층분석 주제는 서울형과 부산형 공인 어린이집 제도였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자 하였던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포함한 보육정책의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2011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시 선정 기준 마련 등 정책 추진에 활용되었다.

2011년에도 중앙정부와 부모모니터링 등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였다. 2010년 연구와의 연속선상에서 동일한 지표를 산출하여 변화

추이를 제시하였다. 2010년 연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점은 아이돌보미 등 보건복지부 이외 보육관련 사업을 포함시켰으며 지방정부 정책으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2011년도 심층분석 주제는 중앙정부 정책 중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로, 공공형 지정 어린이집 선정 관련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안 등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제시된 방안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이나 지원 수준 등 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가 되었다.

2012년도에는 중장기 아이사랑 플랜(2009~2012년)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하고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을 검토하였으며, 전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보육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로 구성하였다. 중장기 아이사랑 플랜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전문성 관련 정책이 가장 미진하였다고 보고, 이후의 정책은 보육교사 전문성과 처우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심층 분석 과제로는 영아 양육수당 제도,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평가, 평가인증제도 운영 체계의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나. 주제별

보육 정책의 성과나 모니터링 관련 연구는 2000년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보육비용 지원과 양육수당, 공공형 어린이집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육 비용 지원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변용찬, 서문희 그리고 이상현(2001)은 부모 보육료 지원제도를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규모, 전달체계 등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적절성, 효과성, 형평성, 책임성 6개의 영역별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대상선정 기준, 지원 수준, 지원 방식 등은 적절성이 낮고, 형평성 차원에서는 지역별 시설유형별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문희와 이상현(2001)은 시설별 보육재정 지원에 대하여 전체 사업 및 구체적인 세부사업별로 적절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차원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평가하여,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적절성 및 형평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 보육 및 양육 비용 지원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안재진·최혜선·소마 나오코, 2009)에서 232개 지방정부 특수시책과 보육서비스 이용이나 출산율과의 관계를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여 다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이 해당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다자녀 가구 양육수당이나 출산 수당이 해당 출생순위 아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KDI(조병구·조윤희, 2007)는 2006년에 도입된 영아 기본보조금²⁾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영아 기본보조금이 일부 어린이집에만 적용된다는 사실과 도입 전후의 자료가 있음을 이용하여 준 실험적(Quasi-experimental)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영아 기본보조금은 어린이집들 중 규모가 작고 영아보육에 특화해왔던 가정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켜 프로그램도 늘리고, 교사 대 아동비율도 준수하게 하며, 교사에 대한 처우도 향상시키는 등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러한 보조금을 바라고 시장에 진입하는 어린이집의 다수가 가정어린이집이라는 점이 시사하듯이 영아 보육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가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아 기본보조금은 아동 모의 노동시장 참여나 어린이집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소득 1~2분위 가구의 부담을 줄여 주었으나, 전체 보육비용 측면에서 보면 소득 3~5분위의 보육비 지출을 현저하게 늘렸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어린이집 운영 개선과 교사 급여 상승 효과는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부모 만족도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된다는 증거는 희박하였다고 보고하였다(서문희·최혜선, 2007).

2) 양육수당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초기인 2011년, 그리고 대상과 지원 수준이 확대된 2012년에 모니터링이 실시되었다. 주로 정책 만족도와 비용 수준 중심의 요구도와 향후 의견 등이 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연구(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 2011)는 양육수당 제도의 성격과 특성, 한계를 규명하고, 단기적으로는 대상과 지원수준의 단계적 확대, 중장기적

2) 이후 기본보육료로 명칭이 변경됨.

으로는 아동수당으로의 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2012년 연구(서문희·김혜진, 2012)는 영아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육수당 수혜자 증 지원액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15% 수준이었고, 적정한 양육수당 금액에 대해서는 30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둘째, 양육수당 미수혜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비용이 증가할 경우에 양육수당을 받을 생각에 대해서는 각각 4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자도 지원 수준을 약간 확대할 경우 영아만 4.5% 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육료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23.9%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였다. 아이를 직접 돌보겠다는 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33.8~13.5%로 나타나서 지원 수준을 크게 올릴 경우에 저소득층 아동의 기관 이용 기회 박탈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3) 공공형 등 공인 어린이집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최혜선, 2010)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과 부산 공인 어린이집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비하여 부산 공인 어린이집의 선정 조건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1년(서문희 외, 2011)에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선정 기준, 지원 수준,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 서울형 등 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연구로는 김재환(2009)이 서울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평가에 대한 원장과 보육교사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로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 질적 향상 및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준의 체계성과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정부 평가인증과의 중복성, 공인 제도 주요 운영체계 등 기타 개선점이 요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제갈현숙과 김송이(2010)가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공보육 확대를 위한 원칙이라는 제목 하에 공인 과정, 프로그램 변화, 보육교사 노동조건 등은 검토한 결과, 부분적으로 성과도 있으나 여러 가지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민간 어린이집임에서 오는 문제는 여전히 것으로 평가하고 공인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5. 보고서 구성과 한계

본 연구는 전년도의 보육사업의 성과와 당해 연도의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변화되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정책연구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된 과제이다. 2011년도부터 추진하는 과제로 이번이 네 번째이다.

제2장은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보육사업 중심으로 주제별로 나누어 전반적 상황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때문에 각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한계가 있다. 검토한 주제는 각각이 하나의 독립된 연구 주제가 될 정도로 범주가 넓어서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통계의 수록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 보육통계는 매년 말에 보건복지부가 공표하고, 또한 매 3년 마다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통계를 생산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이들 자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정책제언도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구조적 관점에서 정부 추진 사업의 개선 요구 등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심층 검토 주제 중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제도 개선을 거쳐 2013년에 본 사업으로 전환한 과제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된 현실 속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지향하면서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양육수당 역시 2013년에 전 계층,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상반기에는 바우처로의 지원 방식의 전환 논의가 이루어지며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바 있어서 정책 모니터링 요구가 높았다.

II. 보육정책의 현황

제2장에서는 2012년 보육 통계 자료와 2013년 정책 및 예산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 주요 보육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의 정책 개선방안 모색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 설치와 이용, 보육료 지원, 보육재정, 시간연장형 보육사업, 평가인증제도와 보육인력의 문제를 살펴보고, 기관 미이용 자녀 양육수당을 포함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지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을 검토하였다.

1.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현재 개인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인가제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전상담제도를 두어서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시·군·구가 어린이집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설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하위법령으로 정한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2년부터는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인가조건을 강화하였다.³⁾

제1절에서는 어린이집 설치와 이용 측면은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을 분석하고⁴⁾, 이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현황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영유아보육법상 공립 어린이집은 시·군·구의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공립어린이집 건축은 시·군·구 소관업무인데, 국비지원은 건축비, 기자재구

3) 부채비율은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된 금액/등기부 등본상의 어린이집 토지·건물 등의 가액 * 100임(2012년 8월 17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4) 시·군·구 단위 분석은 부록 1에 제시함.

입비에 한한다. 건축비 부담비율은 중앙, 시·도, 시·군·구가 50:25:25이다.⁵⁾ 건축비 지원 어린이집 규모는 개소당 330㎡기준이며 최대 396㎡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2013년 1,201,300원/㎡으로 국고 최대 지원금은 2억 3,785억원이다.

2005년 이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오다가⁶⁾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다소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신축이 전년도 10개소에서 75개소로 증가하였다. 리모델링 19개소와 장애아전담시설은 2개소는 전년도와 동일하다(표 II-1-1 참조).⁷⁾

〈표 II-1-1〉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사업 중앙정부 예산 현황: 2007~2013

단위: 백만원, 개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공립	예산	20,216	9,910	7,532	1,982	1,982	1,982	14,865
	신축 개소수	112	50	38	10	10	10	75
리모델링	예산	4,925	950	1,050	475	475	475	475
	개소수	237	38	42	19	19	19	19
장애아 전담	예산	2,166	713	476	238	238	476	476
	신축 개소수	10	3	2	1	1	2	2

자료: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표 II-1-2〉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 2012

단위: 지역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동	30	1	7	-	-	3	2	1	-	6	-	-	-	2	3	3	1	1
읍면	423	-	-	1	9	-	-	3	1	11	25	29	37	63	76	87	81	-
계	453	1	7	1	9	3	2	4	1	17	25	29	37	65	79	90	82	1
2011	474	2	7	-	10	3	1	4	-	18	25	32	53	64	79	93	82	1
2010	471	2	5	1	10	3	2	5	-	18	25	32	41	67	81	96	82	1
2009	500	4	9	3	23	4	2	8	-	26	42	70	90	132	162	205	172	1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한편, 농어촌 소규모어린이집 설치 사업으로 정부는 2009년부터 영유아 수가 소수인 산간, 도서, 농어촌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장난감, 교재교구를

-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가능함.
- 6) 이명박 정부 중장기 보육계획인 아이사랑 플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지역의 보육수요 충족으로 한정하고 예산 규모를 축소하였음.
- 7)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공공형을 포함하여 공공 어린이집이 아동의 30%를 보육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에서 비롯됨.

실은 차량이 해당 지역에 찾아가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을 2012년까지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30개 동 423개 읍·면으로 총 453개였던 2011년 대비 21개 소가 감소하였다(표 II-1-2 참조).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남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으로,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1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산업단지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7월 지침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근로자 밀집 주거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정원의 1/3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 자녀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교재·교구비 등 지원요건은 현행 조건을 유지하여 정원의 1/3 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이거나,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1/4 이상이면서 피보험자(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 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준다.⁸⁾ 또한 무상 지원으로 시설전환비 및 유구비품비를 지원한다.⁹⁾

2012년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919개소이다. 이 중에서 74.3%인 683개소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설치는 52.6%인 359개 사업장이고 그 외는 보육수당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위탁하는 형태로 대신하고 있다.¹⁰⁾

8) 융자금은 최고 7억원이며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에 대출금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연 1.0% 대기업 연 2.0%이다.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됨.

9) 시설전환비는 최고 2억원(사업주단체의 경우 최고 5억원, 산업단지 15억원), 유구비품비는 최고 5천만원(교체비용은 3천만원)임. 지원기준은 소요비용의 90~60%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영아, 장애아시설은 80%를 지원하고, 산업단지는 90%를 지원함.

의무이행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2년 9월 기준으로 사업장 유형별로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각각 84.5%, 99.4%가 의무 이행 중이며, 학교는 80.2%, 기업은 66.3%가 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는 국가기관이 81.0%로 가장 높고, 지자체가 52.9%이며, 기업 34.2%, 학교 20.9%이다(표 II-1-3, 표 II-1-4 참조).

〈표 II-1-3〉 연도별 직장보육 설치 의무 이행률

단위: 개소(%)

연도별	의무사업장	이행				(이행률)
		계	설치	수당	위탁	
2012(9.30)	919	683	359	253	71	(74.3)
2011(6.30)	832	604	326	231	47	(72.6)
2010	833	578	312	208	58	(69.4)
2009	790	523	284	195	44	(66.2)
2008	791	476	269	160	47	(60.2)
2007	791	440	253	147	40	(55.6)
2006	775	365	199	132	34	(47.1)

주: 국가기관 중 국방부의 군부대는 제외.

자료: 2013년 1월 3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표 II-1-4〉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설치 의무 이행률

단위: 개소(%)

구분	의무사업장	이행				미이행
		소계	설치	수당	위탁	
전체	919	683	359	253	71	236
(비율)	(100.0)	(74.3)	(52.6)	(37.0)	(10.4)	(25.7)
국가기관	58	49	47	1	1	9
(비율)	(100.0)	(84.5)	(81.0)	(1.7)	(1.7)	(15.5)
지자체	155	154	82	71	1	1
(비율)	(100.0)	(99.4)	(52.9)	(45.8)	(0.6)	(0.6)
학교	86	69	18	43	8	17
(비율)	(100.0)	(80.2)	(20.9)	(50.0)	(9.3)	(19.8)
(공사)기업	620	411	212	138	61	209
(비율)	(100.0)	(66.3)	(34.2)	(22.3)	(9.8)	(33.7)

주: 1) 국가기관 중 국방부의 군부대는 제외함.

2) 2012년 9월말 기준임.

자료: 2013년 1월 3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10)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에서 보육수당 지급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으나(2013. 6. 10일자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참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지역별로는 의무이행률은 대전, 광주가 87%로 가장 높고,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이 7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대전이 75.0%, 경기 62.4%, 서울이 60.7% 수준으로 60% 이상이고 전북은 30% 미만이며, 부산, 대구, 강원, 충남, 경북이 30%대로 비교적 낮다(표 II-1-5 참조).

미이행 사업장은 25.7%인 236개소인데, 이중 28.4%는 설치를 추진 중이고 이외는 11.4%는 예산부족, 25.0%는 보육수요 부족, 19.5%는 장소 미확보를 미이행 사유로 들었다(표 II-1-6 참조).

〈표 II-1-5〉 지역별 직장보육 의무이행 및 시설 설치율

단위: 개소(%)

구분	의무사업장	이행				미이행	(의무 이행률)	(시설 설치율)
		소계	설치	수당	위탁			
서울	278	214	130	73	11	64	(77.0)	(60.7)
부산	53	42	15	16	11	11	(79.2)	(35.7)
대구	30	22	7	10	5	8	(73.3)	(31.8)
인천	34	24	14	9	1	10	(70.6)	(58.3)
광주	23	20	8	10	2	3	(87.0)	(40.0)
대전	46	40	30	4	6	6	(87.0)	(75.0)
울산	26	18	10	5	3	8	(69.2)	(55.6)
경기	150	109	68	26	15	41	(72.7)	(62.4)
강원	29	20	6	12	2	9	(69.0)	(30.0)
충북	31	22	10	11	1	9	(71.0)	(45.5)
충남	42	30	10	13	7	12	(71.4)	(33.3)
전북	26	22	6	15	1	4	(84.6)	(27.3)
전남	20	12	7	5	0	8	(60.0)	(58.3)
경북	64	43	14	26	3	21	(67.2)	(32.6)
경남	54	36	20	14	2	18	(66.7)	(55.6)
제주	9	7	4	3	0	2	(77.8)	(57.1)

주: 2012년 9월말 기준임.

자료: 2013년 1월 3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표 II-1-6〉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유

단위: %(개소)

구분	이행추진중 (설치중 등)	예산부족 (비용부담)	장소 미확보	보육수요 부족	기타/ 무응답	계(수)
전체	28.4	11.4	19.5	25.0	15.7	100.0(236)
국가기관	40.0	-	-	10.0	50.0	100.0(10)
학교	5.9	17.6	5.9	35.3	35.3	100.0(17)
기업	29.7	11.5	21.5	24.9	12.4	100.0(209)

자료: 2013년 1월 3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규모 증가 추세

2012년 12월 현재 42,527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48만 7,360여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이 중 초등학생을 제외하면 전체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52.4%이다.

시설은 유형별 구성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5.2%, 법인어린이집이 3.4%로 소수이고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대다수이다. 2012년 12월 현재 민간개인어린이집이 14,440개소로 34.0%이고 가정어린이집이 22,935개소로 53.9%이다. 가정 어린이집은 2012년 1년간 2,213개소가 증가하였다(표 II-1-7 참조).

〈표 II-1-7〉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1995-2012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523	113
(비율)	(100.0)	(5.2)	(3.4)	(2.0)	(34.0)	(53.9)	(1.2)	(0.3)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449	89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9	401	74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370	66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350	65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320	61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298	59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204	미분류
1995	9,085	1,029	928	22	3,175	3,844	87	미분류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 아동은 2012년 12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약 14만 9,700여명 정도로 전체 보육 아동의 10.1%이고 법인 및 법인의 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약 16만 5천여명으로 11.1%인데 비하여,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이용은 민간개인어린이집 76만 8,200여명과 가정어린이집 37만 1,670여명으로 모두 114만여명 수준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76.7%이다(표 II-1-8 참조).

보육 이용 아동 현원은 정원 대비 86.4%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91.9%로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률이 77.8% 수준으로 가장 낮다(표 II-1-9 참조). 2012년에 보육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현원율도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표 II-1-8〉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1995-2012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12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881	2,913
(비율)	(100.0)	(10.1)	(7.6)	(3.5)	(51.7)	(25.0)	(2.0)	(0.2)
2011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4,987	2,286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21,901	1,898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2,996	236,892	18,794	1,655
2008	1,135,502	123,405	113,874	53,818	615,647	210,438	16,809	1,491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5,124	1,444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4,538	1,238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933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7,807	미분류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42,116	2,388	미분류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표 II-1-9〉 어린이집 공급 정원 대비 현원: 2012년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정원	1,721,917	162,926	140,839	62,575	904,956	3,490	408,727	38,404
현원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2,913	371,671	29,881
(비율)	(86.4)	(91.9)	(80.3)	(83.0)	(84.9)	(83.5)	(90.9)	(77.8)
2011	(83.2)	(90.8)	(79.4)	(82.1)	(82.0)	(83.9)	(84.9)	(76.8)
2010	(82.2)	(89.5)	(79.3)	(81.5)	(81.1)	(85.3)	(83.3)	(77.3)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표 II-1-10〉 유치원 설치 및 원아수

단위: 개원, 반, 명

구분	2010			2011			2012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전체	8,388	25,670	538,587	8,424	26,988	564,834	8,443	28,386	621,765
공립	4,501	7,129	126,577	4,502	7,279	126,095	4,495	7,535	129,231
사립	3,887	18,541	412,010	3,922	19,709	437,739	3,948	20,851	492,53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경상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2012). 2011-2012 유아교육연차보고서.

한편, 유치원은 2012년 4월 통계로 전국 8,443개원이 설치되어 62만 1,765명이 이용하고 있고, 설립주체별로는 기관 수는 국·공립유치원이 많지만 국·공립유치원은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이용 아동은 사립유치원 이용자가 49만 2,500만명으로 전체 원아의 79.2%이다(표 II-1-10 참조).

〈표 II-1-11〉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12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¹⁾ (A)	어린이집 (B)	유치원 (C)	계 (B+C)	비율 (B/A)	비율 (B+C/A)	최연소자녀 기준 모취업률 ²⁾ (2012)
0세	464,374	177,757	-	-	38.3	-	29.0
1세	472,275	321,716	-	-	68.1	-	36.4
2세	470,956	372,811	-	-	79.2	-	42.9
0-2세 소계	1,407,605	872,284	-	-	62.0	-	34.2
3세	446,256	259,112	130,986	390,098	58.1	87.4	44.9
4세	467,432	194,413	229,911	424,324	41.6	90.8	47.0
5세	494,810	149,522	251,897	401,419	30.2	81.1	48.1
3-5세 소계	1,408,498	603,047	612,794	1,215,841	42.8	86.3	46.9
0-5세 전체	2,816,103	1,475,331	612,794	2,088,125	52.4	74.1	39.5

주: 1) 인구수는 2012년 12월 주민등록인수임.
 2) 모취업률은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임.
 3) 어린이집 자료는 2012년 12월, 유치원 자료는 2012년 4월 통계로 6세 이상아는 제외하였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경상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2012). 2011-2012 유아교육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표 II-1-12〉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및 비율: 2010-2011

단위: %

구분	2010		2011	
	보육아동 비율	보육·유아교육 아동 비율	보육아동 비율	보육·유아교육 아동 비율
0세	27.9	-	32.5	-
1세	51.7	-	53.1	-
2세	71.2	-	77.0	-
0-2세 소계	50.5	-	54.1	-
3세	49.3	71.9	58.3	87.0
4세	40.3	80.8	37.0	76.8
5세	34.3	90.5	30.6	82.7
3-5세 소계	41.6	80.7	42.0	82.0
0-5세 전체	42.0	61.7	48.0	68.3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합하면 전체 영유아 208만 8,100여명 중 74.1%가 된다. 영아는 전체 영아 140만 7,600여명 중 62%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유아는 전체 유아 140만 8,500여명 중 어린이집 42.8%, 유치원 43.5%로 총 86.3%의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표 II-1-11 참조).

2010년과 2011년과 비교하여 기관 이용이 꾸준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기관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어린이집은 영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유아는 큰 변동이 있어서 유아의 증가는 유치원 이용 아동의 증가로 귀결

된다(표 II-1-12 참조).

한편으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른 최연소자녀 기준 모 취업률과 비교해 보면, 영아가 막내 자녀인 모의 취업률은 육아 휴직자를 포함하여 34.2%이고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38.3%이다. 모 취업률보다 기관 이용률이 더 높다.

4)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의 지역 차이

가) 지역규모별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은 지역별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지역규모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어린이집 정원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각각 38%, 37%, 25%의 순이고, 이용률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분포한다. 아동 인구 대비 농어촌에 정원 및 현원 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어린이집 정원 분포를 보면,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대도시에서 50%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중소도시에는 가정어린이집이 50% 정도를 차지하며 농어촌에는 법인어린이집이 50%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용아동 분포도 이와 유사하다(표 II-1-13 참조).

〈표 II-1-13〉 시설유형별 정원과 현원 지역 분포: 2012

구분	계	단위: 명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정원								
전체	1,721,917	162,926	140,839	62,575	904,956	408,727	3,490	38,404
대도시	643,915	82,573	39,839	18,999	343,124	138,837	1,574	18,969
중소도시	648,414	45,665	26,835	17,320	335,467	208,126	1,355	13,646
농어촌	429,588	34,688	74,165	26,256	226,365	61,764	561	5,789
현원								
전체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대도시	574,723	76,753	33,120	16,167	303,679	128,424	1,325	15,255
중소도시	563,879	42,718	22,639	14,825	283,958	188,280	1,114	10,345
농어촌	348,759	30,206	57,290	20,922	180,619	54,967	474	4,281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표 II-1-14>는 정원 대비 현원의 지역규모별 분포이다. 전반적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하여 농어촌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낮다. 특히 농어촌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 비율은 현원율이 74%로 가장 낮다.

<표 II-1-14> 지역규모별 시설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

구분	단위: %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체	86.4	91.9	80.3	83.0	84.9	90.9	83.5	77.8
대도시	89.3	93.0	83.1	85.1	88.5	92.5	84.2	80.4
중소도시	87.0	93.5	84.4	85.6	84.6	90.5	82.2	75.8
농어촌	81.2	87.1	77.2	79.7	79.8	89.0	84.5	74.0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나) 시·도별

다음은 시·도 단위 보육공급과 이용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I-1-15> 시·도 단위 어린이집 정원 비율 평균: 2012

구분	단위: 명, %					
	영유아인구수 (A)	보육정원 (B)	보육현원 (C)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충족률 (C/B)
전체	2,816,103	1,721,917	1,487,361	61.1	52.8	86.4
시·도						
서울	502,984	261,870	239,335	52.1	47.6	91.4
부산	160,319	84,863	73,991	52.9	46.2	87.2
대구	126,056	79,769	66,795	63.3	53.0	83.7
인천	164,473	88,062	79,751	53.5	48.5	90.6
광주	87,735	61,975	53,378	70.6	60.8	86.1
대전	90,620	54,343	48,432	60.0	53.4	89.1
울산	69,826	38,210	33,800	54.7	48.4	88.5
세종	7,360	5,558	4,547	75.5	61.8	81.8
경기	758,105	447,370	392,515	59.0	51.8	87.7
강원	75,796	56,259	46,007	74.2	60.7	81.8
충북	88,139	61,590	51,467	69.9	58.4	83.6
충남	120,211	81,169	67,626	67.5	56.3	83.3
전북	98,167	74,226	60,401	75.6	61.5	81.4
전남	97,468	68,651	56,481	70.4	57.9	82.3
경북	138,395	96,368	77,010	69.6	55.6	79.9
경남	195,016	129,308	108,931	66.3	55.9	84.2
제주	35,433	32,326	26,894	91.2	75.9	83.2
2011	2,777,209	1,621,948	1,348,729	58.4	48.6	83.2
2010	2,734,976	1,556,808	1,279,910	56.9	46.8	82.2

주: 보육정원 및 보육현원 중에는 초등학생이 일부 포함됨.

자료: 행정안전부(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통계.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표 II-1-15>는 2012년 시·도 단위의 어린이집 설치 통계 자료와 주민등록

인구수 통계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인구 대비 어린이집 정원 비율로 시·도 단위 보육공급률을 산출한 결과이다.

전국적으로 아동 수 대비 보육공급률은 61.1%로 2011년 58.4%에서 2.7%p 증가하였고, 어린이집 이용률은 52.8%로 2011년 48.6%에서 4.2%p 증가하였다. 정원충족률은 86.4%로 2011년 83.2%에서 3.2%p 증가하였다. 보육공급률은 시·도 별로는 서울시가 52.1%로 가장 낮고 부산, 인천, 울산이 50%대로 비교적 낮으며, 제주도가 91.2%로 가장 높다. 아동 대비 보육이용률은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이 50% 미만으로 낮고 제주도가 75.9%로 가장 높다.¹¹⁾ 공급률이 낮으면 이용률도 따라서 낮다.

보육정원 대비 현원인 보육충족률은 지역 간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경북이 79.9%로 가장 낮고 강원, 전북이 81% 수준이며, 공급률이 가장 낮은 서울이 91.4%로 가장 높다.

나. 보육 아동 특성

1) 연령분포

<표 II-1-16>은 어린이집 단위 시·도 및 어린이집 유형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 백분율 분포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만2세 이용 아동 비율이 25%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1세, 3세, 4세, 0세의 순이다. 3세 미만 영아의 비율이 58.7%로 유아 41.3%보다 높다.

2011년과 비교하여 0세와 1세아는 늘고 3세는 감소하였으며, 2세와 4, 5세는 큰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전라권, 강원, 충청권이 만5세아 비율이 높고, 시설유형별로는 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영아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이용아동 중 98.2%가 영아이고 유아의 비율은 1.8%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0세아의 비중이 33.5%이다. 만5세아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이용률이 높다.

이용 시설유형별로는 유아와 영아의 비율이 차이를 보이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영아 중심 기관이고 이외 민간어린이집은 영아 비율이,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은 유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11) 영유아 인구수는 0~5세인 반면에 보육아동은 만6세 이상 포함으로 과대 추정 가능성 있음.

〈표 II-1-16〉 보육아동 연령 분포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방과후	계(아동수)
전체	12.0	21.6	25.1	17.4	13.1	10.1	0.8	100.0(1,487,361)
시·도								
서울	10.5	20.9	24.6	17.4	13.5	11.0	2.0	100.0(239,335)
부산	10.3	24.0	27.9	17.9	10.4	8.6	0.9	100.0(73,991)
대구	10.6	22.0	26.4	20.9	11.3	7.6	1.2	100.0(66,795)
인천	11.1	21.8	26.7	17.9	12.9	9.3	0.2	100.0(79,751)
광주	13.3	21.4	23.4	16.2	13.4	11.5	0.8	100.0(53,378)
대전	13.6	23.7	26.3	16.7	11.1	8.4	0.3	100.0(48,432)
울산	9.8	23.9	29.2	19.1	10.7	6.8	0.5	100.0(33,800)
세종	12.2	20.2	21.0	18.9	16.1	11.6	-	100.0(4,547)
경기	13.6	21.9	25.3	16.5	12.6	9.7	0.3	100.0(392,515)
강원	10.1	19.7	23.2	18.0	16.4	12.3	0.5	100.0(46,007)
충북	8.6	19.9	23.8	18.5	16.2	12.6	0.4	100.0(51,467)
충남	10.5	20.3	24.4	18.4	14.8	11.3	0.4	100.0(67,626)
전북	13.3	20.8	22.7	15.3	14.0	12.2	1.9	100.0(60,401)
전남	9.6	19.6	22.7	17.6	16.3	13.6	0.6	100.0(56,481)
경북	13.3	22.1	25.4	17.8	11.7	8.5	1.0	100.0(77,010)
경남	13.6	22.6	25.6	17.3	11.8	8.5	0.7	100.0(108,931)
제주	12.9	20.9	20.0	18.8	17.2	9.5	0.7	100.0(26,894)
시설유형								
국공립	2.3	12.4	21.1	22.5	21.7	18.6	1.4	100.0(149,677)
법인	3.0	13.5	22.6	22.8	19.6	16.2	2.3	100.0(113,049)
법인외	2.5	11.9	20.4	22.8	20.9	16.9	4.6	100.0(51,914)
민간개인	5.7	17.0	26.4	22.8	15.9	11.7	0.6	100.0(768,256)
직장	4.2	17.5	22.9	24.0	18.6	12.2	0.5	100.0(29,881)
가정	33.5	39.2	25.5	1.3	0.3	0.2	-	100.0(371,671)
부모협동	5.8	13.7	23.4	20.6	18.9	17.0	0.6	100.0(2,913)
2011	10.9	18.5	25.4	20.2	13.6	10.2	1.3	100.0(1,348,729)
2010	9.8	17.9	25.9	19.0	14.1	11.7	1.6	100.0(1,279,910)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2012년 12월 보육통계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족 아동은 52,120명으로 2011년 47,012명에서 증가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다문화가족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 대비 3.0%인데 지역규모별로 농어촌은 4.7%이고 도시는 2.4~2.5%로 도농간의 차이가 크다. 특히 전남은 6.7%이다(표 II-1-17 참조).

〈표 II-1-17〉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 개인	가정	부모 협동	직장	단위: 명(%)
									(보육아동 대비 비율)
전체 (비율)	52,120 (100.0)	6,331 (12.1)	5,965 (11.4)	2,889 (5.5)	27,005 (51.8)	9,694 (18.6)	13 (0.02)	223 (0.4)	(3.0)
지역규모									
대도시	15,494	2,351	731	422	8,940	2,944	5	101	(2.4)
중소도시	16,475	1,458	648	458	9,141	4,697	1	72	(2.5)
농어촌	20,151	2,522	4,586	2,009	8,924	2,053	7	50	(4.7)
사도									
서울	6,314	1,644	82	193	3,279	1,064	1	51	(2.6)
부산	2,134	329	119	65	1,294	324	-	3	(2.9)
대구	1,771	58	221	64	1,148	278	-	2	(2.7)
인천	2,325	238	31	37	1,492	524	2	1	(2.9)
광주	1,331	72	257	36	707	230	1	28	(2.5)
대전	1,215	31	100	25	635	411	1	12	(2.5)
울산	1,192	85	23	10	860	209	-	5	(3.5)
세종	190	15	47	6	82	40	-	-	(4.2)
경기	11,706	1,422	206	296	6,538	3,199	1	44	(3.0)
강원	1,779	226	477	135	680	256	1	4	(3.9)
충북	2,077	181	552	190	906	236	6	6	(4.0)
충남	3,279	265	661	256	1,542	529	-	26	(4.8)
전북	3,138	278	696	588	1,154	422	-	-	(5.2)
전남	3,757	364	1,379	390	1,277	341	-	6	(6.7)
경북	4,234	620	446	222	2,373	557	-	16	(5.5)
경남	4,732	465	373	263	2,640	977	-	14	(4.3)
제주	946	38	295	113	398	97	-	5	(3.5)
2011	47,012	5,041	5,367	2,521	23,940	4	9,943	196	(3.5)
2010	30,319	3,412	3,952	1,903	15,069	6	5,885	47	(2.4)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보육 아동은 어린이집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52,120명 중 법인이 11.4%, 국공립이 12.1%이고, 민간개인 51.8%, 가정 18.6%로 이용 어린이집 분포에 비하여 법인, 국공립, 법인의외어린이집 비율이 다소 높고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은 다소 낮다(표 II-1-17 참조).

한편 다문화가족 아동을 1명이라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총 18,899개소로 전체 시설수 대비 44.4%이다. 지역규모별로는 특히 농어촌 어린이집은 57.2%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보육한다. 18,899개 어린이집에서 51,120명의 아동을 보육하므로 1개 어린이집당 평균 3명 미만을 보육한다고 하겠다(표 II-1-18 참조).

〈표 II-1-18〉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 개인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시설 대비 비율)
전체 (비율)	18,899 (100.0)	1,715 (9.1)	1,123 (5.9)	602 (3.2)	9,099 (48.1)	6,244 (33.0)	9 (0.05)	107 (0.6)	(44.4)
대도시	6,752	803	250	156	3,479	2,008	5	51	(43.7)
중소도시	7,298	458	212	136	3,372	3,087	1	32	(39.3)
농어촌	4,849	454	661	310	2,248	1,149	3	24	(57.2)
2011	18,124	1,529	1,090	573	8,572	4	6,257	99	(45.5)
2010	12,063	1,166	928	488	5,810	5	3,619	-	(31.7)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다. 성과와 과제

2012년은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해이고, 2013년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교육이 달성된 해이며, 또한 양육수당도 자산조사가 없어졌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아동의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 부담 완화와 더불어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은 증가 추세를 보여서 2012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률은 영아 62.0%, 유아 86.3%에 달하였다. 특히 0세아 어린이집 이용률이 38.0%를 기록하여 장시간 보육이 불필요한 아동의 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우려되었다. 그러나 2013년 확대된 양육수당은 단기적으로는 어린이집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제도 도입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 대비 3월에 보육 비율이 0세는 6.2%p, 1세는 11.1%p 낮아졌다.¹²⁾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는 2012년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 시 자기자본 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였다. 점차 자가로 한정하고 자기자본 비율도 상향하는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에 의하면 자가 비율이 민간어린이집 48.2%, 가정어린이집 65.6%이고, 융자금도 응답자 평균으로 각각 3억원, 1억원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여전히 아동을 기준으로 10% 수준에 머문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과거보다 신규 확대 수를 늘렸으므로 다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군·구의 비용 부담은 여전히다.

12) 3월의 이용률은 0세 12.2%, 만1세 57.7%로 2013년 1월 0세 18.4%, 1세 68.4%와 대비됨(2012. 3. 22일자 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이후 양육수당 수혜 아동은 다소 증가되었음.

2. 보육비용 지원

제2절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비용 지원의 내용과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을 검토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보육 비용

1) 보육료와 지원단가

현재 보육료는 시설유형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다. 보육료는 시·도 지사가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을 결정한다.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표준보육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여 정부의 지원기준 보육료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지원단가가 곧 보육료 상한선이다. 연령에 따라서는 0~2세 영아 보육료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영아 보육료 상한선은 정부 지원단가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유아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단가 차이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표 II-2-1>은 2011년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상한액을 나타낸다. 산출된 표준보육단가를 보면 가정어린이집보다 민간개인어린이집 보육료가 더 높는데, 시·도에서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보면 일부 지역은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선이 민간개인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선보다 더 높다.

<표 II-2-2>는 2004년 이후 연도별 지원 기준액이다. 2005년도 이후 부분적인 변경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인건비 지원 비율을 원장 및 영아반 교사는 90%에서 80%로, 유아반 교사는 45%에서 30%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는 0세아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을 반영하여 0세아 기준액을 따로 설정하였고, 2007년도에는 만3세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반영하여 만4세아 기준을 따로 정하였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 2013년 누리과정 3, 4세로의 확대로 지원 단가가 증대되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종일반비 7만원이 추가되는데, 이 중 일부를 교사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여 운영비로 지급하고,¹³⁾ 교재교구

13) 누리과정 교사 수당 30만원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아동별 지원금으로 사용함. 따라서 아동별 지원금은 4~5만원으로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비와 보조교사 채용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일반반 수는 3개, 장애아반은 9개 이상이면 보조교사 채용을 1명 이상 채용하도록 하였다.

〈표 II-2-1〉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3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시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만3세	만45세	만3세	만45세
서울		263	254	263	254
부산		254	232	263	243
대구		254	4세: 237, 5세: 240	267	4세: 254, 5세: 256
인천		265	253	270	258
광주		247	4세: 231, 5세: 236	264	4세: 251, 5세: 256
대전		254	238	266	266
울산	만0세: 394	254	239	269	251
경기	만1세: 347	275	253	278	278
강원	만2세: 286	253	235	268	257
충북	만3세: 220	258	233	278	272
충남	만4세: 220	264	251	276	268
전북	만5세: 220	260	250	240	230
전남		246	230	261	251
경북		254	237	267	252
경남		252	236	272	264
제주		236	228	261	261
세종		264	251	276	258

자료: 각 시도 및 시도 보육정보센터 웹 사이트에서 인출.

〈표 II-2-2〉 최근 연도별 지원단가

단위: 천원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 이상아	5세아	비고
2013	394	347	286	220			만3-5세 유아 누리과정 실시
2012	394	347	286	197	177	220	만5세 누리과정 도입
2011	394	347	286	197	177		
2010	383	337	278	191	172		
2009	383	337	278	191	172		
2008	372	327	270	185	167		
2007	361	317	262	180	162		만3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반영
2006	350	308	254	158			0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반영
2005	299		247	153			인건비 지원 비율 축소
2004	257		212	131			

주: 누리과정은 오후반비 별도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 기타 필요경비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이외에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특성화비 등을 추가로 수납하는데, 시·도 별 실태는 <표 II-2-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2-3>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2013

단위: 천원

구분	입학준비금 (년)	특별활동비 (월)	차량운행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년)	행사비 (년)	아침·저녁 급식비(월)	특성화 비용(월)
서울	시군구에 위임						
부산	10만	국공립: 60 민간: 70	20	128(년)	60	1천원(1식)	-
대구	90(국공립) 100(국공립외)	60(국공립) 70(민간)	25	30	60	1천원(1식)	-
인천	90(국공립) 100(국공립외)	35(국공립) 40(국공립외)	10(국공립외)	국공립: 0,1세:180 2-5세: 150 국공립외: 0,1세: 210 2-5세: 150		1천원(1식)	-
광주	신입: 80 재원: 20	70	5	30	60	1천원(1식)	20
대전	90	국공립: 50 민간: 60	국공립: 10 민간: 20	57	50	-	20
울산	90	85		50	100	1,745원(1식)	-
경기	100	사군위임	18	사군위임	사군위임	사군위임	사군위임
강원	70(신입생) 30(재학생)	70	15	30	50	-	-
충북	80	국공립: 90 민간: 100	20	40	50	20	-
충남	90	90	30	160(년)	50	1천원(1식)	30
전북	30	시 95 군 85	시: 40 군: 50	35	시지역: 150 군지역: 130	시지역:30 군지역:20	30
전남	90	70(국공립) 80(국공립외)	10	50	90	10	50
경북	90	70	10	160(년)	60	-	20
경남	80	60(국공립) 65(국공립외)	10	25	50	20	20
제주	55	60	15	50(년)	70	20	-
세종	90	100	30	160(년)	50	1천원(1식)	20

자료: 각 시도 및 시도 보육정보센터 웹 사이트에서 인출.

입학준비금은 3~10만원, 특별활동비는 3만 5천원~10만원, 차량운행비는 5천원 원~5만원, 현장학습비는 2만 5천원~16만원, 행사비 5~15만원, 특성화비는 9개 지역에서 2~5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입소료 이외의 비용을 기초지방정부에 위임하였다. 그 이외 지역은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표 II-2-4>는 서울시 각 구가 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상한액을 책정한 수납액 한도이다. 서울시는 입소료는 대체로 5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으니 피복비를 추가로 받는 지역이 많다. 특별활동비는 8~17만원으로 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별활동비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17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동구와 동작구가 16만원이며, 송파구가 7만원이다. 특기적성 과목에 대한 제한은 서대문구가 3과목 이내, 강동구가 5과목 이내로 제한한다. 은평구는 특이하게 3과목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차량운행비는 3~4만원이며, 현장학습비는 민간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보면 최소가 연 18만원이다. 행사비도 지역에 따라 3~10만원이다. 특성화 비용은 5곳에서 규정하고 있고 가격은 1~5만원이다. 특성화는 대부분 파견강사 없이 교사가 직접 하는 특별활동 교재교구비이다.

<표 II-2-4> 서울시 구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액: 2013 기준

단위: 원

구분	입학준비금 (원)	특별활동비 (월)	차량운행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	행사비 (원)	아침-저녁 급식비(월)	특성화 비용(월)
종로구	5만(피복류), 3만(체육복) 2만(신학기준비금)	10만	4만	연23만 ¹⁾	5만 5만(행사필요경비) ²⁾	1천5백(1식) 1천5백(1식) ³⁾	1만5천
중구	5만 3만(체육복)	10만	3만(국공립) 4만(민간가정)	연20만	10만	1천(1식) 1천5백(1식) ⁴⁾	-
용산구	5만	12만(국공립) 14만(민간가정)	3만	연 20만(국공립) 연 22만(민간가정)	10만	1천(1식)	-
성동구	5만	5만(국공립) 10만(민간가정)	3만	연 24만	-	-	-
광진구	5만 10만(원복), 5만(체육복)	8만(국공립) 14만(민간가정)	3만	연24만	8만	2천(1식)	
동대문구	5만(피복류), 4만(체육복)	12만	3만	연20만	5만	-	
중랑구	5만	8만	3만(민간 가정)	분기5만5천	6만	1,750(1식)	2만
성북구	5만	9만	3만	연 18만	4만 5천	1,750(1식)	-
강북구	5만, 4만(피복비)	15만	2만	분기6만	5만	1천(1식)	-
도봉구	5만	7만(국공립) 10만(민간가정)	2만	연 18만	-	1천(1식)	-
노원구	5만 2만5천(재원생피복류)	8만(국공립) 9만(민간가정)	2만	연20만	3만	1천(1식)	
은평구	8만	7만(국공립) ⁵⁾ 10만(민간가정)	3만	연20만	5만	1천5백(1식)	

(표 II-2-4 계속)

구분	입학준비금 (원)	특별활동비 (월)	차량운행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	행사비 (원)	아침저녁 급식비(월)	특성화 비용(월)
서대문구	5만 ¹⁾ 3만(체육복)	6만(국공립) 10만(민간가정)	3만5천	연20만	5만	1천(1식) 1천5백(1식) ⁷⁾	-
마포구 ⁸⁾	5만 4만(체육복)	7만(국공립) 10만(민간가정)	2만4천	연22만	-	1천2백	-
양천구	5만	8만원	3만	5만	-	3만(1식) 5만(2식) ⁹⁾	
강서구	5만 2만(신학기준비금) 5만(체육복)	12만	3만	연20만	5만	1천(1식)	-
구로구	5만(피복류) 5만(체육복)	7만(국공립) 10만(민간가정)	3만(1인) 4만(1가족2인)	5만5천(국공립) 6만(민간가정)	8만	1천5백(1식) 2천(1식) ¹⁰⁾	-
금천구	5만(피복류) ¹¹⁾ 3만8천(체육복)	7만3천(국공립) 9만4천(민간가정)	2만(민간가정) 국공립수납금지	4만5천	6만	1천(1식)	-
영등포구	5만(피복류) 3만(재원생 피복류) 5만(체육복)	12만	3만	24만 (39인이하) 22만 (40인이상)	5만 ¹²⁾	1천5백(1식)	1만
동작구 ¹³⁾	5만 4만(피복류)	16만	2만	58,750	11만	1천(1식) 1천5백(1식) ¹⁴⁾	-
관악구	3만(신학기준비금) 5만(신입생) 5만(체육복)	9만(국공립) 12만(민간가정)	부모동의하 수납	연22만	7만	1천(1식)	-
서초구	3만	17만	5만	연24만	분기별4만 ¹⁵⁾	1천5백(1식)	-
강남구	10만	10만(국공립) 17만(민간가정)	5만	분기6만	16만	1천(1식)	4만
송파구	5만	7만	-	연24만	5만	-	5만
강동구	5만(입소료) 5만(체육복)	5만(국공립) 14만(민간가정)	3만	연20만	5만	1천2백(1식)	-

주: 1) 캠프비 및 졸업여행비 별도 실비 수납가능

- 2) 신규추가 사항
- 3) 방과후 방학 중식비
- 4) 방과후 아동 중식비
- 5) 특성화비용(20% 이내) 포함
- 6) 재입학준비금 없음
- 7) 방과후 급식비
- 8) 행사비, 특성화비 수납불가
- 9) 1달 기준
- 10) 방과후교실 이용 아동 중식비
- 11) 상해보험료 수납금지
- 12) 정원 49인 이하는 연7만
- 13) 개인 소모용 문구류비 연3만, 개인소모용 위생품비 연 4만5천원 수납
- 14) 방과후 급간식비
- 15) 위생비, 사진비, 졸업앨범비 등

3)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은 보육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의 표준보육비용 산정 노력은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있었다. 2004년에는 통합된 표준보육료·교육비로 저렴한 수준으로 건축비를 포함하였고, 인력 인건비 수준을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맞춘 것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맞춘 두 가지 안으로 제시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일정 수준 건축비를 반영하여 산출한 비용은 50인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1안이 0세아 806,000원, 5세아 271,843원이다. 2008년에 산출한 표준보육비용은 2004년이 보육과 유아교육 비용을 통합한 비용 산정이며, 영아 관리비가 과다 책정되었고, 개인적 재정투자와 용자, 임대 등 민간어린이집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50인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하는 1안이 0세아 738,400원, 5세아 317,000원이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유기농 식자재를 쓰며 교재교구를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고 건축비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다. 두 연구를 비교하여 영아는 많이 낮아졌고, 유아는 물가상승률은 감안하면 약간 높아진 수준이다.

나. 보육비용 지원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은 시설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보조금 지원과 부모 보육료 지원인 부모보조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설보조금과 부모보조금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 즉 아동보육에 소요되는 보육비용이다. 이외에 설치비, 개보수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능보강비 예산 등이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다양한 형태의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별 지원, 기본보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및 취약보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보조금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로 하는 인건비 지원으로 구분된다.

일반 인건비 지원 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유아교사는 인건비의 30%, 영아전담교사는 80%를 지원하고,¹⁴⁾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2009년부터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취사부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외 차량운영비로 개소당 월 20만원(중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특정한 프로그램별 인건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보육이 해당된다. 인건비 지원 기준은 시설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시간연장보육교사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은 월 120만원을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의 80%를 지원한다.

한편 2013년부터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에 운영비로 규모에 따라 월 210~28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이는 농어촌 거주 아동 감소로 인한 법인어린이집의 운영 애로를 완화시킨다는 목적이다.

2)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에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영비인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에게는 임금을 지원한다. 원장은 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고, 교사와 취사부는 15~40시간의 근로시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 일반 기업은 15시간이 30만원, 40시간이 8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각각 38만원, 100만원이다.¹⁵⁾¹⁶⁾

교재교구비 지원은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 대상으로 현원 규모로 6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120~5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운영비는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용보험기금 지원은 고용주 지원으로 간주한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시 지원하는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4) 2004년 이전에는 각각 45%, 90%에서 2005년부터 축소 조정되었음.

15) 시간제 보육교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됨(시행일: 2011. 8. 1).

16) 2011년 기준으로 229개 기업 3496명에게 총 216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음(고용노동부, 2012 여성과 취업).

3) 민간어린이집 지원

민간어린이집 지원은 영아 기본보육료, 교재교구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본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등록된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할 계산하여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은 지원단가의 100%, 출석일수가 6~10일은 지원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5일은 지원단가의 25%를 지원한다. 허용된 초과보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요건은 보육료와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총 정원과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이다. 1일 0시에 이러한 조건이 준수되어야 지원된다.¹⁷⁾ 기본보육료 액수는 2013년 연령별로 361,000원, 174,000원, 115,000원이다.

장애아동에게도 기본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지원단가는 장애아반 394,000원, 장애아 방과후반 197,000원이다.

〈표 II-2-5〉 연도별 영아 보육비용 구성과 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07			2008			2009-2010			2011-2013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기본보조	292	134	86	340	164	109	350	169	112	361	174	115
보육료	361	317	262	372	327	270	383	337	278	394	347	286
보육비용	653	451	348	712	491	379	733	506	390	755	521	401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표 II-2-6〉 영아기본보육료 지원 아동 규모

단위: 명(%)

구분	계	보육료 지원 영아	보육료 미지원 영아	(보육아동 대비 비율)
영아전체	872,289	671,446	4,085	(77.0)
0세	177,757	161,841	2,104	(91.0)
1세	321,716	245,856	1,144	(76.4)
2세	372,816	263,749	837	(70.7)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17) 기본보육료는 아동별로 지원하므로 부모보조금의 성격을 갖지만 부모가 아닌 시설에서 바로 수령하며 시설보조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함. 보육서비스 이용권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정부 예산상 항목은 보육료지원임.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은 영아 전체로는 77.0%이다. 지역 특례는 허용하되 초과보육은 허용되지 않는 0세아는 91.0%이지만, 초과보육이 허용되는 1세와 2세의 비율은 70% 대로 떨어진다.

민간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은 199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시설 규모별로 연간 50~120만원 지원한다. 2011년부터는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한 시설에만 지원한다.

다음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2011년 하반기부터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 보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778개소를 선정하고 2013년에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확대하였다.

2012년에는 신청 기준이 변경되었고, 2013년에 다시 수정되었다. 2013년 기준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년도 하반기 6개월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이 평균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상 총 영유아 현원 대비 유아 현원이 평균 30% 이상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이다.

이외에 ① 평가인증 점수, ② 건물 소유·이용형태, ③ 보육교직원 전문성, ④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⑤ 지자체 특성화지표¹⁸⁾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가점 항목으로 근속 3년 이상 교사 비율, 원장 전문성, 어린이집 정보 공개,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대표자 및 원장 3년간 미변경, 보육교사 급여 수준이 포함되었고, 감점 항목으로 수입 대비 용자 상환과 임대료 합의 비율,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포함되었다. 총점 80점을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이러한 어린이집에는 규모에 따라 일정액이 어린이집 정원 구간별로 지원된다. 지방정부 중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를 실시하는 서울시는 제외된다.

4) 부모 보육료 지원

가) 지원 기준

2012년 부모 보육료 지원은 0-2세와 5세는 전 계층에게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3, 4세 아동은 소득 하위 70%에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였다. 취업모

18) 시·도별로 지역적 여건, 보육정책 방향, 중점 추진 시책, 민간·가정·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수요 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지표 설정(예시: 시범사업 등 시책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

지원¹⁹⁾이나 다문화 무상보육 등 지원 기준은 3, 4세 상위 30%에만 적용되었다.

지원단가는 영아는 보육료 상한액과 동일하지만 유아는 만3세 197,000원, 만4세 177,000원이고 만5세는 200,000원이었다. 2013년에는 전계층 전액지원이며, 유아 지원단가는 동일하게 22만원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 소유 규모 5ha 미만으로 농어업 외 소득이 1자녀 기준으로 4,000만원 미만²⁰⁾인 자의 자녀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어린이집 미이용 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45%이다. 단, 5세아는 50%이다. 어린이집 미이용 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45%는 2010년 35%에서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 사업은 2013년에 복지부로 이관되어 보육서비스 비용은 무상보육에 흡수되었고 현금 지원은 양육수당의 한 유형으로 남았다.

나) 지원 실적

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수는 2012년 말 기준으로 135만 1,200여명인데 연령별은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3~4세가 71~74%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표 II-2-7 참조).

〈표 II-2-7〉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2012

예정규모	단위: 명, %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보육아동(A)	1,487,361	177,757	321,716	372,811	259,112	194,413	161,522
지원아동(B)	1,351,232	175,352	320,003	371,409	185,173	142,523	156,772
비율(B/A)	90.8	98.6	99.5	99.6	71.5	73.3	97.1

주: 방과후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지원 이유별로 지원아동 분포를 보면 일반 영유아가 83.7%이고 이외에 만5세가 10.5%이며 다문화 아동이 2.6%이고 장애아동 무상보육이 1.0%이며 법정 아동 지원이 1.8%이다(표 II-2-8 참조).

19) 2009년 7월 맞벌이 가구의 부모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였고, 2010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부모 소득 합산액의 25%를 감액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음.

20)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임.

〈표 II-2-8〉 연령별 사유별 보육료 지원 아동: 2012

단위: 명(%)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비율)
전체	1,351,232	175,352	320,003	371,409	185,173	142,523	156,772	(100.0)
법정	24,247	1,571	3,697	5,516	6,509	6,891	63	(1.8)
영유아	1,130,652	169,108	306,410	354,841	170,399	129,224	670	(83.7)
장애아	13,022	298	403	1,252	2,281	2,612	6,176	(1.0)
다문화	35,224	4,375	9,493	9,800	5,984	3,795	1,777	(2.6)
만5세	142,772	6,396	136,376					(10.5)
방과후	5,315	2,122	3,193					(0.4)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다. 성과와 과제

2012년은 영아 무상보육,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보육아동의 90.8%이었고 2013년은 전 연령, 전 계층, 전액 지원을 달성하였다. 소위 무상보육을 실현한 것이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아도 보육료 지원 확대로 부모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 것은 분명하였다. 3, 4세 무상보육 실현 이전이지만 가구소득 대비 어린이집 이용 비용 비율이 3.5%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44.0%로 2009년 조사 결과 64.2%보다 10%p 가까이 낮아졌다.

그러나 특별활동이나 기타 비용은 다소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도나 시·군·구가 제시하는 비용 상한액도 올라가고 항목도 강사 파견 없이 교재교구비 수납이 가능한 특성화비가 신설되는 곳도 있었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결과를 보아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지불아동 기준으로 평균 61,700원으로 2009년 53,800원보다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 보육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은 물론 항목과 기준이 각기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는 2013년에 특별활동 비용 증액의 어려움으로 그 대안으로 교재교구비 수납이 가능한 특성화 비용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기기도 하였다.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설정은 지방정부 결정사항이므로 지역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공통적 부분은 중앙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보육사업안내로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불분명한 부분이 많고, 또한 24개월 미만 및 오전반 금지 등 특별활동 적정관리 지침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준수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상당수

이고 준수하지 않아도 벌칙조항은 없다.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에서 원장들도 특별활동 운영 시간대가 오후라는 응답이 81%이고 그 이외는 오전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부모조사에서는 특별활동 운영 제한에 대하여 시간대 제한 40.3%, 금액 상한선 제시 85%, 24개월 미만 특별활동 금지 57.8%가 필요하다고 하여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는 보육료 상한액, 보육료 지원 단가, 표준보육비용 간의 격차가 있다. 보육료 지원 단가가 22만원인데, 보육료 상한액 24만원 내외, 표준보육비용 28만원 선이다. 이는 실제 비용과 지원단가간의 격차로 전액지원의 체감도를 낮춘다. 지원 단가를 점차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개념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비용 지원단가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가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주기적 산출이 가능한 구조적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보육비용 지원이 여전히 획일화되어 있다. 이용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아동의 이용시간을 동일시하면서 지원단가가 12시간 보육 기준이라는 오해도 불러오고 있다. 최근 수년간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하였으나 이용시간 다양화 정책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보육비용 지원 구조를 만들어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시간연장형 보육

가. 현황

시간연장형 보육은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을 포함한다. 시간연장 보육은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적용된다.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2인 이상이어야 하고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원은 두 가지 방식이다. 하나는 별도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인건비 지원 시설의 경우 월 지급액의 80%,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아동 3명 이상 보육 시 월 120만원이 지원된다. 다른 하나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에게 월 40만원을 수당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²¹⁾ 월 40만원은 1일 2시간 근무에 1만 2천원 지원, 시간연장 1개반 기준을 나타낸다.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으로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보육료는 장애아동은 연령에 관계없이 3,700원이다.

〈표 II-3-1〉 시·도별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및 제공 개요: 2012

시·도	계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단위: 명, 개소(%)
					(전체 대비 비율)
아동 수					
전체	47,045	43,431	2,743	871	(3.16)
지정	40,730	39,287	572	871	(2.73)
미지정	6,315	4,144	2,171	-	(0.04)
어린이집 수					
전체	10,537	9,398	871	268	(24.77)
지정	8,719	8,164	287	268	(20.50)
미지정	1,818	1,234	584	-	(4.27)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 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한다. 24시간보육 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수납이 가능하다.

휴일보육은 교사 1인당 3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에 실제 근무 교사에게 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는 지정 어린이집 수는 8,719개소이고 미지정 시설이 1,818개소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24.8% 정도가 시간연장형 보육에 참여하고 있다. 총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아동수는 47,045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약 3.2%에 지나지 않는다. 시설 수와 아동 수가 나타내듯이 시간연장형 보육 아동이 소수인 시설에 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5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2명이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명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수요나 이용에서 대부분이 야간 시간연장 보육이고 24시간이나 휴일보육 수요나 실제 이용 아동은 소수이다.

21) 2010년부터 실시된 사업임.

나. 문제와 과제

시간연장형 보육의 문제는 우선 실수요자 여부 확인 등 이용자 선정 기준이 없다는데 있다. 어린이집에서도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아동 수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수요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연장형 보육이 꼭 필요하지 않은 아동도 이용한다.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의 어려움은 간헐적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간연장형 보육 상시 수요는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7%,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7.8%로 나타나서 실제 보육아동의 3.3%의 두 배 정도가 된다. 특히 취업모들이 상시적으로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10% 이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가 실제 상시 이용 수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시간 사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가능성을 확대하고 싶어 하는 기본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향은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에서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시간연장형 보육은 첫째, 지역별로 거점형 어린이집을 두어서 중장기적으로 취약보육을 필요로 하는 일정 수의 아동이 자발적으로 한 곳으로 모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늦은 밤에 교사 1인에 아동 1~2명이 남는 시간연장형 보육으로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담보하기 어렵고, 아동에게도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시간연장 보육 대상이 취업모 등 시간연장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인지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은 기준을 포괄적으로 정하더라도 일단 실시하고 향후에 시간연장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시간연장 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이러한 이용자 자격 기준과 더불어 실제 이용과 비용 지원에 대한 이용자 확인 체계를 포함하여 예약과 이용의 편의가 확보되는 전산 운용체계가 필요하다.

4. 어린이집 평가인증

가. 현황

2013년 평가인증제도는 2012년과 비교하여 필수 및 기본 항목, 절차, 사후관리 부분이 강화되었다. 신청자격으로 필수항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는데 필수

항목은 총정원 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 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 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이다. 기본항목은 10점으로 구성하는데, 예·결산 및 재무회계가 2점이고 행정처분과 민원사항은 8점에서 감점되는 형태로 변경하였다.

2013년 평가인증 절차상 달라진 점으로 대표적인 사항이 관찰일 미고지이다. 어린이집에 대해 2주간의 관찰주관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해당 관찰주간 중 현장 관찰일을 정하여 사전에 고지없이 어린이집에 관찰자가 파견된다. 관찰자는 규모별로 2~3인이 한 개씩의 보육 반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사후관리로는 확인점검 제도를 두었고 확인 방문 요건을 강화하였다. 확인점검은 일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5항목), 운영형태별 평가인증 지표 전 영역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8점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증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되며,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5점 이상에서 98점 미만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또한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을 미준수한 경우, 그리고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보육 컨설팅을 제공한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재확인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 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에서 6개월을 감축한다. 확인점검 사항으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과 운영형태 변경으로 지표가 달라진 경우가 추가되었다.

평가결과 상세 정보가 최초로 공개된 2013년 9월 6일 이전에는 평가결과는 평가인증사무국에서 매 심의마다 인증 기준 통과 어린이집 명단만을 발표하는 형태로 공개되었다. 공개되는 정보는 총점, 영역별 점수, 지역 평균, 평가 및 권고 사항 등 상세하다. 인증 결과는 중앙정부 교재교구비, 취사부 인건비 지원 및 지방정부 교사 수당 등 인센티브 제공의 준거로 활용되었다.

신규 및 재평가를 포함하여 2013년 1월 기준으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64.7%가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설유형별로는 법인어린이집의 인증유지율이 85.6%로 가장 높고, 국공립어린이집 89.9%, 민간어린이집 64.7% 순이다(표 II-4-1 참조).

〈표 II-4-1〉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인증률: 2013년 1월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	42,528	2,204	1,444	523	22,935	113	15,309
인증통과 (인증율*)	36,128 (85.0)	2,091 (94.9)	1,530 (106.0)	310 (59.3)	18,729 (81.7)	42 (37.2)	13,426 (87.7)
인증유지 (인증유지율)	27,357 (64.3)	1,982 (89.9)	1,236 (85.6)	281 (53.7)	13,914 (60.7)	41 (36.3)	9,903 (64.7)

주: * 법인외는 민간개인으로 분류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내부자료.

〈표 II-4-2〉 참여연도별, 설립유형별 신규인증 통과점수 현황: 2012.11.30 기준

단위: 점

구분	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2010 ~2012.11)	88.58	91.23	88.34	92.79	89.39	89.67	86.96
2012.11	92.83	95.70	92.28	96.13	93.34	93.87	91.59
2011	91.52	96.02	92.41	96.10	91.75	91.38	90.73
2010	87.69	91.76	87.97	91.72	87.87	90.08	86.74
2009	86.68	91.42	86.45	90.98	87.88	86.39	85.05
2008	87.59	91.48	87.84	93.55	88.80	92.02	85.61
2007	88.55	91.62	89.87	92.89	88.56	88.09	87.30
2006	87.11	89.27	87.21	92.16	87.58	86.65	84.97
2005	89.60	91.93	88.87	93.76	89.63	92.68	87.63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내부자료.

〈표 II-4-3〉 참여연도별, 설립유형별 재인증 통과점수 현황: 2012.11.30 기준

단위: 점

구분	통과 어린이집						
	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	92.30	94.21	91.59	95.05	92.67	89.36	91.30
2012.11	92.78	95.04	91.76	95.61	93.41	96.39	91.70
2011	92.17	94.37	91.72	95.06	92.13	88.42	91.13
2010	90.20	91.72	89.52	93.35	89.04	82.79	89.47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내부자료.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신규 어린이집, 재인증 어린이집 모두 2012년 90점을 상회한다. 2010년까지는 90점 미만이었으나 2011년 이후 점수가 상승하였다(표 II-4-2, 표 II-4-3 참조).

나. 성과와 과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서의 2013년 커다란 정책적 성과는 정보 공개이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81.7%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선택 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비율도 37.0%이다.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여부 이외에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하여 공개하거나 또는 항목별 원점수를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부모들이 평가 인증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평가인증 점수 등 상세 정보 공개에 대하여 부모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하였고, 이에 비하여 운영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부모들의 차분한 반응의 원인은 공개된다는 정보 자체에 대한 부족과 대부분 80점 이상인 높은 점수, 그리고 선택의 폭이 좁은 어린이집 이용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도적으로도 2010년부터는 평가지표와 운용체계를 개선하였고, 2013년에 기본확인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평가인증 관련 향후 과제는 재정 지원과의 연계이다. 2011년부터 교재교구와 평가인증을 연계하였고 취사부 인건비 지원과도 연계하고는 있으나, 점차 기본보육료나 보육료와 같은 강력한 연계가 필요하다. 다만 평가인증 유지율이 70% 미만에 머물고 있어서 유지율을 올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가. 현황

어린이집 보육인력은 시설규모와 아동연령별 교사 대 아동수 등 일정 기준에 의하여 배치된다. 아동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와 겸직이 가능하고, 영양사와 간호사는 아동 100인 이상 시설에, 취사부는 아동 40인 이상 시설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11월말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보육교사 670,294명이다. 현재 소지한 보육교사 급수별로는 1, 2급이 각각 30만명이 넘고 3급이 3만명 정도이다. 자격자 중 현직교사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30.4%인데, 급수별로 차이를 보인

다. 3급 교사의 비율이 54.4%로, 1, 2급 27.4% 및 31.3%보다 월등하게 높다(표 II-5-1 참조). 경력자보다는 신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를 선호하는 보육 현실을 반영한다.

원장 자격은 11월말 현재 자격증 취득자는 187,554명이고 이들 중 현직 원장은 42,008명이다. 자격취득자 대비 비율은 22.4%이다(표 II-5-2 참조).

〈표 II-5-1〉 보육교직원 자격증 취득자 현황 및 현직 종사 비율: 2012.11.30 기준

단위: 건, 명, %

구분	자격증 발급 건	자격증 취득자* (A)	현직 종사자 (B)	현직 종사 비율 (B/A)
전체	784,824	670,294	203,788	30.4
1급	342,082	330,757	90,618	27.4
2급	368,069	309,214	96,664	31.3
3급	74,673	30,323	16,506	54.4

주: * 중복 취득 건(승급, 재교부)을 제외한 실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2012). 내부자료.

〈표 II-5-2〉 원장 자격증 취득자 현황 및 현직 종사 비율: 2012.11.30 기준

단위: 건, 명, %

구분	자격증 발급 건	자격증 취득자* (A)	현직 종사자 (B)	현직 종사 비율 (B/A)
어린이집 원장	202,225	187,554	42,008	22.4

주: * 중복 취득 건(승급, 재교부)을 제외한 실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2012). 내부자료.

〈표 II-5-3〉 보육교직원 수

단위: 명

구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
전체	284,237	42,164	204,946	1,717	520	771	1,118	1,138	22,866	8,997
국공립	23,725	2,187	16,427	659	130	99	152	158	2,830	1,083
법인	18,011	1,439	12,196	731	310	94	150	160	1,925	1,006
법인의외	8,094	864	5,366	82	22	37	56	106	936	625
민간	126,239	14,295	94,323	234	58	439	669	524	10,679	5,018
가정	101,273	22,744	71,618	8	-	4	8	98	5,687	1,106
부모협동	614	111	422	1	-	1	-	2	66	11
직장	6,281	524	4,594	2	-	97	83	90	743	148

주: 보육교사에는 보육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 및 24시간보육교사가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2012년 12월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총 인력은 28만 4천여명이다. 보육교사가 20만명이 넘고 특수교사 1,700여명, 치료사 520명, 간호(조무)사 자격자가 1,118명이고 영양사가 771명이며 취사부 및 조리사가 22,866명, 이외 기타 인력이 9,000여명 된다(표 II-5-3 참조).

2012년 말 현재 현직 보육교사의 자격을 보면 보육교사 1급이 전체 보육교사의 과반수가 안되는 44.8%이고 2급이 47.3%이며 3급 교사가 7.9%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65.4%가 1급 교사이고, 법인, 법인외어린이집 교사도 1급 교사가 60% 수준이다. 반면에 보육교사 3급은 민간개인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비율이 각각 7.8%, 11.5%로 높다(표 II-5-4 참조).

〈표 II-5-4〉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별 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보육교사 자격별 수				비율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전체	91,736	96,984	16,226	204,946	44.8	47.3	7.9	100.0
국공립	10,742	5,512	173	16,427	65.4	33.6	1.1	100.0
법인	7,315	4,647	234	12,196	60.0	38.1	1.9	100.0
법인외	3,234	2,000	132	5,366	60.3	37.3	2.5	100.0
민간	41,340	45,630	7,353	94,323	43.8	48.4	7.8	100.0
가정	26,566	36,791	8,261	71,618	37.1	51.4	11.5	100.0
부모협동	204	193	25	422	48.3	45.7	5.9	100.0
직장	2,335	2,211	48	4,594	50.8	48.1	1.0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예산 사업은 일반 보육교사 수당 월 12만원, 누리과정 교사 월 30만원 지급이고 이외에 보수교육비용 지원과 대체교사 제도가 있다.

보수교육은 정부가 지원하는데, 직무교육은 40시간 기준으로 1인당 6만원, 승급교육은 80시간 기준으로 1인당 12만원을 지원한다. 보수교육은 사업 대상이나 지원 규모가 최근 3년간 동일하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으로 그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주 중 5일을 연가로 사용할 때, 보육정보센터에서 월 급제로 채용된 대체교사를 시설에 파견하는데, 그 규모는 수년째 450여명 정도에 머물고 변화가 없다.

나. 성과와 과제

아이사랑 플랜 평가 결과에 의하면 사업 기간 동안 가장 성과가 낮았던 부분이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이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으로도 전문가들은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을 들었다(서문희·김혜진, 2012). 보육교사가 장시간 보육에 낮은 급여를 받는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장 최근 전국 조사인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55만원이며 평일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28분으로 산출되었다. 2013년 들어서는 누리과정 교사 수당 30만원과 일반 보육교사 수당 12만원으로의 증가로 급여 수준이 다소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이 2013년 51만원²²⁾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유보간의 격차는 여전하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사업은 그 규모가 450명 규모에서 증가되지 않았다. 20만 어린이집 교사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수이다. 또한 주중 5일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교육이나 사정상 할 수 밖에 없는 결근 시에는 지원이 안 되는 등 사용상 불편사항은 여전하다.

한 가지 다행한 일은 누리과정에 따른 종일반 비용 지원금을 활용하여 2013년부터 누리과정 반이 3개 이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어린이집은 보조교사를 채용하도록 한 점이다. 이로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은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각 지방정부 별로 제각기 조직되는 교육의 내용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긴 것은 기본적으로 보육이 취업모 자녀 등 장시간 보육 요구가 있는 아동보육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시간 규정 부재로 인하여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원칙과 아동의 보육시간을 동일시하면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지 않는 아동까지도 종일제 장시간 보육하여야 하는 부담, 상시 대체 인력의 부재 등도 교사 근무환경 약화의 요인이 된다. 실수요자별로 적절한 이용시간 개념 도입을 통한 근본적 교사 근무환경 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22) 비담임교사 수당은 40만원임.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가. 현황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중앙과 지방정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²³⁾를 운영 중이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육아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교육, 평가인증 조력지원 등을 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부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시·도 17개²⁴⁾,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48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중앙정부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동안 시·군·구 예산으로 설치, 운영하였다. 2011년부터 중앙정부가 시·군·구에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²⁵⁾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소는 지자체 건물에 13개소이고 복지관, 어린이집, 육아지원기관 병설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운영방법은 대부분이 위탁 운영이고 직영하는 곳이 단 한 군데이다(표 II-6-1 참조).

〈표 II-6-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제 특성

단위: 개소

계	설치현황							운영방법	
	단독			복합			부속 사업장	직영	위탁
	자가	임대	무상	자가	임대	무상			
48	5	-	8	5	7	23	59	2	46
17	1	1	1	-	8	6	8	-	17
66	6	1	9	5	16	29	66	2	64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은 총 78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육전문요원이 180명으로 가장 많고 전산원, 영양사, 특수교사가 20~30명 정도이다(표 II-6-2 참조).

이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은 정보사업, 상담사업, 조직사업, 취약보육 지원사업, 육아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2013년 12월 5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으로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표기함.

24) 경기도 2개소, 기타 시·도 각 1개소임.

25) 2011년과 2012년 각 3개소, 2013년 추경 포함 16개소로, 개소당 10억원의 설치비를 지원함.

〈표 11-6-2〉 인력 규모

단위: 명

구분	계	센터장	보육 전문요원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특수 교사	기타
전체	1,011	66	242	22	-	19	18	38	379
중앙	14	1	11	1					
시도	310	17	61	8	-	3	5	4	175
시군구	687	48	170	13	-	16	12	34	204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영유아보육법 제7조 중앙 및 지방 보육정보센터는 2013년 6월 4일자로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12월 4일자로 시행된다.

나. 성과와 과제

2011년 이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은 바람직하다. 특히 영아 무상보육 도입 이후 어린이집 쏠림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양육수당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미이용자를 위한 시간제서비스나 부모와 자녀 이용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조직의 성격을 규명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시·군·구 센터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으로의 특성화된 기능 정립이 요구된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인지율은 장난감·도서 대여가 가장 높은데, 그 비율은 28.7% 정도에 머문다.

시·군·구 센터는 그동안 시·군·구 재정으로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시·군·구 센터의 다수는 서울, 경기도에 설치되는 등 지역 차이가 나고 있어 중앙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한 지역간 균형 배치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력의 처우, 실시하는 사업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운영 비용 확보도 향후 과제가 된다.

또한 각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물론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민간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조직적 구조라기보다는 협력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7.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가. 현황

영유아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미이용 아동 수당, 농어민 자녀 수당, 장애아 수당으로 구분된다. 가장 대표적인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으로 2013년 전연령, 전계층으로 확대되었다. 지원 액수는 0세아 20만원, 1세아 10만원, 2세아 이상 10만원이다. 농어민 자녀 양육수당은 농어업인가구의 자녀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등이 있으면 된다. 지원금은 지원 액수는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7.7만원, 36개월 미만 월 15.6만원, 36개월 이상~48개월 미만 월 12.9만원, 48개월 이상~취학 전 월 10만원이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등록 장애인에 한하여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개월~취학 전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국고 지원금은 8,810억원 규모이다.

2012년에는 일반아동 양육수당은 영아 차상위까지가 지원 대상이었으므로 총 92,800여명이 지원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장애아 2,258명, 농어민자녀 7,577명이다. 2013년 3월 기준으로는 82만 6,300여명이다. 장애아와 농어민자녀는 다소 감소하였다. 현재 양육수당은 외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도 지원하고 있다.²⁶⁾

〈표 II-7-1〉 양육수당 지원아 수: 2012~2013

구분	단위: 명								
	2012. 12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계
전체	102,653	37,727	44,128	18,486	1,178	573	381	180	826,359
영(유)아	92,818	35,514	40,997	16,307	-	-	-	-	818,584
장애아	2,258	17	278	592	546	377	268	180	1,930
농어촌	7,577	2,196	2,853	1,587	632	196	113	-	5,745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및 내부자료.

나. 성과와 과제

2013년은 무상보육과 더불어 양육수당 전연령, 전계층 지원을 달성한 해이다.

26) 2013년 정기국회에서 해외 거주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질의되었음. 우리나라가 속인주의를 채택하므로 잘못된 결정은 아니라고 판단됨. 그러나 국민정서를 반영하고 유사 급여 사례를 참고하여 지급기간을 조정할 필요는 있음.

정책적으로 부모들 간의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2013년에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대상 가구소득 및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어린이집 이용이 2013년 1월 대비 3월에 11만 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당 수혜 아동은 유아가 소수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양육수당 제도가 어린이집 이용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²⁷⁾ 급여액 상향조정 시에는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수준 결정에 유의하여야 하고, 영아 중심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대상인 유아의 양육수당 금액 확대는 부적절하였고 실효성도 낮았다.²⁸⁾

8.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가. 현황

2013년부터 그동안 복지부에서 수행하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과 소규모 보육시설과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농어업인 자녀 지원 사업은 복지부로 이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신규 사업으로 농어촌에 공동아이돌봄센터 36개소를 신규로 설치한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교사 4,400명에게 종전과 동일하게 11만원을 지원하며 이동식 놀이교실은 3개소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 예산은 327억원이다.

27) 핀란드나 노르웨이의 공공서비스 대체수단으로 지원되는 영아 양육수당이 일하는 영아의 모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랑스는 6세미만 아동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축한 경우에 노동시간 감축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당(APE) 제도의 대상 확대는 출산 수준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여성 취업률은 다소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음(Piketty, 1998).

28) 양육수당 정책은 제4장에서 심층분석 주제로 다루었음.

〈표 II-8-1〉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 사업 예산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규모	예산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 신규 설치	36	3,830
- 운영	66	726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2	254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급	44,056	27,914
계		32,7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주요 사업보고.

나. 성과와 과제

농어촌 보육여건 사업으로 공동아이돌봄센터 증가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중심이 되는 비영리 공급체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은 긍정적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아이돌봄센터의 물리적, 인적 기준 등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기구를 통한 철저한 지도가 요청된다.

9.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가. 현황

부모의 요구와 돌봄 노동이나 사회적 일자리로 가정내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6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시하여 2010년에는 종일돌봄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사업 추진체계는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각 시도 및 시·군·구 행정 담당자, 그리고 사업시행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이며, 서비스 전달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아이 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곳이며, 2012년 말 기준으로 215개소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종일제 돌봄서비스로 구분된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 놀이 활동, 식사·간식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한 부모 및 저소득 맞벌이가정에 우선 한다. 비용은 소득기준에 따라 가, 나, 다형의 3가지로 구분된다.²⁹⁾

지원시간은 2013년 미취학 아동은 연 480시간, 방과후 아동은 연 720시간이다.

영아 종일제 돌봄은 2010년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위생·안전 관리 등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 100만원 기준으로 최대 200시간을 지원하며, 맞벌이 등 취업부모 가정 대상이다. 대상은 취업부모 가구로 소득 수준에 따라 월 70~4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표 II-9-1〉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

구분	단위: 백만원, 가구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	20,147	40,189	43,464	66,618
지원가구				
시간제	27,339	37,934	31,847(6월)	46,800
종일돌봄	124	1,204	2,104	2,440

자료: 여성가족부(각 연도). 아이돌보미 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양성은 중장년 연령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대표적 사례로 2012년 10월 11,376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신규양성 목표는 2013년 8,720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 이용자 모두 89%로 나타났는데, 2010년, 2011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만족도가 48.2%로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³⁰⁾

나. 성과와 과제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은 종일 돌봄지원제도를 도입,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정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특히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시간제 이용자의 95.7%, 영아종일제 이용자의 95.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 베이비시터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사람의 73%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³¹⁾

29) 가형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로 본인부담금이 1,000원이고, 나형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100% 이하로 본인 부담이 4,000원이며 그 이상은 5,000원이 모두 본인 부담임.

30) 2012년 12월 4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31) 2012년 12월 4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아이돌보미 사업의 향후 과제는 비용 지원 대상, 지원 수준과 지원 이용시간 확대가 될 것이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 480시간에 한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 시간 소진 시 전액 자부담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향후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용자 조사에서도 정부지원 금액 및 시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아종일제는 지원 시간에 대한 불만이 전년도 10.7%에서 올해 21.2%로 높아졌다.³²⁾ 또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현재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까지만 적용되나, 24개월까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아돌보미를 좋은 여성의 일자리로 확립하는 문제도 주요 과제이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80%를 넘으나, 임금, 시간 등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 돌보미의 활동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고, 아이돌보미 시간당 수당이 5,000원에 머물러 임금수준이 기대치보다 낮아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정기관의 수를 늘려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저소득층 이외에 비용 지원보다는 질 높은 도우미를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0. 보육 재정

전연령, 전계층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2013년 국고 지원 사업 중앙 정부 예산은 4조 1,400억원이다. 국고 지원 사업별 예산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항목이 62.7%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양육수당 예산이 21.3%를 차지한다.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항목이 10.7%이다. 이들 세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이 전체 94.7%가 된다. 대부분이 어린이집 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인프라나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에 포함되는 예산은 소수임을 알 수 있다.

32) 지원 시간 불만 비율은 시간제 2011년 24.6%, 2012년 31.8%이고, 영아종일제는 2011년 10.7%, 2012년 21.2%임. 지원 금액 불만 비율은 시간제 2011년 25.4%, 2012년 26.6%이고, 영아종일제는 2011년 24.3%, 2012년 22.7%임.

중앙정부 분담률이 평균 49.4%이므로 총 사업비는 8조 2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3~5세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교육지방재정교부금 지원금 7,000억원은 제외된다. 또한 각 지방정부 특수사업 예산도 제외되어 있다.

〈표 II-10-1〉 국고 지원 예산: 2008~2013

구분	단위: 백만원(%)					(비율)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1,704,840	2,127,510	2,478,380	3,028,567	4,141,345	(100.0)
어린이집 운영지원	343,856	349,528	395,023	423,152	444,463	(10.7)
보육료지원	1,282,168	1,632,204	1,934,611	2,391,291	2,598,219	(62.7)
어린이집 기능보강	21,437	9,438	14,650	11,867	23,610	(0.6)
보육 인프라 구축	29,787	12,181	16,250	15,377	26,990	(0.7)
어린이집 평가인증	4,191	3,401	4,975	6,026	6,668	(0.2)
어린이집 지원(공공형 등)	15,301	55,093	23,077	78,207	150,445	(3.6)
양육수당	8,100	65,664	89,794	102,646	880,950	(21.3)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표 II-10-2〉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9~2013

내역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운영지원 인건비	753,082	766,876	813,638	867,084	905,047	
보육료 지원	0-4세 보육료	2,109,618	1,856,036	3,499,6426	4,525,895	4,995,153
	5세아 무상보육(누리과정)	281,906	248,963	205,361	27,277 (599,600)	
	장애아무상보육	105,602	94,721	88,778	87,680	79,886
	두자녀보육료	172,116	173,235	-	-	
	기본보조금	-	934,915	-	-	
	맞벌이 보육료	-	19,700	88,820	92,002	
	다문화가족무상보육	-	-	23,447	19,364	
	시간연장보육료	-	-	-	68,603	67,303
	농어업인 보육료	-	-	-	19,850	
	기타					8,873
소계	2,669,242	3,327,570	3,915,155*	4,840,670	5,151,215	
어린이집 기능 보강	41,978	17,902	25,900	23,734	47,220	
인프라 구축 등 기타	8,205	7,362	19,335	22,785	36,516	
어린이집 평가인증	4,191	3,401	4,975	6,026	6,668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32,502	32,473	31,320	127,015	234,979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	16,347	31,022	58,635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68,802	136,764	186,905	213,846	1,778,629	
계	3,573,811	4,288,947	5,018,600	6,132,183	8,218,859	

주: 국고지원 사업 중앙과 지방정부예산 합계로, 시도 및 시·군·구 특별사업 예산은 제외함.

2009년 기본보조금은 운영비에 포함됨. 시도 미통지액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예산 내부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유아교육 예산은 2013년 전체 2013년 유아교육 재정 중 공립유치원 배정 예산은 약 1조 3,291억 원,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예산은 약 1조 3,261억 원으로 총 2조 6,552원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7,008억 원을 추가하면 12조 정도로 추산된다. GDP 대비 0.9% 수준이다(표 II-10-3 참조).

〈표 II-10-3〉 유아교육·보육 예산: 2005~2012

단위: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유아교육	1,235,852	1,500,018	1,923,903	3,027,984	3,353,200
보육	3,588,600	4,289,000	5,018,600	6,132,183	8,341,814
계	4,824,452	5,789,018	6,942,503	8,934,555	11,995,014
(GDP 대비 비율)	(0.45)	(0.50)	(0.56)	(0.72)	(0.9)

주: 보육예산은 국고 지원 사업 예산으로 국고 비율 49.4%를 적용하여 추산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경상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2012).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각 연도). 예산 내부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예산 내부자료.

그동안 보육예산은 부모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어 왔다. 앞으로 보육예산의 사용처가 부모 부담 완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비스 수준을 올리는데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보육서비스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는 우선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이에 따른 지원 단가의 현실화 등 후속조치가 요망된다. 지원 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전액 지원 대상자의 확보보다는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추가 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사에 대한 처우는 부모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늘 뒷전으로 밀려왔는데, 보육의 질이 교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단가 조정시에도 교사에 대한 처우를 조건으로 하여 재정 지원의 증가가 운영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이 그동안 외적인 구조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온 측면이 강하다. 유아 누리과정 실시로 교육의 질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반에서 교사와 아동 간에 이루어지는 보육·교육 내용과 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보육예산의 지역적 격차가 매우 크다. 국고지원은 부모 보육료 지원 예산이 상당수이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예산 부담이 더

크겠으나,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사업비는 추가적인 투자 규모를 나타내므로 특수시책사업비의 지역 차이는 지역간 불평등을 가져온다.

11. 주요 지표 및 소결

영역별 주요 성과지표를 보면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및 재정, 평가인증 등은 연차별로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1-11-1〉 국가 단위 보육 관련 주요 지표

영역	세부지표명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기초자료 출처
보육비용 지원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비율	45.0	49.2	73.5	90.8	보육통계
	보육료 지원아동비율	65.7	68.7	73.5	90.8	보육통계
	보육료 소득대비 비율	7.4	-	-	5.0	실태조사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아동 비율	8.7	5.8	6.9		복지부
	양육수당 지원액	10만원	20-10만원	20-10만원	20-10만원	복지부
보육재정	GDP대비 국고지원금 비율	0.195	0.211	0.245	0.325	복지부
	GDP대비 총보육재정 비율 ¹⁾	0.465	0.509	0.576	0.640	복지부
	GDP대비 총 보육·유아교육 재정 비율 ²⁾	0.617	0.687	0.803	0.900	복지부 교육부
	아동1인당 총 보육예산	4,207천원	4,489천원	4,885천원	6,459천원	복지부
공급 및 이용	어린이집 공급률	54.2	56.9	58.4	61.1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률	42.9	46.8	48.6	52.8	보육통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11.0	10.8	10.6	10.1	보육통계
시간연장 보육	시간연장 보육아동 비율	2.0	3.0	3.3	3.2	보육통계
평가인증	평가인증어린이집 비율	60.5	70.0	77.5	85.0	평가인증사무국
	평가인증어린이집 유지율				68.0	평가인증사무국
교사 근무환경	월 수당액(농어촌)	11만원	11만원	11만원	11만원	복지부
	근무환경개선비(0-4세)	-	-	5만원	12만원	복지부
	누리과정 수당(5세)	-	-	30만원	30만원	복지부
	수당 지급 교사 비율	18.2	22.4	100.0	100.0	복지부
	교사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	2.9	2.6	2.9	2.5	복지부

주: 1)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예산 포함

2)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예산 제외 시 2012년 0.722 증가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는 부모 보육료 완화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이다. 따라서 지표상으로도 뚜렷한 변화가 보

인다. 지표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비율과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은 2012년 말에 90.8%이고 현재는 99.9%로 추정된다. 전 영유아 전 계층으로 확대된 양육수당은 2013년 3월 현재 영유아의 28%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액은 2012년과 같은 액수로 연령별로 차등화되어 있다.

2013년 예산 기준으로 보육재정을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내면 GDP 대비 국고지원금 비율은 0.325%, GDP 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은 0.650%이다. 유아교육을 포함하면 0.9%이다. 아동 1인당 보육예산은 640만원 정도이다.

2010년 어린이집 공급률은 61.1%, 아동 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은 52.8%,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10.1%이다. 공급률과 이용률은 2012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다. 시간연장 아동은 전체 아동의 3.2% 수준이다.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2013년 6월 현재 인증유지 비율은 68%이다. 과거 통과 비율을 적용하였으나 2013년부터 유지비율로 교체하고 통과비율을 병기하였다. 통과비율은 85%이다

2012년부터 모든 교사에게 수당이 지급되며 2013년에 일반교사 수당이 12만원으로 증액되었다. 보육교사 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은 2.5%로 별 변화가 없다.

이상을 요약하면, 보육정책이 2012년, 2013년에도 부모 비용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교사 수당이 다소 증액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대체교사 지원, 다양한 보육 등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Ⅲ.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제3장에서는 시·도와 시·군·구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 예산을 수집, 정리하고 일부 지방정부의 사업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1.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 개요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총 9조 3,781억원 규모이다. 2012년부터 5세 보육료 지원금이 누리과정 시행으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0~2세 무상보육 등으로 2조 이상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이외에 5세 전체와 3, 4세 상위 30% 및 3~5세 종일반비 지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008억원 규모이므로 이를 포함하면 10조가 넘는다.

〈표 III-1-1〉 연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1~2013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 사업비 (A)	특수시책사업비			계(A+B)	국고사업 대비 특별사업비 (B/A)	누리과정 지원금 (C)	총계 (A+B+C)
		시·도	시·군·구	소계(B)				
2013	8,341,814	594,743	441,599	1,036,342	9,378,156	12.4	700,800	10,078,956
2012	6,132,183	533,835	625,497	1,159,332	7,291,515	18.9	455,967	7,747,482
2011	5,018,610	365,775	549,051	914,826	5,933,436	18.2	-	5,933,436

주: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수시책사업의 시·도 예산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도 사업비의 시·군·구 분담금과 시·군·구 특수시책사업비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요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교육부(각 연도), 유아교육 예산.

시·도와 시·군·구 특수사업 예산은 각각 5,947억원, 4,416억원으로 총 1조를 조금 넘어서 국고 지원사업비 8조 3,400억원의 약 12%를 차지한다. 즉, 국고지원 사업 대비 총 12%의 예산이 지방 특수사업으로 보육재정에 추가되고 있다.

<표 III-1-2>는 2012년 전체 중앙과 시·도별 예산이다. 시·도 및 시·군·구 사업은 사업별로 광역과 기초 단체의 재정 부담률이 다른데, 여기서는 실제 부담액

을 나타낸다. 국고 지원사업비는 지방정부 분담을 포함한 액수이다.

특수보육시책 비용 역시 시·도 및 시·군·구별로 차이가 크다. 지방정부의 추가적 예산은 국고 지원 사업비의 12% 수준인데 서울시는 약 35%에 달하고 경북이 18%이고 울산, 경기, 충남이 11%대이다. 이외 대전, 인천, 충남이 9% 내외로 비교적 높다. 서울시는 국고지원사업 비용의 80%를 부담하면서 또한 전체 국고 지원사업비의 1/3이 넘는 재정을 보육에 투입하고 있다. 총규모는 1조가 조금 넘는다.

〈표 III-1-2〉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3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사업비 (A)	특수시책사업 예산(B)			국고사업비 대비 특수시책사업비 (B/A)
		시·도	시·군·구	소계	
전체	8,341,814	594,743	441,599	1,036,342	12.4
서울	1,255,692	259,966	180,587	440,553	35.1
부산	438,570	11,330	1,952	13,283	3.0
대구	379,356	4,823	6,051	10,874	2.9
인천	427,298	13,653	24,198	37,851	8.9
광주	290,554	3,618	3,926	7,544	2.6
대전	278,319	17,569	7,909	25,477	9.2
울산	193,962	12,432	9,495	21,927	11.3
세종	25,329	4,175	-	4,175	16.5
경기	2,129,347	179,340	61,725	241,065	11.3
강원	253,125	1,602	10,721	12,323	4.9
충북	259,015	3,272	20,354	23,625	9.1
충남	368,718	10,364	32,424	42,787	11.6
전북	331,383	3,413	10,281	13,693	4.1
전남	322,858	12,659	6,439	19,098	5.9
경북	440,292	50,235	29,875	80,110	18.2
경남	607,957	6,133	24,277	30,410	5.0
제주	152,803	160	11,387	11,547	7.6

주: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예산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도 사업 분담금과 시·군·구 고유의 특별 사업비가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3).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13).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2. 시·도 특수보육시책

제2절에서는 16개 시·도의 특수시책사업을 각 시·도별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전반적 개요를 파악하고 각 시·도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가. 개요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특수보육시책 종류는 매우 많은데,³³⁾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급은 각 시·도가 모두 채택하고 있고 평가인증이나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수보육시책은 지원 수준이나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까지 비교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또한 개괄적 비교는 비교 자체가 한계를 가질 경우가 많다. 교사, 부모 및 운영 측면에서 보편적인 정책이고 정책적으로 사용 가치가 비교적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도를 요약해 보면 <표 III-2-1>과 같다.

교사 처우와 관련된 지원은 16개 시·도가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데, 부산과 대전에서 교사에게 교통급식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이채롭다. 아동 급간식비를 교사가 사용한다는 점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러한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된다.

<표 III-2-1> 특수보육시책 실시 개요

내용	지역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전 16개 시도
교사 교통급식비(복지비) 지원	부산, 대전
셋째아 보육료 지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 경북, 경남
보육료 차액 지원	충북
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지원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대전, 충남, 경북
저소득층 기타 경비 지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서울, 광주, 충북, 경북, 경남
냉난방비 지원	인천, 울산, 강원도, 전북
차량운행비 지원	경북, 전북, 전남
친환경 식재료 비용 지원	전남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33)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을 66개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음(서문화·최혜선, 2010).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민간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차액 지원, 급간식비 지원, 현장학습비와 같은 기타 필요경비 지원 등이 있다. 일부 시·도에서 무상 보육 시대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소요되는 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부 시·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냉난방비, 차량운행비, 친 환경 식자재 구입비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나. 시·도별

각 시·도의 특수보육시책을 예산 배정의 비중이 큰 사업과 특색있는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 광역시

가) 서울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각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중앙정부 국고 지원 사업비의 35%에 해당되는 예산을 특수보육시책으로 사용한다. 서울시의 특수시책사업 중 가장 예산이 많아 소요되는 사업은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의 세 가지로 핵심 사업이다. 이 세 가지 사업에 시 부담 예산의 90%가 소요된다.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하는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기타 운영비로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를 지원한다. 매월 신청일 기준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현원을 기준으로 평균보육료 단가를 적용한다. 2013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는 281,300원이다. 이 비용은 서울시가 70%를 부담한다. 또한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으로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인건비를 지원(휴게시간 미포함)한다. 어린이집은 비담임교사 인건비 105만원이나 보육도우미 인건비 80만원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한다. 소요 비용은 시와 구가 반반씩 부담한다. 서울형 어린이집 0세아 간호사 방문제도 운영한다.

서울시의 또 하나의 중점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다. 각 동마다 2개 소 설치를 목표로 하는데, 서울시 2013년 예산은 690억원이다.

이외에도 일반 어린이집 운영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상당 부분이

인건비 지원이다. 대표적으로 시설장과 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사 중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처우개선비는 정부 지원시설 원장은 월 195,000원, 보육교사는 정부지원시설은 145,000원, 민간 시설은 월 200,000원을 지원한다. 보육교사 중식비는 1인당 월 25,000원이다.³⁴⁾ 또한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24시간 보육, 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히 365일 24시간 보육 시설을 두고 있다.

부모지원으로는 무상보육이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완화 방안으로 법정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차액과 현장학습비를 지원한다.

각 구 영유아와 부모 이용시설인 영유아 플라자도 서울시 특색사업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20억 이상을 사용한다. 이외에 방과후 보육, 장애아동 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를 지원한다.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에도 1억원 이상의 시비가 소요된다. 또한 천 기저귀 지원,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 등이 서울시 특색 사업이다.

나) 부산시

부산시 특수보육시책의 비중은 국고 지원사업 대비 3%로 높지 않은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원과 민간 어린이집 부산시 공공형 어린이집인 공보육운영 지원 예산이 총 79억원으로 특수시책예산 중 비중이 크다.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임금 보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6,320명에게 근속 1년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 1년 미만일 경우 5만원을 지급한다.

민간어린이집 대상의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운영은 중앙 정부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으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으나³⁵⁾ 부산시 특수시책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문화체험, 재롱잔치 등 각종 행사비를 시설 규모별로 지원하여 내실 있는 보육활동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다. 즉, 기타 필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인증 유지 중인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시설 규모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운영비를 지원한

34) 2013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참조.

35) 2013년 8월 현재 11개소로 파악됨.

다. 평가 재인증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평가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보육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보육교직원 2,700명이며, 지원 금액은 매월 3만원이다.

이 밖에도 장애아동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125명이며,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다) 대구시

대구시 특수보육시책도 부산시 정도의 수준으로 비교적 단출하다. 국고 지원 사업 대비 대구시 및 시군 특수시책 비중이 3% 미만이다.

그러나 사업비 중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에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다른 지역과 같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보조교사에게 매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처우개선에는 장애 통합 및 장애 전담 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집도 포함된다. 또한 장애아 보육교직원에게도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부모 부담 지원으로는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와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라) 인천시

인천시는 시·도, 시·군·구 특수시책 사업비 규모가 국고지원 사업비의 약 9%이다. 사업도 상당히 많은 종류를 추진하는데,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영아반 담임교사에게는 1급의 경우 12만원, 2급의 경우 11만원, 3급의 경우 10만원을 지급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에게는 교사 급수에 상관없이 17만원을 지급한다. 누리과정 담임교사의 경우 어린이집 유형과 관계없이 독립반 및 3-5세 혼합반, 그리고 장애아 2인 이상반의 교사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한다. 기타혼합반 및 장애아 1인반의 경우 월 9만원을 지급한다.

부모 부담 지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지원이다. 즉, 저소득층에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와 유아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고, 법정 저소득

층 아동에게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단가 간의 차액도 지원한다. 이외 장애아 보육교직원에게도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마) 광주시

광주시는 대구시와 더불어 시·군의 국고지원사업 대비 특수시책 사업비의 비중이 낮은 시인데,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이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시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은 광주시 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지급이 되며, 근속경력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다르게 지급된다.

다음으로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며, 보육시설 안전공제 비용도 예산을 지원하고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의 비중도 크다.

바) 대전시

대전시 특수보육시책 종류는 다양하다. 특수시책 사업 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이다.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교직원 8,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대상시설은 대전시 전 어린이집이며, 지원대상은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대체교사 등이다. 지원액수는 매월 5만원이다.

이외에도 1인 1회로 특별수당 10만원을 지급받고, 동일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월 3만원을 지급받는다. 교사 교통급식비 지원이 이채롭다.

또한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반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특별수당 6만원을 지급하기도 한다.

운영비 지원은 차량유지비, 교재교구비, 도서 구입비, 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등과 간식비 지원이 있고, 부모 지원으로는 셋째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이 있다.

사) 울산시

울산시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근속수당 등 보육 교직원 인력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교사를 대상으로 월 1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0세아 반과 장애아반 보육교사의 처우를 위해서

도 월 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2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근속수당도 지급이 되는데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부모 지원으로는 법정저소득층 차액 보육료 지원,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을 한다. 이외에도 운영비로 노후장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도 예산을 지원하며 및 어린이집 부모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영양사 순회 파견 등의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2) 도

가) 경기도

경기도 특수시책의 경우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근무 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는 평가인증 어린이집과 미인증 어린이집 간 차이를 두어, 반 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인증어린이집 교사 20만원, 미인증 어린이집 교사 17만원이고, 누리과정 교사는 각각 11만원, 6만원이다. 해당 교사 규모는 5만여명이다.

운영비 지원으로 경기도는 도에 인력 풀을 구축하고 교사와 취사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단기연가, 직무교육, 1주 이상 병가, 본인결혼, 본인 및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 출산휴가 시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2012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를 60인을 기준으로 각각 40만원과 80만원 지원한다.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는 월 100만원 기사 인건비를 지원하며, 실내용 공기질 자동 측정 장비(신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부모보육료 지원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만3세~5세)이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차액 중 일부(3만원)를 지원한다.

경기도의 특징적인 사업으로는 24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부모 가정에서 1:1 보육인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2008년부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아동으로 24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부모가 희망할 경우 다음 학기말(2월, 8월)까지 연장보육이 가능하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0세반 1:2, 1세반 1:3, 24개월 이상은 1:5까지 편성 가능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2012년부터 14개소³⁶⁾에 아이러브맘 카페를 운영한다. 이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 전문놀이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육아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보육정보, 부모쉼터를 통한 소통 공간이 제공된다.

나) 강원도

강원도 특수시책의 경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아동의 입소를 지원하고 동절기 난방비, 교재교구비 등에도 예산이 지원된다.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육교직원의 각종 수당으로 영아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특별 수당이 지급되며, 종사자에게 격무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 충청북도

충청북도 특수보육시책의 경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명목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중소도시 소재의 경우 6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고, 농어촌 소재의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13만원,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8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보육교직원 장기 근속 수당도 지원한다.

이외에 어린이집의 석면 및 실내공기 질을 조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인증 환경 개선비도 지원한다.

라)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경우 도 예산을 시·군 특수시책 예산에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 즉, 도 특수시책의 도 분담 비율이 20%, 30%인 사업들이 많다. 충청남도 역시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예산을 지원한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일일 8시간 이상 근무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지급되며, 원장의 경우 15만원, 교직원의 경우 10만원을 지급받는다.

마)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 처우개선에 약 80%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설 보강비, 농어촌 시설의 차량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36) 공공시설 10개소, 임대아파트 4개소임.

에도 일정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 처우개선비를 도비에서 지원받는데, 이는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한정된다. 0~2세 교사의 경우 월 10만원을, 3~5세 교사의 경우 월 5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바)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에 특수보육사업비의 대부분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외에도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의 종사자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의 교사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인 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영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에 냉난방비와 시단위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도 하고 있다.

사)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만5세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 또한 다문화 보육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장애아 및 다문화 아동,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월 1만 5천원,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월 9만원,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시설은 월 7만원이 지급된다.

아)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낮은 임금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육교사 사기 진작 및 자부심 고취하고, 우수 보육인력을 유치 및 양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2만원,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4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경우 4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셋째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보육시설 안전보험료와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도 예산을 사용한다.

자) 제주도

제주도의 경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장애아 통합 보육지원센터 운영, 워크숍 및 토론회, 세미나 개최 지원에도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3.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례

보육특수시책은 시·도별 시책의 차이 이외에도 동일 시·도에서도 시·군·구별 특수시책도 차이가 많다.

서울시 중에서도 강남구는 재정적으로 가장 여유있는 구중의 하나로 특히 많은 강남구만의 특수보육시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중 하나이다. 사업들을 보면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개보수하는 것에 예산을 사용하며, 구립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위하여 처우개선비와 초과근무교사의 석식비 등을 지원한다.

〈표 III-3-1〉 강남구 특수보육시책: 2013년

		단위: 천원	
내용	구 예산	내용	구 예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273,828	민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88,400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	467,931	영유아반 지원(민간 2세반)	504,000
구립시설 비담임교사 인건비	532,129	환경개선비 지원	59,000
구립시설 간호사 인건비	232,807	평가인증관련교재교구비 지원	28,000
구립시설 취사보조부인건비	241,500	민간 시간연장 운영비 지원	16,800
시간연장 및 취약보육시설 운영	252,000	민간시설 방역소독비지원	56,713
구립교사 처우개선비	320,460	민간 교사 연수	5,000
구립시설 교사 석식비 지원	11,250	민간 교사 중식비 지원	151,500
보육교사 교사자녀 보육료지원	16,920	보육료 차액 지원	798,336
구립시설 교사 시간외수당 지원	258,624	서울형 어린이집 추가지원	228,000
구립시설 영양사 인건비 지원	83,146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운영	347,350
영유아 유기농식재료 지원	219,000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운영	590,442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795,000	365일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799,520
민간보육시설 비담임교사 인건비	180,000	행사, 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27,0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며, 민간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며, 중식비를 제공한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의 시간연장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운영비로 환경개선비와 방역소독비, 교재 교구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특수시책 비중이 가장 작은 지역이다. 4개의 구에서 별도의 보육시책도 매우 소수이다.

〈표 III-3-2〉 광주시 시·군·구 특수시책: 2013년

단위: 천원

지역	내용	구 예산
동구	보육교사 아이사랑 수당 지원	78,000
서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9,120
	보육시설 관계자 연수	4,000
남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5,000
북구	민간시설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	48,600
	우수보육프로그램 사례발표회	3,76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4. 소결

시·도 및 시·군·구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예산의 규모나 국고 지원 사업 대비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무상보육으로 지방정부의 분담 비중이 증가하면서 재정 압박을 받는 지방정부가 점차 이를 줄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지방정부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채택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수보육시책 예산의 시·도 및 시·군·구 지방정부간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 간극은 더욱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방화 시대의 장점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동이나 부모에게 격차를 야기할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 예산의 지역간 격차는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시·도 및 시·군·구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수당 형태로의 교사 등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다. 이 비용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용하여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기타 경비 지원이나 세번째 자녀 보육료 차액 지원도 중앙에서 눈여겨볼 만한 정책이다.

IV. 공공형 어린이집의 모니터링과 평가

민간 중심의 어린이집 공급 구조 속에서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법의 하나로,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제3섹터 형태의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우수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이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모형을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2013년부터 이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였다.³⁷⁾ 선행된 서울형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지원 수준으로 인하여 실효성 논란은 있으나 꾸준하게 그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등 전반적 사업 개요를 살펴보고 선정 기준의 적절성과 선정 결과의 적절성과 부모 인식과 만족을 통한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 공공형 어린이집 개요

가. 공공형 어린이집 정의 및 추진방향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이다.

2013년 사업 계획에 의하면 전체 1,500개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신규로 700개소 내외³⁸⁾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었다.³⁹⁾

37) 2011년 4월 26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8) 2013년 추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200개소 증가함(2013년 5월 8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9) 2012년말 기준으로 778개소를 운영함.

나. 대상 어린이집 유형 및 선정

1) 대상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은 인가 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단, 법인외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표 IV-1-1>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2013년 선정 기준은 그 이전 시범사업 당시에 비하여 각종 규제 관련 적용기간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 놀이터, 대표자와 원장의 기준이 강화되었다.

<표 IV-1-1>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제외 기준

제외 대상 기준
-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⁴⁰⁾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2년 이내 어린이집 영유아 확대 또는 급식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법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이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한다)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당해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당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어린이집

자료: 보건복지부(2013. 7).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2) 선정 요건

가) 기본 신청자격

기본 신청자격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지난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이 평균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

40) 행정처분 또는 처벌은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를 의미

이집(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2013년 이전에 비하여 평가인증 점수 기준이 추가되었다. 종전에는 인증어린이집이 조건이었고, 점수 자체는 배점으로 반영되었었다.

나) 선정기준 점수 산정

세부 선정은 참여 기본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총점수가 8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① 평가인증 점수(35점), ② 건물 소유·이용 형태(20점), ③ 보육교직원 전문성(35점), ④ 취약보육서비스 운영(5점), ⑤ 지자체 특성화 지표(5점)이다.

〈표 IV-1-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배점 기준

구분	항목 및 배점
기본점수 항목 (100점)	① 평가인증 점수(35점) ② 건물 소유·이용 형태(20점) ③ 보육교직원 전문성(35점) ④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5점) ⑤ 지자체 특성화 지표(5점)
가점 항목 (최대 28점)	① 현 어린이집 근속 3년 이상 교사비율(3점) ② 원장의 영유아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근무경력 기간(1점) ③ 원장의 현 어린이집 근속기간(1점) ④ 어린이집 비용 등 정보에 대한 공개(최대 4점) ⑤ 총 현원대비 유아현원 30% 이상 충족(3점) ⑥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3점) ⑦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3점) ⑧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최대 10점)
감점 항목 (최대 15점)	① 월 융자 상환액 및 임대료 합외 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최대 10점) ② 최근 3년간 보수교육 미이수자(최대 5점)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7).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이외에 일부 조건에 따라 총점 외에 가점과 감점이 주어진다. 가점 항목은 8개로 원장과 보육교사 근속, 원장 전공 및 교사 경력, 어린이집 정보 공개, 총 현원대비 유아 비율,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및 일치성, 교사 급여 수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점 항목으로는 보육료 수입 대비 월 융자 이자 상환액·임대료 합외 비율이 정도에 따라 1~10점이 감점되며,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에 따라 최

대 5점까지 감점된다. 즉, 100점 만점 기준 이외에 최대 28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5점까지 감점을 받을 수 있다(부표 IV-1-1 참조).

동점일 경우에 대비하여 우선순위 기준을 두었는데, 1순위는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적은 시·군·구 소재 어린이집이고, 2순위는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3순위는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4순위는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이다(표 IV-1-2 참조).

2012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1급 비율에 비중을 높였으며, 원장 재직 경력과 취약보육에 대해서는 비중을 낮추었다. 구체적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인증 점수는 총 배점은 35점을 유지하되, 단계별 배점 25~35점을 28~35점으로 점수 간격을 좁혔다.

둘째, 놀이터 구비는 정원 50인 이상 시설 중 자체 부지에 3종 이상 놀이기구가 구비된 옥외놀이터 구비 시 인정하는데,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으면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동일한 놀이터 기준을 적용하였다.

셋째, 건물소유형태는 구간별 배점 0~20점을 5~20점으로 조정하고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이용형태는 복합으로 보았다. 또한 감점으로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에서 15% 이상에 대하여 적용하던 감점 2~10점을 3~10점으로 그 폭을 줄였다.

넷째, 1급 보육교사 비율은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조정하고 전체 배점 상향 조정에 따른 배점 구간을 3단계 8~20점을 5단계로 늘리고 점수도 0~30점으로 조정 세분화하였다.

다섯째, 인력에 대해서는 원장 재직 경력을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하고 간격별 점수도 조정하였다. 또한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은 2점에서 3점으로 조정하고, 원장의 최종학력이 보육관련 석사 이상은 삭제하였으며, 대신에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과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의 경우에는 가점을 새로이 부여하였다.

여섯째, 취약보육 실시는 10점에서 5점으로 배점 부여를 축소 조정하였다.

일곱째, 가점으로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이상 충족 3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3점,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3점,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최대 10점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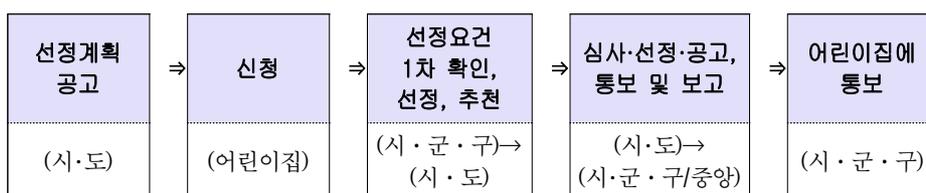
3) 선정 절차

먼저 각 시·도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시·군·구에 신청한다.

시·군·구는 신청 어린이집에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을 1차 선정 후 시·도로 추천한다. 이때,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놀이터 설치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구비 여부는 반드시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⁴¹⁾

시·도에서는 선정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⁴²⁾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함께 공고하고 동시에 최종 확정된 명단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으로 서면 보고한다.

명단을 통보 받은 시·군·구는 신청한 어린이집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림 IV-1-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절차

다. 지원 내용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운영비는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되는데, 2013년 7월 이전에는 여섯 구간으로 나누었고

41) 시·군·구별로 정해진 물량의 1.5~2배수 내의 어린이집을 추천, 사전에 정해진 물량 없이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 중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42)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최종 선정 시 물량의 110%를 선정, 10%는 예비 선정 대상으로 관리함.

그 이후에는 구간을 다소 세분화하여 10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단가도 2013년 7월부터는 다소 달라져서 종전의 종일 구간내에서 정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어린이집이 지원이 약간 개선되었다(표 IV-1-3 참조).⁴³⁾

이외 해당 지자체의 특수 시책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표 IV-1-3〉 공공형 어린이집 규모별 월 지원액

정원	단위: 만원									
	20인 이하	21-35인	36-49인	50-62인	63-76인	77-86인	87-97인	98-111인	112-123인	124인 이상
2013.7 부터	116	253	268	445	460	565	580	829	844	875
2013.7 이전	96	248	248	440	440	560	560	824	824	870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7).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라. 선정 후 관리

1) 운영 기준

공공형 어린이집은 요구되는 다양한 기준을 지키면서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점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⁴⁴⁾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 보육, 다문화 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중 1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하여야 하고, 보육교사 월 급여는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한다.⁴⁵⁾

운영시간은 반드시 평일 19시 30분까지 운영하고,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43)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한 지원을 받음.

44) 다만 2012. 7월 이전 선정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12년 7월~2013년 6월까지 재인증에 참여하여 그 결과가 80점 이상, 2013년 7월부터 재인증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 결과가 90점 이상이어야 공공형 유지가 가능함.

45)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종전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선정 후 월 급여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월 급여를 낮출 수 없음.

대한 공제상품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⁴⁶⁾ 또한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표 IV-1-4 참조).⁴⁷⁾⁴⁸⁾

〈표 IV-1-4〉 공공형 어린이집 상세 정보 공개사항

구분	공개사항
1) 평가인증 관련 정보	① 평가인증 점수: 총점, 전 영역 점수 ② 평가인증 연도 및 유효기간
2) 보육교직원 현황	① 원장 전문성(자격취득사항, 원장 근무기간, 경력) ② 보육교직원 현황(보육교사별 자격현황: 1급·2급·3급 자격 현황, 해당 어린이집 근무기간)
3)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 현황	① 실시 과목 수 ② 과목별 실시 요일, 시간대 ③ 과목별 월 비용 ④ 운영 강사 인적사항(이름, 소속 업체명)
4) 급식 식단표	① 주간, 월간 식단표 ② 급식 재료 구매처, 구매 주기 등
5) 예산내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산 및 결산 내역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2) 사후 품질관리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후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다. 한국보육진흥원 주관으로 추진하는 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 등 사후품질관리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사후품질관리 참여 실적 등의 내용은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시 반영된다.

- 46) 기존에 민간보험회사 등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기간의 종료 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조정할 수 있음.
- 47)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운영 및 관리기준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육료 및 입학준비금 등 수납, 보육교직원 급여 등 필요경비 지출 등은 국공립시설의 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공인시설로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차량운행은 가능함.
- 48)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운영통장' 1개로 운영하여야 함. 불가피하게 보육 교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회보장보험금과 세금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 명의의 '세입·세출 외 통장' 개설이 가능함. 모든 어린이집의 수입·지출을 예산에 반영하여 특별활동비 등 수입금 누락을 방지함. 또한 어린이집 관리지원시스템·클린카드 사용은 어린이집 관리지원시스템(<http://www.aseoul.co.kr>)으로 회계관리하고 모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법인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도록 함.

3) 선정 취소

공공형 어린이집은 각종 기준을 어길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평가인증 취소 시, 공공형 어린이집 유효기간 내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인증을 받아 그 점수가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 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표 IV-1-5 참조).⁴⁹⁾

〈표 IV-1-5〉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기준

취소 조건
- 평가인증 취소 시
- 공공형 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인증을 받아 그 점수가 90.00점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1호부터 3호까지) 비용 및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제외 사유 및 기본요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마. 공공형 어린이집 일반적 특성

2013년 5월말 기준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은 1,056개소이다. 이들 어린이집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분포

<표 IV-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2년에 132개소,

49)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는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미달 시설은 시정명령 후 정해진 기간까지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공인 취소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2013년에 299개소가 지정되어 2011년 대비 431개소가 늘어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3년 현재 전체 공공형 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이 731개소로 69.2%를, 가정어린이집이 325개소로 30.8%를 차지한다.

경기도 소재 공공형 어린이집이 225개소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남 지역이 108개소로 많았다. 경기도와 경남의 경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늘어났고, 울산과 전북의 경우 2012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곳이 없었으나 2013년에 다시 각각 추가로 13개소, 20개소가 지정되었다(표 IV-1-6 참조).⁵⁰⁾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읍·면 지역, 대도시 순이었다. 중소도시에는 특히 가정 어린이집의 농어촌 비율이 높았고, 읍·면 지역에는 민간 어린이집의 농어촌 비율이 높았다(표 IV-1-7 참조).

〈표 IV-1-6〉 시·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유형: 2011~2013

단위: 개소

시도	2011			2012			2013			계		
	전체	민간	가정	전체	민간	가정	전체	민간	가정	전체	민간	가정
전체	625	426	199	132	89	43	299	216	83	1,056	731	325
부산	18	7	11	30	12	18	15	8	7	63	27	36
대구	41	37	4	12	9	3	19	15	4	72	61	11
인천	30	21	9	1	1	-	13	11	2	44	33	11
광주	19	17	2	5	2	3	6	4	2	30	23	7
대전	41	30	11	6	4	2	19	13	6	66	47	19
울산	37	25	12	-	-	-	13	8	5	50	33	17
세종	2	1	1	-	-	-	1	1	-	3	2	1
경기	162	74	88	24	20	4	39	19	20	225	113	112
강원	29	20	9	12	6	6	35	21	14	76	47	29
충북	31	27	4	-	-	-	-	-	-	31	27	4
충남	20	18	2	7	5	2	29	18	11	56	41	15
전북	40	22	18	-	-	-	20	15	5	60	37	23
전남	25	22	3	3	3	-	-	-	-	28	25	3
경북	41	39	2	8	8	-	34	34	-	83	81	2
경남	63	43	20	18	16	2	27	23	4	108	82	26
제주	26	23	3	6	3	3	29	26	3	61	52	9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50)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가 있으므로 공공형 어린이집 대상 지역에서 제외함.

〈표 IV-1-7〉 지역규모별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

단위: %(개소)

구분	2011			2012			2013			계		
	전체	민간	가정	전체	민간	가정	전체	민간	가정	전체	민간	가정
대도시	27.4	30.8	20.1	35.6	28.1	51.2	25.1	25.5	24.1	27.7	28.9	25.2
중소도시	44.5	35.4	63.8	20.5	18.0	25.6	32.1	25.9	48.2	38.0	30.5	54.8
읍면	28.2	33.8	16.1	43.9	53.9	23.3	42.8	48.6	27.7	34.3	40.6	20.0
계 (수)	100.0 (625)	100.0 (426)	100.0 (199)	100.0 (132)	100.0 (89)	100.0 (43)	100.0 (299)	100.0 (216)	100.0 (83)	100.0 (1,056)	100.0 (731)	100.0 (325)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표 IV-1-8〉 공공형 어린이집 정원과 현원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계(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계(수)
전체								
전체	28.6	30.6	40.9	100.0(62,624)	29.4	31.2	39.4	100.0(54,990)
2011	30.2	36.2	33.6	100.0(35,133)	30.8	36.5	32.6	100.0(30,928)
2012	28.7	16.9	54.3	100.0(8,265)	29.9	17.4	52.7	100.0(7,208)
2013	25.7	26.0	48.3	100.0(19,226)	26.7	27.2	46.1	100.0(16,854)
민간								
전체	28.9	28.0	43.1	100.0(56,599)	29.7	28.7	41.6	100.0(49,808)
2011	31.3	33.0	35.7	100.0(31,419)	32.0	33.4	34.6	100.0(27,761)
2012	26.3	16.1	57.6	100.0(7,455)	27.4	16.7	55.9	100.0(6,479)
2013	25.7	24.2	50.1	100.0(17,725)	26.6	25.4	47.9	100.0(15,568)
가정								
전체	25.9	54.3	19.9	100.0(6,025)	26.8	54.6	18.6	100.0(5,182)
2011	20.4	63.5	16.0	100.0(3,714)	21.1	63.8	15.1	100.0(3,167)
2012	51.1	24.3	24.6	100.0(810)	51.6	24.0	24.4	100.0(729)
2013	25.6	47.5	26.8	100.0(1,501)	27.0	49.1	24.0	100.0(1,286)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공공형 어린이집의 정원은 총 62,600여명으로 지역별 분포는 읍·면 지역이 40.9%, 중소도시 30.6%, 대도시 28.6%이다. 이 중 민간어린이집의 정원은 56,600여명이고,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은 6,000여명으로 민간어린이집이 90.4%를 차지한다(표 IV-1-8 참조).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현원으로 살펴보면 총 54,900여명으로 정원 대비 87.7%이다 지역분포는 읍·면 지역이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중소도시 31.2%, 대도시 29.4% 순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이 90.7%로 정원 분포와 유사하다.

2) 건물 유형

가) 건물 유형

공공형 어린이집 건물유형은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이 82.1%로 대다수이고, 민간개인어린이집은 71.3%가 단독 건물 어린이집이다. 상가건물도 6.6%이다. 선정 연도별 차이는 민간어린이집은 전용 건물의 비율이 2011년보다 2012년과 2013년에 증가하였고 상가 건물은 감소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은 특히 2013년에 그 전 연도들에 비하여 공동주택의 비율이 증가하였다(표 IV-1-9 참조).

〈표 IV-1-9〉 시설유형 및 지정 연도별 건물유형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시설 전용	상가	종교+ 복지시설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연립 다세대	기타	복합 주택	계(수)
전체									
전체	50.7	4.5	4.9	5.0	27.6	0.8	3.2	3.2	100.0(1,056)
2011	47.3	6.3	5.1	4.5	28.5	1.0	3.5	3.8	100.0(625)
2012	57.6	0.8	6.1	6.8	25.0	0.8	1.5	1.5	100.0(132)
2013	54.8	2.7	4.0	5.4	26.8	0.3	3.3	2.7	100.0(299)
민간개인									
전체	71.3	6.6	6.8	3.6	3.4	0.2	4.4	4.2	100.0(731)
2011	66.7	9.2	7.0	3.1	4.7	0.2	4.9	1.1	100.0(426)
2012	82.0	1.1	9.0	4.5	-	-	2.2	3.7	100.0(89)
2013	75.9	3.7	5.6	4.2	2.3	0.5	4.2	3.7	100.0(216)
가정									
전체	4.3	-	0.6	8.3	82.1	1.8	0.6	2.2	100.0(325)
2011	5.6	-	1.0	7.6	79.8	2.5	0.5	3.0	100.0(199)
2012	7.0	-	-	11.6	76.7	2.3	-	2.3	100.0(43)
2013	-	-	-	8.4	90.4	-	1.2	-	100.0(83)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3)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을 운영한다는 비율은 민간개인어린이집은 97% 수준이고 가정어린이집은 4% 정도이다. 이러한 경향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된 연도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 민간개인어린이집의 경우에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둔 어린이집 비율은 약 40% 수준이고 누리과정 교사 대비 보조교사의 수는 14% 정도이다(표 IV-1-10 참조).

〈표 IV-1-10〉 누리과정 운영 비율

단위: %(명)

구분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비율			민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조교사	
	전체	민간개인	가정	보조교사 둔 비율	누리교사 대비 보조교사 수
전체	68.3	96.9	4.0	39.7	0.14
2011	68.4	98.4	4.0	38.3	0.13
2012	68.2	100.0	2.3	47.2	0.16
2013	68.2	92.6	4.8	39.4	0.15
X ² (df)	0.01	18.9***	0.5	2.47(2)	1.17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p < .001$.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과 관리의 적절성

제2장에서는 우수한 민간 개인·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기 위한 각종 기준이 적절한지를 전문가 의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자격 기준의 적절성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신청예외 기준, 기본 신청자격 기준을 알아보았으며, 후자에서는 포괄적 점수 산정 방식, 기본항목 및 배점의 적절성, 가감 항목 및 점수, 선정 기준 점수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가.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자격 기준의 적절성

1) 신청 제외 기준

공공형 어린이집의 신청 제외 자격 기준 3종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은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 미구비 67%,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68%, 대표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 조건으로 63%로 조사되었다. 부적절하다는 비율은 항목별로 20~24% 사이이다. 즉, 대체로 20~25% 정도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하지만 다수인 2/3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무의미하다(표 IV-2-1 참조).

〈표 IV-2-1〉 신청 제외 기준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놀이터 구비 못한 경우							
전체	5.0	15.0	13.0	31.0	36.0	100.0(100)	3.78
관련 학과 교수	6.2	18.5	7.7	27.7	40.0	100.0(65)	3.77
보육 관련 전문가	2.9	8.6	22.9	37.1	28.6	100.0(35)	3.80
t							-0.12
원장이 다른 시설 설치·운영							
전체	10.0	14.0	8.0	21.0	47.0	100.0(100)	3.81
관련 학과 교수	7.7	15.4	10.8	23.1	43.1	100.0(65)	3.78
보육 관련 전문가	14.3	11.4	2.9	17.1	54.3	100.0(35)	3.86
t							-0.24
대표자가 다른 시설 설치·운영							
전체	9.0	14.0	14.0	21.0	42.0	100.0(100)	3.73
관련 학과 교수	6.2	15.4	16.9	20.0	41.5	100.0(65)	3.75
보육 관련 전문가	14.3	11.4	8.6	22.9	42.9	100.0(35)	3.69
t							0.24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2) 기본 신청 자격 기준

다음은 세 가지 공공형 어린이집의 기본 신청자격 기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즉, 기본 조건에 응답자 다수가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 90점 이상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의견이 84%이다. 2011년 연구(서문희·양미선·송신영, 2011)에서 평가인증 점수에 하한선을 두는 방안에 대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장들은 70.6%, 학계 63.5%, 보육정보센터장 53.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하한선 두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넓어졌다고 하겠다.

또한 지난 6개월 간 정원 충족률을 80%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에는 81%,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정원 충족률을 50%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78%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평가인증 점수는 5% 미만이고 정원 충족률은 7% 수준이다(표 IV-2-2 참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신청 자격 기준은 학계가 보육 관련 전문가들보다 현행의 기본 신청 자격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더 많았다.

〈표 IV-2-2〉 기본 신청 자격 기준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90점 이상						
전체	4.0	12.0	45.0	39.0	100.0(100)	4.19
관련 학과 교수	3.1	9.2	46.2	41.5	100.0(65)	4.26
보육 관련 전문가	5.7	17.1	42.9	34.3	100.0(35)	4.06
t						1.22
6개월간 정원 충족률 80% 이상						
전체	7.0	12.0	52.0	29.0	100.0(100)	4.03
관련 학과 교수	6.2	10.8	53.8	29.2	100.0(65)	4.06
보육 관련 전문가	8.6	14.3	48.6	28.6	100.0(35)	3.97
t						0.51
농어촌 지역 50% 이상 유지						
전체	7.0	15.0	62.0	16.0	100.0(100)	3.87
관련 학과 교수	6.2	15.4	63.1	15.4	100.0(65)	3.88
보육 관련 전문가	8.6	14.3	60.0	17.1	100.0(35)	3.86
t						0.12

주: X^2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의 적절성

1) 포괄적 점수 산정 방식

포괄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점수 산정 방식의 적절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현행의 산정 방식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났다(표 IV-2-3 참조).

〈표 IV-2-3〉 선정 점수 산정 방식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적절	부적절	계(수)	$X^2(df)$
전체	76.0	24.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73.8	26.2	100.0(65)	0.47(1)
보육 관련 전문가	80.0	20.0	100.0(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약 1/4 정도는 현행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학계에서 현행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2) 기본 항목 및 배점 적절성

가) 기본 항목

기본 점수 항목인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이용 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지자체 특성화 지표의 다섯 가지 항목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기본 점수 항목으로 적절한지를 학계 및 보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으로 알아보았다.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IV-2-4 참조).

〈표 IV-2-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본 점수 적절성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평가인증 점수	1.0	1.0	7.0	40.0	51.0	100.0(100)	4.39
2011년 조사	2.1	2.8	7.1	30.9	57.1	100.0(282)	4.38
건물 소유·이용 형태	-	1.0	14.0	42.0	43.0	100.0(100)	4.27
2011년 조사	1.4	6.7	22.7	34.8	34.4	100.0(282)	3.94
1급 보육교사 비율	-	2.0	13.0	47.0	38.0	100.0(100)	4.21
2011년 조사	1.8	2.8	13.5	36.5	45.4	100.0(282)	4.21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1.0	2.0	19.0	53.0	25.0	100.0(100)	3.99
지자체 특성화	1.0	6.0	18.0	55.0	20.0	100.0(100)	3.87
2011년 조사	2.8	1.8	36.5	42.6	16.3	100.0(282)	3.6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첫째,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비율은 75~91%이고 부적절하다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적절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평가인증으로, 91%가 기본 점수 항목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건물 소유·이용 형태와 1급 보육교사 비율은 85%이며,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은 78%, 지자체 특성화 지표는 75%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자체 특성화 지표의 경우 기본 점수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5점 평균으로 보아도 3.87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부적절하다는 비율은 7%였다.

둘째, 2011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적절하다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건물 소유·이용 형태로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2011년 조사 시 69.2%에서 2013년 85%로 증가하였다. 어린이집 건물 소유·이용 형태가 공공성 보장에 갖는 의미가 다소 증가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지자체 특성화 지표도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58.9%에서 75.0%로 증가하였다.

〈표 IV-2-5〉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본 점수 적절성 응답자 차이: 5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이용 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취약 보육서비스 운영	지자체 특성화	(수)
전체	4.39	4.27	4.21	3.99	3.87	(100)
관련 학과 교수	4.42	4.26	4.29	3.95	4.02	(65)
보육 관련 전문가	4.34	4.29	4.06	4.06	3.60	(35)
t	0.46	-0.15	1.52	-0.63	2.43*	
2011년 조사	4.38	3.94	4.21	-	3.68	(2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 $p < .05$.

<표 IV-2-5>는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나타내는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지자체 특성화 지표로, 보육 관련 전문가는 5점 척도로 평균 3.60점인데 비하여 학계는 4.02점이다. 즉 보육 전문가들이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높다. 이외의 항목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평가인증 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을 기본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학계에서 많았고, 건물 소유 및 이용형태, 취약 보육서비스 운영의 경우 보육 관련 전문가가 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나) 기본 항목 배점

(1) 항목별 배점 비중

① 평가인증 점수(35점), ② 건물 소유·이용 형태(20점), ③ 보육교직원 전문성(30점), ④ 원장 전문성(5점), ⑤ 취약보육서비스 운영(5점), ⑥ 지자체 특성화 지표(5점)로 선정 기준별 점수 배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 매우 적절하다 9%였으며 적절하다는 의견은 63%로 72%가 적절하다고 본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11%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계보다 보육 관련 전문가들이 항목별 배점을 더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표 IV-2-6 참조).

항목별 배점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한 배점으로 평가인증 항목은 평균이 28.64점으로 낮추어 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음을 나타냈으며, 학계가 보육 관련 전문가 집단보다 더 낮게 배점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높았다. 건물 소유·이용 형태는 15점, 보육교사 전문성은 23.18점으로, 이 역시 기준을 낮추자는 의견이 많고, 반대로 원장 전문성은 16.36점, 취약보육서비스 운영과 지자체 특성화 지표는 5.91점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집단간

차이로는 특히 원장 전문성에 대하여 특히 보육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 배점을 높이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7 참조).

〈표 IV-2-6〉 항목별 배점 비중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1.0	10.0	17.0	63.0	9.0	100.0(100)	3.69
관련 학과 교수	1.5	10.8	16.9	63.1	7.7	100.0(65)	3.65
보육 관련 전문가	-	8.6	17.1	62.9	11.4	100.0(35)	3.77
t							-0.73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표 IV-2-7〉 항목별 적절한 배점

단위: 점(명)

구분	평가 인증	건물 소유·이용 형태	보육교사 전문성	원장 전문성	취약 보육서비스 운영	지자체 특성화 지표	(수)
전체	28.64	15.00	23.18	16.36	5.91	5.91	(11)
관련 학과 교수	27.50	15.00	23.75	14.38	6.25	6.25	(8)
보육 관련 전문가	31.67	15.00	21.67	21.67	5.00	5.00	(3)
t	-0.74	0.00	0.38	-1.39	1.53	1.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2) 항목별 조건별 변별력

다음 <표 IV-2-8>은 평가인증 점수 등 6가지 항목에 배당된 점수를 조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변별력을 알아본 것이다. 또한 변별력에 대한 응답 결과를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평가 항목 중 가장 변별력이 있다고 응답한 항목은 건물 소유·이용 형태로, 응답자의 30%가 이를 매우 변별력 있다고 평가하였다. 2011년 조사에서는 건물 유형에 따라 점수를 10, 8, 6, 5점으로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점수 배점이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약 20%로 비교적 높았었다. 또한 5점 평균으로 2011년에는 건물 소유·이용 형태에 대한 변별력 평균이 3.41점이었던 반면, 금년 조사에서는 3.94점으로 나타나 이 항목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비율이 70% 이상일 때 30점, 60~70%일 때 24점, 50~60%일 때 13점, 45~50%일 때 5점, 그 미만일 때 0점을 부여하는 1급 보육교사 비율도 전문가의 70%가

변별력있다고 응답하였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10% 내외였다. 2011년의 경우 1급 보육교사 비율을 60% 이상일 때 10점, 50~60%일 때 6점을 부여하였는데 2년 전보다 변별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은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으로 20% 정도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원장 경력은 현행 15년 이상일 경우 5년, 7~15년의 경우 3점, 7년 미만일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10년 이상일 경우 10점, 5~10년의 경우 7점, 5년 미만일 경우 5점을 부여하던 2011년보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높아졌다. 취약보육, 특성화 지표에 대해서도 2/3 정도는 배점이 적절하다고 보았다(표 IV-2-8 참조).

〈표 IV-2-8〉 각 항목의 조건별 변별력 적절성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평가인증 점수	1.0	5.0	28.0	50.0	16.0	100.0(100)	3.75
2011년 조사	4.6	15.2	21.3	42.2	16.7	100.0(282)	3.51
건물 소유·이용 형태	-	6.0	24.0	40.0	30.0	100.0(100)	3.94
2011년 조사	3.5	19.9	26.2	33.0	17.4	100.0(282)	3.41
1급 보육교사 비율	-	9.0	21.0	49.0	21.0	100.0(100)	3.82
2011년 조사	1.8	11.7	28.4	41.5	16.7	100.0(282)	3.60
원장 재직 경력	4.0	16.0	20.0	40.0	20.0	100.0(100)	3.56
2011년 조사	3.5	12.8	33.7	36.9	13.1	100.0(282)	3.43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2.0	8.0	23.0	46.0	21.0	100.0(100)	3.76
지자체 특성화 지표	2.0	8.0	27.0	45.0	18.0	100.0(100)	3.69
2011년 조사	1.8	9.6	39.0	34.0	15.6	100.0(282)	3.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표 IV-2-9〉 각 항목의 조건별 변별력 적절성 응답자 차이: 5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이용 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원장 재직 경력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지자체 특성화 지표	(수)
전체	3.75	3.94	3.82	3.56	3.76	3.69	(100)
관련 학과 교수	3.75	3.98	3.86	3.48	3.75	3.77	(65)
보육 관련 전문가	3.74	3.86	3.74	3.71	3.77	3.54	(35)
t	0.06	0.69	0.65	-1.11	-0.09	1.17	
2011년 조사	3.51	3.41	3.60	3.43	-	3.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전문가 특성별로는 5점 척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 집단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물 소유·이용 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지자체 특성화 지표에서 학계가 적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반면 원장 재직 경력,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에서는 보육 관련 전문가가 적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IV-2-9 참조).

3) 가감점 항목 및 배점 적절성

가) 가점

(1) 가점 항목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 산정 시 가점 항목 8개에 조사한 결과 가점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응답은 55~92%이다. 담임 보육교사 급여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지급 항목이 가장 높고 현원대비 유아 30% 이상 비율이 가장 낮다.

가감 8개 항목을 대체로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절성 정도가 높은 항목들은 담임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지급, 어린이집 정보 공개, 원장 관련학과 학위 소지 및 경력으로 5점 척도로 각각 4.57점, 4.47점, 4.27점이다. 다음으로는 대표자·원장 동일인 여부, 현 기관 교사 근속 연수,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항목들로, 이들은 4.1~4.0점 사이이다. 5점 척도에서 4점 미만 항목들은 원장 현기관 근속연수와 현원대비 유아 30% 이상 비율이다(표 IV-2-10 참조).

〈표 IV-2-10〉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 항목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현 기관 교사 근속 연수	-	-	18.0	59.0	23.0	100.0(100)	4.05
원장 관련학과 학위 소지 및 경력	-	3.0	10.0	44.0	43.0	100.0(100)	4.27
원장 현기관 근속연수	1.0	5.0	27.0	51.0	16.0	100.0(100)	3.76
어린이집 정보 공개	-	1.0	7.0	36.0	56.0	100.0(100)	4.47
현원 대비 유아 30% 이상	2.0	10.0	33.0	39.0	16.0	100.0(100)	3.57
대표자·원장 동일인 여부	-	4.0	21.0	36.0	39.0	100.0(100)	4.10
최근 3년간 대표자, 원장 미변경	2.0	1.0	23.0	39.0	35.0	100.0(100)	4.04
담임 보육교사 급여 국공립 기준	1.0	2.0	6.0	21.0	70.0	100.0(100)	4.5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전문가 집단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현 기관 교사 근속 연수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학계가 관련 전문가들보다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IV-2-11 참조).

〈표 IV-2-1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 항목 적절성: 5점 평균

구분	단위: 점(명)								(수)
	현 기관 교사 근속 연수	원장 관련학과 학위 소지 및 경력	원장 현기관 근속연수	어린이집 정보 공개	현원 대비 유아 30% 이상	대표자 · 원장 동일인 여부	최근 3년간 대표자, 원장 미변경	담임 보육교사 급여 국공립 기준	
전체	4.05	4.27	3.76	4.47	3.57	4.10	4.04	4.57	(100)
관련 학과 교수	4.03	4.29	3.77	4.55	3.63	4.11	3.92	4.65	(65)
보육 관련 전문가	4.09	4.23	3.74	4.31	3.46	4.09	4.26	4.43	(35)
t	-0.41	0.40	0.15	1.71	0.88	0.12	-1.79	1.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2) 가점 항목 배점

다음 <표 IV-2-12>는 선정기준 세부항목에 대한 가점 항목의 배점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다. 가점 항목 배점의 적절성도 항목 자체에 대한 적절성과 같은 평가 성향을 보였다.

가장 적절하다는 항목은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을 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의 인건비 기준으로 지급하는 항목으로 부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2%이었고, 적절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항목으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12%를 차지했다.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항목의 적절성 평가가 낮은 것은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 이외의 운영비를 또 지원하는 데서 오는 불합리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외에 원장이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10%이었다(표 IV-2-12 참조).

전문가 집단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다만 보육교사의 급여를 국공립 기준으로 맞추는 것에 대하여 학계에서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표자와 원장 미변경에 대한 배점은 보육 관련 전문가가 배점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았다(표 IV-2-13 참조).

〈표 IV-2-12〉 가점 항목의 배점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현 기관 근속 3년 이상 교사 30% 이상	1.0	1.0	13.0	59.0	26.0	100.0(100)	4.08
원장 관련 학과 학위 소지 및 경력	1.0	6.0	13.0	41.0	39.0	100.0(100)	4.11
현 기관 10년 이상 근속 원장	2.0	8.0	33.0	40.0	17.0	100.0(100)	3.62
어린이집 정보 공개	-	5.0	8.0	37.0	50.0	100.0(100)	4.32
현원 대비 유아 30% 이상	3.0	9.0	29.0	44.0	15.0	100.0(100)	3.59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1.0	4.0	21.0	41.0	33.0	100.0(100)	4.01
대표자 원장 동일인 여부	-	7.0	19.0	40.0	34.0	100.0(100)	4.01
담임 보육교사 급여 국공립 기준	2.0	-	3.0	29.0	66.0	100.0(100)	4.5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표 IV-2-13〉 가점 항목의 배점 적절성: 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현 기관 근속 3년 이상 교사 30% 이상	원장 관련 학과 학위 소지 및 경력	현 기관 10년 이상 근속 원장	정보 공개	현원 대비 유아 30% 이상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대표자 원장 동일인	교사 급여 국공립 기준	(수)
전체	4.08	4.11	3.62	4.32	3.59	4.01	4.01	4.57	(100)
관련 학과 교수	4.12	4.18	3.58	4.35	3.63	3.91	3.94	4.65	(65)
보육 관련 전문가	4.00	3.97	3.69	4.26	3.51	4.20	4.14	4.43	(35)
t	0.94	1.11	-0.52	0.56	0.58	-1.57	-1.08	1.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나) 감점 항목 및 항목별 배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두 가지 감점 항목에 대한 적절성에 조사 결과이다.

월 용자 상환액 및 임대료 합에 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을 감점 항목으로 보는 항목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84%이었으며 최근 3년간 교직원의 보수교육 미이수 항목의 경우 72%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각각 4.0%, 11.0%이다.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비율의 경우 보육 관련 전문가가 학계보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교직원의 보수교육 미이수의 경우 학계에서 적절성 점수가 더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표 IV-2-14 참조).

감점 항목별 배점은 최근 3년 이내 보수 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씩 최대 5까지 감점되는 것에 대하여 85%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계에서는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41.5%로 보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보다 10% 이상 높았다.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에 따른 감점 최대 10점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76%로 높으나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8%가 되었다. 특히 학계에서는 이 항목 감점

배점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약 3%로 나타났다(표 IV-2-15 참조).

〈표 IV-2-1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감점 항목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입대료·융자금 상환액 비율							
전체	-	4.0	12.0	43.0	41.0	100.0(100)	4.21
관련 학과 교수	-	4.6	16.9	38.5	40.0	100.0(65)	4.14
보육 관련 전문가	-	2.9	2.9	51.4	42.9	100.0(35)	4.34
t							-1.21
교직원 보수교육 이수							
전체	1.0	10.0	17.0	63.0	9.0	100.0(100)	4.46
관련 학과 교수	1.5	10.8	16.9	63.1	7.7	100.0(65)	4.48
보육 관련 전문가	-	8.6	17.1	62.9	11.4	100.0(35)	4.43
t							0.31

주: X^2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표 IV-2-15〉 감점 항목의 배점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입대료·융자금 상환액 비율							
전체	2.0	6.0	16.0	45.0	31.0	100.0(100)	3.97
관련 학과 교수	3.1	4.6	15.4	44.6	32.3	100.0(65)	3.98
보육 관련 전문가	-	8.6	17.1	45.7	28.6	100.0(35)	3.94
t							0.21
2011년 조사							
전체	2.8	9.4	27.4	34.9	25.5	100.0(106)	
교직원 보수교육 미이수							
전체	-	3.0	12.0	47.0	38.0	100.0(100)	4.20
관련 학과 교수	-	4.6	10.8	43.1	41.5	100.0(65)	4.22
보육 관련 전문가	-	-	14.3	54.3	31.4	100.0(35)	4.17
t							0.27
2011년 조사							
전체	1.9	4.7	15.1	34.0	44.3	100.0(106)	

주: X^2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다) 가·감점에 대한 대안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8개 가점 항목이나 2개의 감점을 없앨 경우에, 이를 신청 조건이나 기본 점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삭제하는 편

이 좋은 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문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IV-2-16〉 가점 부여에 대한 대안

단위: %(명)

구분	신청 자격 조건에 포함	기본 점수 항목에 포함	삭제	계(수)	X ² (df)
교사 근속 연수					
전체	16.0	77.0	7.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20.0	72.3	7.7	100.0(65)	na
보육 관련 전문가	8.6	85.7	5.7	100.0(35)	
원장 관련학과 학위 소지 및 경력					
전체	39.0	55.0	6.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38.5	56.9	4.6	100.0(65)	na
보육 관련 전문가	40.0	51.4	8.6	100.0(35)	
원장 현 기관 근속 연수					
전체	19.0	66.0	15.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20.0	63.1	16.9	100.0(65)	0.80(2)
보육 관련 전문가	17.1	71.4	11.4	100.0(35)	
어린이집 정보 공개					
전체	55.0	43.0	2.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60.0	36.9	3.1	100.0(65)	na
보육 관련 전문가	45.7	54.3	-	100.0(35)	
현원 대비 유아 30% 이상					
전체	31.0	44.0	25.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32.3	46.2	21.5	100.0(65)	1.19(2)
보육 관련 전문가	28.6	40.0	31.4	100.0(35)	
최근 3년간 대표자·원장 미변경					
전체	34.0	54.0	12.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38.5	47.7	13.8	100.0(65)	2.98(2)
보육 관련 전문가	25.7	65.7	8.6	100.0(35)	
대표자·원장 동일인 여부					
전체	32.0	51.0	17.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29.2	49.2	21.5	100.0(65)	2.81(2)
보육 관련 전문가	37.1	54.3	8.6	100.0(35)	
보육교사 급여 국공립 기준					
전체	39.0	58.0	3.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40.0	55.4	4.6	100.0(65)	na
보육 관련 전문가	37.1	62.9	-	100.0(35)	

주: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표 IV-2-17〉 감점 부여에 대한 대안

단위: %(명)

구분	신청 자격 조건에 포함	기본 점수 항목에 포함	삭제	계(수)
입대료·융자금 상환액 비율(감점)				
전체	38.0	56.0	6.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38.5	53.8	7.7	100.0(65)
보육 관련 전문가	37.1	60.0	2.9	100.0(3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미이수(감점)				
전체	40.0	57.0	3.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40.0	56.9	3.1	100.0(65)
보육 관련 전문가	40.0	57.1	2.9	100.0(35)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첫째, 8개 가점 항목 중 기본 점수에 포함시키자는 응답이 과반수가 넘는 항목이 6개이다. 교사 근속 연수는 77%이고 원장 현 기관 근속 연수도 66%이며, 원장 관련학과 학위 소지 및 경력, 최근 3년간 대표자·원장 미변경, 대표자·원장 동일인 여부, 보육교사 급여 국공립 기준이 50%대이다. 두 개 감점 항목도 기본 점수에 포함이 모두 56~57% 수준이고, 신청 조건으로 하자는 의견이 38~40% 정도이다(표 IV-2-16, 표 IV-2-17 참조).

둘째, 신청 자격에 포함하자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어린이집 정보공개로 55%이다. 특히 학계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 원장 관련학과 학위 소지 및 경력, 현원 대비 유아 30% 이상, 최근 3년간 대표자·원장 미변경, 대표자·원장 동일인 여부, 보육교사 급여 국공립 기준 등 5개 항목도 기본 점수에 포함하자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신청 자격에 포함하자는 비율도 30%대이다.

셋째, 삭제하자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현원 대비 유아 비율 30% 이상으로 응답자 25% 정도가 삭제를 원하였다. 특히 보육 관련 전문가들이 이러한 의견을 더 많이 나타냈다. 이외에 삭제하자는 비율이 10% 대인 항목은 모두 원장 관련 항목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보면 가점 및 감점 항목은 현원 대비 유아 비율 30%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청 조건이나 기본 항목에 포함시켜도 됨을 알 수 있다.

4) 선정 기준 점수 등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 80점에 대해서는 보육 관련 전문가의 경우

74.3%는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학계에서는 66.2%만이 적절하다고 하여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2011년, 2012년 85점에서 낮아진 것인데, 전문가 조사에서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2011년 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18 참조).

〈표 IV-2-18〉 선정 기준 점수 80점 이상의 적절성

구분			단위: %(명)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계(수)
전체	69.0	31.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66.2	33.8	100.0(65)
보육 관련 전문가	74.3	25.7	100.0(35)
$X^2(df)$	0.70(1)		
2011년 조사	72.0	28.0	100.0(2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한편 기준점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계 및 전문가들은 적절한 점수로 64.5%가 90~94점 사이를 제시하였고, 평균 89.1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5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6.4%나 나타났으며, 특히 학계의 경우 현행 점수보다 기준 점수를 더 많이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IV-2-19 참조).

〈표 IV-2-19〉 적절한 산정기준 점수

구분					단위: %(명), 점	
	85-89점	90-94점	95-99점	100점	계(수)	평균
전체	29.0	64.5	3.2	3.2	100.0(31)	89.10
관련 학과 교수	27.2	63.6	4.5	4.5	100.0(22)	89.41
보육 관련 전문가	33.3	66.7	-	-	100.0(9)	88.33
t						0.84
2011년 조사	39.3	51.9	1.3	-	100.0(79)	

주: X^2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점수가 동일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전국 평균 개소수 비율, 평가인증 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 및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73%가 적절하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특히 보육 관련 전문가보다 학계에서 이를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2011년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전국 평균 개소수 비율, 평가인증 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의 세 가지만

적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우선순위 방식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9.6%로 나타났다 (표 IV-2-20 참조).

〈표 IV-2-20〉 동 점수 시 우선 순서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1.0	8.0	18.0	55.0	18.0	100.0(100)	3.81
관련 학과 교수	-	4.6	13.8	60.0	21.5	100.0(65)	3.98
보육 관련 전문가	2.9	14.3	25.7	45.7	11.4	100.0(35)	3.49
t							2.63*
2011년 조사	1.4	15.2	23.8	46.8	12.8	100.0(282)	3.54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 $p < .05$.

3.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결과의 적절성

제3장에서는 점수 산정에 사용된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의 현황을 통하여 선정 결과의 적절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 기본 사항 준수

공공형 어린이집 6개 기본 준수 사항은 대체로 잘 지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3-1〉 시설유형별 기본 사항 준수

단위: %(개소)

구분	전체	2011	2012	2013
인가공간 용도 무단전용	95.3	95.1	100.0	92.9
종사자 근무 상황 부적절	99.6	99.3	100.0	100.0
반별 초과보육 허용 초과	100.0	100.0	100.0	100.0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87.5	85.5	87.1	91.5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98.9	98.4	100.0	99.3
혼합반 구성원칙 무시	99.9	100.0	100.0	99.7
(수)	(1,055)	(624)	(132)	(299)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연도별도 약간의 차이지만 2011년 지정 어린이집보다 2012년, 2013년 지정 어린이집이 준수 비율이 높았다. 다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항의 경우 전체의 87.5%만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1 참조).

나. 건물소유 형태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의 건물 소유형태는 자가가 85.4%를 차지하며, 10.9%는 월세, 3.7%는 전세이다. 시설규모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의 자가 비율이 92.9%로 민간개인어린이집 82.1%보다 높다. 선정된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 전년도에 비하여 자가 어린이집 비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2013년에 다시 201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민간과 가정 모두 유사하다(표 IV-3-2 참조).

〈표 IV-3-2〉 시설유형별 건물소유형태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자가	전세	월세	계(수)	자가	전세	월세	계(수)	자가	전세	월세	계(수)
전체	85.4	3.7	10.9	100.0(1,055)	82.1	3.6	14.4	100.0(731)	92.9	4.0	3.1	100.0(324)
2011	83.5	4.5	12.0	100.0(624)	79.8	4.0	16.2	100.0(426)	91.4	5.6	3.0	100.0(198)
2012	97.7	-	2.3	100.0(132)	96.6	-	3.4	100.0(89)	100.0	-	-	100.0(43)
2013	83.9	3.7	12.4	100.0(299)	80.6	4.2	15.3	100.0(216)	92.8	2.4	4.8	100.0(83)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다. 운영

1) 정원 대비 현원 비율

공공형 어린이집의 2013년 4월 기준으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평균 87% 수준이다. 현원율 70% 미만이 11.7%이고 95% 이상도 38.1%이다. 최소 비율은 가정 어린이집으로 30% 미만이 있다.⁵¹⁾ 평균으로 보면 민간개인어린이집에 비하여 가정어린이집의 현원율이 약간 낮다. 연도별 차이는 거의 없다(표 IV-3-3 참조).

51) 지난 6개월간 평균 현원 비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는 현원율이 낮을 수 있음.

〈표 IV-3-3〉 시설유형별 연도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

단위: %(개소), 명

구분	~69%	70~79%	80~89%	90~94%	95~100%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전체									
전체	11.7	12.0	21.5	16.7	38.1	100.0(1,054)	87.09	13.55	29.41
2011	10.6	13.0	23.0	15.6	37.9	100.0(623)	86.94	13.52	31.25
2012	12.1	11.4	19.7	16.7	40.2	100.0(132)	87.57	13.29	42.86
2013	13.7	10.0	19.4	19.1	37.8	100.0(299)	87.19	13.75	29.41
X ² (df)/F							0.1		
민간개인									
전체	10.8	12.2	21.8	17.7	37.5	100.0(730)	87.61	12.66	40.54
2011	9.4	12.5	22.8	16.9	38.4	100.0(425)	87.77	12.56	40.54
2012	14.6	11.2	24.7	12.4	37.1	100.0(89)	86.53	13.48	42.86
2013	12.0	12.0	18.5	21.3	36.1	100.0(216)	87.75	12.54	42.86
X ² (df)/F							0.4		
가정									
전체	13.6	11.4	21.0	14.5	39.5	100.0(324)	85.92	15.33	29.41
2011	13.1	14.1	23.2	12.6	36.9	100.0(198)	85.16	15.28	31.25
2012	7.0	11.6	9.3	25.6	46.5	100.0(43)	89.74	12.77	42.86
2013	18.1	4.8	21.7	13.3	42.2	100.0(83)	85.74	16.49	29.41
X ² (df)/F							1.6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p < .05$.

2) 취약보육 실시

2013년 취약보육은 기본 점수로 5점이 배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기준 중 시·도별 특성화 지표는 시·도별로 지역적 여건, 보육정책 방향, 중점 추진 시책, 민간개인·가정어린이집의 욕구 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던 것을 변경한 것이다.

이를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의 40.8%가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며 3.6%가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고 방과후 보육과 24시간 보육 비율이 각각 1.2%, 0.5%로 전체의 43.2%가 하나 이상의 취약보육을 제공한다. 두 가지를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곳도 3%이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과 24시간 보육은 가정어린이집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이외 취약보육은 대부분 민간개인 어린이집에서 제공한다. 그러나 공공형 어린이집 전체를 보면 가정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 실시 비율이 높다(표 IV-3-4 참조).

실시 비율이 다소 높은 시간연장형 보육의 경우 특히 2013년 지정시 취약보

육을 한다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지표상에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거나 아니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수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풀이된다(표 IV-3-5 참조).

〈표 IV-3-4〉 시설유형별 취약보육 실시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X ² (df)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실시	43.2						
영아전담	-	(-)	-	(-)	-	(-)	-
장애아전담	-	(-)	-	(-)	-	(-)	-
장애아통합	3.6	(1,055)	5.2	(731)	-	(-)	17.5(1)***
방과후전담	-	(-)	-	(-)	-	(-)	-
방과후통합	1.2	(1,055)	1.8	(731)	-	(-)	-
시간연장형	40.8	(1,055)	36.7	(731)	50.0	(324)	16.5(1)***
휴일보육	0.5	(1,055)	0.7	(731)	-	(-)	-
24시간 실시	0.5	(1,055)	0.4	(731)	0.6	(324)	-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p < .001$.

〈표 IV-3-5〉 연도별 시간연장형 보육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전체	40.8	(1,055)	36.7	(731)	50.0	(324)
2011	43.9	(624)	38.3	(426)	56.1	(198)
2012	43.2	(132)	43.8	(89)	41.9	(43)
2013	33.1	(299)	30.6	(216)	39.8	(83)
X ² (df)	10.13**		5.90(2)		7.53(2)*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p < .05$, ** $p < .01$.

라. 아동 안전

1) 차량운행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 운행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이다. 전체 어린이집 중 77.7%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96.2%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운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전체의 약 90%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고 이중 95.8%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고 운행한다. 반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절반 정도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고 이 중 98.1%가 신고 운행 중이다. 즉, 차량은 운행하는 대다수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 운행하고 있다(표 IV-3-6 참조).

〈표 IV-3-6〉 시설유형별 차량 운행 및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차량운행						
전체	77.7	(1,055)	89.7	(731)	50.6	(324)
2011	75.0	(624)	87.8	(426)	47.5	(198)
2012	86.4	(132)	95.5	(89)	67.4	(43)
2013	79.6	(299)	91.2	(216)	49.4	(83)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행						
전체	96.2	(793)	95.8	(636)	98.1	(157)
2011	95.0	(436)	94.3	(348)	97.7	(88)
2012	97.4	(114)	96.5	(86)	100.0	(28)
2013	97.9	(243)	98.0	(202)	97.6	(41)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2) 공기의 질

시설유형별로 석면검사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약 37%만이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석면검사를 한 어린이집의 비율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3-7 참조).

〈표 IV-3-7〉 시설유형별 석면검사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전체	37.1	(105)	36.4	(66)	38.5	(39)
2011	33.3	(84)	30.8	(52)	37.5	(32)
2012	50.0	(8)	25.0	(4)	75.0	(4)
2013	53.8	(13)	70.0	(10)	-	(3)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마. 인력

1) 교사 자격

시설유형별 1급 교사의 비율이 30%가 넘는 경우는 전체 어린이집의 88.5%가 해당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의 경우 1급 교사가 30%가 넘는 비율이 전체의 9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에는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IV-3-8 참조).

〈표 IV-3-8〉 시설유형별 1급 교사 비율 30% 이상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전체	88.5	(959)	86.4	(663)	93.2	(296)
2011	88.1	(538)	85.7	(363)	93.1	(275)
2012	91.5	(130)	88.6	(88)	97.6	(42)
2013	88.0	(291)	86.8	(212)	91.1	(79)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표 IV-3-9〉 시설유형별 교사 자격 급수

단위: %(개소)

구분	1급	2급	3급	계(수)
전체 어린이집	58.5	37.6	3.9	100.0(1,055)
2011	56.1	40.4	3.5	100.0(625)
2012	61.2	34.3	4.5	100.0(132)
2013	62.3	33.1	4.6	100.0(299)
F	8.5***	12.4***	1.6	
민간어린이집	56.9	39.4	3.6	100.0(731)
2011	55.0	42.0	3.0	100.0(426)
2012	58.6	37.3	4.2	100.0(89)
2013	60.2	35.2	4.7	100.0(216)
F	5.3**	9.2***	3.4*	
가정어린이집	62.0	33.4	4.6	100.0(324)
2011	58.4	36.9	4.7	100.0(198)
2012	66.7	28.1	5.1	100.0(43)
2013	68.0	27.8	4.3	100.0(83)
F	3.9*	4.3*	0.8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p < .05$, ** $p < .01$, *** $p < .001$.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급 보육교사의 비율이 평균 58% 내외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이 62%, 민간어린이집이 약 57%로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높다. 공공형으로 지정된 연도별로 1급 보육교사의 비율은 점점 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선정기준 연도에 따른 1급 보육교사 비율의 차이는 유의미했다. 한편 2급 보육교사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교사의 37.6%를 차지하며, 민간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보다 6%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급 보육교사와 달리 2급 보육교사의 경우 선정 연도가 최근일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3급 보육교사 분포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이 4.6%였으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3.6%로 나타났다(표 IV-3-9 참조).

2) 교사 경력

<표 IV-3-10>은 시설유형별 교사 임용 시기를 나타낸 결과이다. 약 80%가 2010년 이후 교사를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교사를 임용한 경우도 약 15%로 나타났다.

<표 IV-3-10> 시설유형별 교사 임용 시기

단위: %(개소)

구분	2010년 이후		2007-2009		2002-2006		2002년 이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어린이집	78.9	22.6	14.8	18.5	5.5	12.4	0.8	4.0	(1,056)
2011	78.7	22.6	14.6	18.5	5.9	13.2	0.8	3.7	(625)
2012	75.7	22.7	18.0	18.9	4.8	9.9	1.5	6.7	(132)
2013	80.8	22.4	13.9	18.4	4.8	11.7	0.5	3.0	(299)
F	2.4 [#]		2.3 [#]		1.0		3.0 [*]		
민간어린이집									
전체	78.3	20.6	15.0	16.8	5.8	11.6	1.0	4.3	(731)
2011	77.5	20.7	15.4	17.4	6.1	11.9	1.0	4.0	(426)
2012	77.1	19.7	16.2	15.7	5.1	9.5	1.6	6.9	(89)
2013	80.3	20.8	13.7	15.9	5.3	12.0	0.7	3.5	(216)
F	1.5		1.0		0.5		1.4		
가정어린이집									
전체	80.4	26.5	14.5	22.0	4.7	14.1	0.4	3.2	(324)
2011	81.4	26.1	12.8	20.5	5.4	15.8	0.4	2.9	(198)
2012	72.6	28.0	21.7	24.1	4.3	10.8	1.4	6.3	(43)
2013	82.0	26.2	14.6	23.9	3.4	10.9	0.0	0.0	(83)
F	2.1		2.9 [#]		0.6		2.6 [#]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p < .1$, ^{*} $p < .05$.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연도로 살펴보면 2011년보다 2012년에, 2012년보다 2013년에 선정된 어린이집일수록 최근에 임용된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정 연도간 1급 교사 비율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전체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보다 2006년 이전에 임용된 교사가 많았다.

가점으로 3점을 다 받게 되는 기준인 3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70% 이상인 경우는 전체 어린이집의 56.6%이며, 가정어린이집이 58.8%로 민간개인어린이집보다 3%p 가량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IV-3-11 참조).

〈표 IV-3-11〉 시설유형별 3년 이상 근무 교사 70% 이상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전체	56.6	(959)	55.7	(663)	58.8	(296)
2011	57.5	(538)	55.6	(363)	61.1	(275)
2012	56.9	(130)	59.1	(88)	52.4	(42)
2013	55.0	(291)	54.2	(212)	57.0	(79)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 보육서비스의 질

1) 평가인증 점수

가) 총 점수

평가인증은 주기별로 지표가 변화되었고, 또한 해마다 점수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모든 어린이집의 현재 동일한 평가인증 점수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규모별로 평가하는 지표나 점수 체계도 다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별 다른 수단이 없으므로 총점으로만 비교하고자 하였다.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는 평균 93.3점으로 전체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균 점수보다 높다. 가정어린이집이 94.2점으로 민간어린이집 92.9점보다 다소 높다. 그러나 80점 미만 시설이 1.1%이고 80~89점이 14.3%이다.

선정된 연도별 변화를 보면 시설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가정어린이집은 2012년과 2013년 선정 어린이집이 2011년에 선정된 어린이집보다 점수가 많이 올라갔

다. 그러나 민간개인어린이집은 오히려 점수가 낮아졌다(표 IV-3-12 참조).

〈표 IV-3-12〉 연도별 시설유형별 평가인증 총점

구분					단위: %(개소), 점	
	80점미만	80~89점	90~94점	95~100점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어린이집	1.1	14.3	44.5	40.1	100.0(1,056)	93.3 (4.0)
2011	1.8	24.2	41.3	32.8	100.0(625)	92.3 (4.5)
2012	-	-	58.3	41.7	100.0(132)	94.3 (2.6)
2013	0.3	-	45.2	54.5	100.0(299)	94.8 (2.8)
X ² (df)/F		140.5(5) ^{***}				47.0 ^{***}
민간(40인 이상)	1.2	14.9	49.6	34.2	100.0(161)	92.7 (5.2)
2011	1.9	26.6	44.2	27.3	100.0(106)	91.8 (4.7)
2012	-	-	73.3	26.7	100.0(15)	94.0 (3.3)
2013	0.6	-	49.4	50.0	100.0(40)	94.8 (2.4)
X ² (df)/F		na				6.84 ^{**}
민간(39인 이하)	1.9	19.3	41.0	37.9	100.0(570)	92.9 (3.9)
2011	2.8	28.3	35.8	33.0	100.0(319)	91.9 (4.4)
2012	-	6.7	53.3	40.0	100.0(75)	93.6 (2.3)
2013	-	-	50.0	50.0	100.0(176)	94.4 (2.9)
X ² (df)/F		na				28.11 ^{**}
가정어린이집	0.6	10.8	37.3	51.2	100.0(324)	94.2 (3.7)
2011	1.0	17.7	39.9	41.4	100.0(198)	93.3 (4.1)
2012	-	-	32.6	67.4	100.0(43)	95.5 (2.6)
2013	-	-	33.7	66.3	100.0(83)	95.6 (2.5)
X ² (df)/F		na				15.0 ^{***}

주: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p < .01$, *** $p < .001$.

나) 영역별 점수

평가인증 영역별 평균 점수를 3점 만점으로 보면 40인 이상 민간어린이집의 영역별 현장관찰 평균 점수로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은 보육과정으로 평균 2.72 점을 나타냈다. 한편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은 상호작용과 교수법으로 평균 2.20점이었다(표 IV-3-13 참조).

39인 이하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은 안전 영역으로 1.97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은 40인 이상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보육과정 영역으로 평균 2.44점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 역시 보육과정 영역이 2.47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은 안전 영역이었다(표 IV-3-14 참조).

〈표 IV-3-13〉 40인 이상 어린이집 현장관찰 평균: 2012년 평가인증

단위: 점(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수)
보육환경	2.32	0.07	1.71	(222)
운영관리	2.61	0.12	2.23	(222)
보육과정	2.72	0.13	2.13	(222)
상호작용과 교수법	2.20	0.11	1.71	(222)
건강과 영양	2.39	0.13	2.00	(222)
안전	2.67	0.22	2.20	(222)
영역 합계	2.48	0.08	2.28	(222)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표 IV-3-14〉 39인 이하 어린이집 시설유형별 현장관찰 평균: 2013년 평가인증

단위: 점(개소)

구분	민간어린이집(39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수)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26	0.07	2.07	(67)	2.27	0.09	2.00	(125)
보육과정	2.44	0.13	1.92	(67)	2.47	0.10	1.92	(125)
상호작용과 교수법	2.07	0.10	1.67	(67)	2.13	0.08	1.80	(125)
건강과 영양	2.40	0.14	1.93	(67)	2.41	0.13	2.00	(125)
안전	1.97	0.13	1.57	(67)	2.02	0.12	1.57	(125)
영역 합계	2.23	0.07	2.02	(67)	2.26	0.06	2.00	(125)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 특별활동과 기타 필요 경비

부모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기타 비용을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제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

가) 특별활동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 개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1.7개,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2개로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을 더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을 3개 이상 실시하는 비율이 43.3%로 국공립어린이집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표 IV-3-15 참조).

〈표 IV-3-15〉 추가 비용 지불 특별활동

구분	단위: %(명), 개				계(수)	평균
	0개	1개	2개	3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34.7	9.9	20.8	34.6	100.0(1,000)	1.7
공공형 어린이집	32.7	9.0	15.0	43.3	100.0(1,000)	2.0
X ² (df)/t	20.1(3) ^{***}					-3.6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 $p < .001$.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의 경우 특별활동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수강 여부를 부모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33.4%,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40.4%가 특별활동을 의무 수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54.7%,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47.1%이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경향성은 보였다(표 IV-3-16 참조).

〈표 IV-3-16〉 특별활동 부모 선택 여부

구분	단위: %(명)			계(수)	X ² (df)
	모두 선택 가능	일부 선택 가능	모두 의무 수강		
국공립 어린이집	54.7	11.9	33.4	100.0(653)	9.3(4)
공공형 어린이집	47.1	12.5	40.4	100.0(67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나) 기타 필요경비

어린이집에 추가 납부하는 특별활동비의 평균을 각 어린이집별로 비교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평균 3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평균 약 4만 6천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집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 이상 납부한다는 비율이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약 9% 정도였다(표 IV-3-17 참조).

기타 비용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평균 1만 2천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평균 2만 2천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기타 비용으로 더 많은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특별활동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납부한 총 비용은 국공립어

린이집의 경우 약 4만 3천원,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약 6만 8천원으로 산출되어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평균적으로 2만 5천원을 더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표 IV-3-17〉 어린이집 납부 비용: 기타 필요 경비

구분					계(수)	단위: %(명), 원
	없음	5만원 미만	5~10만원	10만원 이상		비용 평균
특별활동비						
국공립 어린이집	34.7	36.9	25.5	2.9	100.0(1,000)	30775.4
공공형 어린이집	32.7	18.4	40.0	8.9	100.0(1,000)	46171.5
$X^2(df)/t$	33.9(6) ^{***}					-7.6 ^{***}
기타 비용						
국공립 어린이집	59.7	32.0	7.1	1.2	100.0(1,000)	11992.5
공공형 어린이집	55.3	29.2	9.8	5.7	100.0(1,000)	21643.0
$X^2(df)/t$	36.6(3) ^{***}					-5.2 ^{***}
총계						
국공립 어린이집	17.6	39.5	37.5	5.4	100.0(1,000)	42768.0
공공형 어린이집	16.7	20.3	41.6	21.3	100.0(1,000)	67814.5
$X^2(df)/t$	160.3(3) ^{***}					-9.3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 $p < .001$.

2)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 특성별 차이

가) 특별활동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 개수를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이용자는 경우 평균 2.1개, 가정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평균 1.2개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 받은 특별활동 수가 3개 이상이라는 응답이 45.4%였다. 연령구분별로는 평균이 유아 2.4개, 영아 1.5개로 약 1개 정도의 차이가 났다. 또한 유아의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을 3개 이상 실시한다는 비율은 약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IV-3-18 참조).

특별활동의 부모 선택 여부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의 부모가 특별활동을 모두 의무 수강한다는 비율은 약 40%,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의 부모의 경우 약 48%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보다는 영아의 경우 의무 수강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높고,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타 지역보다 의무 수강하여야 하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V-3-19 참조).

〈표 IV-3-18〉 공공형 추가 비용 지불 특별활동

단위: %(명), 개

구분	0개	1개	2개	3개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2.7	9.0	15.0	43.3	100.0(1,000)	2.0
어린이집 구분						
민간 어린이집	30.7	8.9	15.0	45.4	100.0(908)	2.1
가정 어린이집	52.2	9.8	15.2	22.8	100.0(92)	1.2
X ² (df)/t		21.6(3)**				4.6***
영유아 구분						
영아	45.0	9.3	14.5	31.1	100.0(440)	1.5
유아	23.0	8.8	15.4	52.9	100.0(560)	2.4
X ² (df)/t		63.4(3)**				-8.5***
지역 구분						
대도시	36.1	4.9	13.9	45.1	100.0(324)	2.1
중소도시	30.6	12.2	13.5	43.7	100.0(451)	2.0
읍면	32.0	8.4	19.6	40.0	100.0(225)	1.9
X ² (df)/F		17.8(6)**				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 $p < .01$, *** $p < .001$.

〈표 IV-3-19〉 공공형 특별활동 부모 선택 여부

단위: %(명)

구분	모두 선택 가능	일부 선택 가능	모두 의무 수강	계(수)	X ² (df)
전체	47.1	12.5	40.4	100.0(673)	
어린이집 구분					
민간 어린이집	47.5	12.6	39.9	100.0(629)	1.1(2)
가정 어린이집	40.9	11.4	47.7	100.0(44)	
영유아 구분					
영아	45.9	11.6	42.6	100.0(242)	0.8(2)
유아	47.8	13.0	39.2	100.0(431)	
지역 구분					
대도시	42.0	9.2	48.8	100.0(207)	
중소도시	49.5	15.3	35.1	100.0(313)	11.5(4)*
읍면	49.0	11.1	39.9	100.0(1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 $p < .05$.

나) 기타 필요 경비

특별활동 시설유형별 차이는 민간어린이집 아동은 47,800원, 가정어린이집 아동은 30,000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유아 58,200원, 영아 약

30,000원 정도를 납부한다고 하였다.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소도시에서 다소 많은 비용을 납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IV-3-20 참조).

〈표 IV-3-20〉 공공형 어린이집 납부 비용: 특별활동비

단위: %(명), 천원						
구분	없음	5만원 미만	5~10만원	10만원 이상	계(수)	비용 평균
전체	32.7	18.4	40.0	8.9	100.0(1,000)	46.2
어린이집 구분						
민간 어린이집	30.7	18.0	42.5	8.8	100.0(908)	47.8
가정 어린이집	52.2	22.8	15.2	9.8	100.0(92)	30.0
$X^2(df)/t$	28.5(3) ^{***}					3.0 ^{**}
영유아 구분						
영아	45.0	23.0	26.8	5.2	100.0(440)	30.8
유아	23.0	14.8	50.4	11.8	100.0(560)	58.2
$X^2(df)/t$	9.3(3) ^{***}					-8.6 ^{***}
지역 구분						
대도시	36.1	12.0	47.2	4.6	100.0(324)	44.3
중소도시	30.6	20.0	36.8	12.6	100.0(451)	49.9
읍면	32.0	24.4	36.0	7.6	100.0(225)	41.3
$X^2(df)/F$	34.4(6) ^{***}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 $p < .01$, *** $p < .001$.

〈표 IV-3-21〉 공공형 어린이집 납부 비용: 기타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없음	5만원 미만	5~10만원	10만원 이상	계(수)	비용 평균
전체	55.3	29.2	9.8	5.7	100.0(1,000)	21.6
어린이집 구분						
민간 어린이집	54.1	29.5	10.5	5.9	100.0(908)	22.7
가정 어린이집	67.4	26.1	3.3	3.3	100.0(92)	11.3
$X^2(df)/t$	8.5(3)					3.4 ^{**}
영유아 구분						
영아	60.9	28.6	6.4	4.1	100.0(440)	14.6
유아	50.9	29.6	12.5	7.0	100.0(560)	27.2
$X^2(df)/t$	17.6(3)					-4.1 ^{***}
지역 구분						
대도시	49.7	30.9	13.9	5.6	100.0(324)	24.4
중소도시	56.5	28.2	8.6	6.7	100.0(451)	22.9
읍면	60.9	28.9	6.2	4.0	100.0(225)	15.1
$X^2(df)/F$	14.7(6)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 $p < .01$, *** $p < .001$.

공공형 어린이집 기타 경비는 민간어린이집 이용자 23,000원, 가정어린이집 이용자 11,000원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자녀 연령별로는 영아 15,000원, 유아 27,000원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도시 규모가 클수록 납부하는 비용도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IV-3-21 참조).

총 비용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은 평균적으로 7만원 이상을, 가정어린이집은 약 4만 1천원을 납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는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곳도 전체의 1/5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는 유아가 8만 5천원으로 영아 4만 5천원보다 4만원 정도가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5만 6천원, 대도시 6만 9천원, 중소도시 7만 3천원으로 나타나 읍·면 지역보다 도시에서 더 많은 추가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IV-3-22 참조).

〈표 IV-3-22〉 공공형 어린이집 납부 비용: 총계

단위: %(명), 원						
구분	없음	5만원 미만	5~10만원	10만원 이상	계(수)	비용 평균
전체	16.7	20.3	41.6	21.3	100.0(1,000)	67814.5
어린이집 구분						
민간 어린이집	15.0	19.3	43.7	22.0	100.0(908)	70505.5
가정 어린이집	33.7	30.4	20.7	15.2	100.0(92)	41255.4
$X^2(df)/t$			35.1(3)***			3.5**
영유아 구분						
영아	27.0	26.8	33.6	12.5	100.0(440)	45437.5
유아	8.6	15.2	47.8	28.3	100.0(560)	85396.4
$X^2(df)/t$			108.1(3)***			-9.1***
지역 구분						
대도시	16.4	13.9	50.0	19.8	100.0(324)	68737.7 ^a
중소도시	16.5	20.3	37.6	25.6	100.0(451)	72859.6 ^a
읍면	17.8	29.8	37.3	15.1	100.0(225)	56372.4 ^b
$X^2(df)/F$			33.9(6)***			3.5*

주: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 $p < .05$, ** $p < .01$, *** $p < .001$.

4. 부모의 인식

가. 부모의 인지와 만족도

1) 공공형 어린이집 인지

가) 공공형 자체

본 조사 결과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는 94.4%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임을 알고 있고, 이를 모르는 부모는 5.6%이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보다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이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보다는 유아,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공공형 어린이집 인지 비율이 높았다(표 IV-4-1 참조).

〈표 IV-4-1〉 공공형 어린이집 인지 비율

구분	어린이집 구분		영유아 구분		지역 구분			전체	2011 조사
	민간	가정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알고있음	94.6	92.4	93.0	95.5	96.0	94.0	92.9	94.4	94.5
모름	5.4	7.6	7.0	4.5	4.0	6.0	7.1	5.6	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08)	(92)	(440)	(560)	(324)	(451)	(225)	(1,000)	(1,300)
$X^2(df)$	0.8(1)		3.1(1)		2.6(2)				

단위: %(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나)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

<표 IV-4-2>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함을 알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이다. 이에 부모의 51.6%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적으로 83.2%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84.4%가 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70.6%만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자녀 연령별로 보면 영아 부모 78%, 유아 부모 87.1%가 이를 인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 연령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지역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읍·면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높았다.

다음, 정부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체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50.1%가 잘 알고 있고 32.6%는 대략 안다고 하여 82.7%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보다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알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연령별로는 유아 부모의 85.8%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반면, 영아 부모는 78.7%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4-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보육료가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			계(수)
	모름	대략 앎	잘 앎	모름	대략 앎	잘 앎	
전체	16.8	31.6	51.6	17.3	32.6	50.1	100.0(944)
어린이집 구분							
민간 어린이집	15.6	31.5	52.9	16.8	32.6	50.6	100.0(859)
가정 어린이집	29.4	31.8	38.8	22.4	32.9	44.7	100.0(85)
X ² (df)		11.7(2)**			1.9(2)		
영유아 구분							
영아	22.0	31.3	46.7	21.3	34.0	44.7	100.0(409)
유아	12.9	31.8	55.3	14.2	31.6	54.2	100.0(535)
X ² (df)		14.8(2)**			11.3(2)**		
지역 구분							
대도시	17.0	29.6	53.4	19.3	29.6	51.1	100.0(311)
중소도시	17.5	29.2	53.3	16.3	31.8	51.9	100.0(424)
읍면	15.3	39.2	45.5	16.3	38.8	45.0	100.0(209)
X ² (df)		7.4(4)			5.9(4)		
2011 조사	20.3	32.5	47.2	7.4	34.2	58.4	100.0(1,2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 $p < .01$.

다) 공공 어린이집 인식

<표 IV-4-3>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공공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63.2%가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공공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혀 다르다는 응답은 3.4%, 조금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20.4%로 전체의 23.8%가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12.9%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영아

보다는 유아 부모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공공어린이집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표 IV-4-3〉 공공형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의 유사성

구분	단위: %(명)					계(수)
	전혀 다름	조금 다름	어느정도 그려함	매우 그려함	잘 모름	
전체	3.4	20.4	43.0	20.2	12.9	100.0(944)
어린이집 구분						
민간 어린이집	3.6	20.4	42.8	20.0	13.2	100.0(859)
가정 어린이집	1.2	21.2	44.7	22.4	10.6	100.0(85)
X ² (df)			2.0(4)			
영유아 구분						
영아	3.2	19.8	43.5	18.3	15.2	100.0(409)
유아	3.6	20.9	42.6	21.7	11.2	100.0(535)
X ² (df)			4.4(4)			
지역 구분						
대도시	2.9	19.9	44.1	20.9	12.2	100.0(311)
중소도시	3.8	22.6	40.6	20.0	13.0	100.0(424)
읍면	3.3	16.7	46.4	19.6	13.9	100.0(209)
X ² (df)			4.5(8)			
2011 조사	2.2	20.6	50.3	17.9	9.0	100.0(1,2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2) 공공형 어린이집 영향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이용 기관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가 미친 영향을 질문한 결과 68.6%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8.3%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 모두 69% 내외가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가 현재 기관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여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구분별로도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71.4%, 중소도시 67.5%, 읍면 66.5%가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가 현재 기관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여, 지역 규모가 커질수록 기관 이용 결정에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가 미친 영향이 크을 알 수 있다(표 IV-44 참조).

〈표 IV-4-4〉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가 이용 결정에 미친 영향

단위: %(명)

구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	많은 영향을 미쳤음	계(수)
전체	31.5	40.3	28.3	100.0(944)
어린이집 구분				
민간 어린이집	31.5	40.3	28.2	100.0(859)
가정 어린이집	30.6	40.0	29.4	100.0(85)
X ² (df)		0.1(2)		
영유아 구분				
영아	31.5	40.3	28.1	100.0(409)
유아	31.4	40.2	28.4	100.0(535)
X ² (df)		0.0(2)		
지역 구분				
대도시	28.6	42.1	29.3	100.0(311)
중소도시	32.5	37.3	30.2	100.0(424)
읍면	33.5	43.5	23.0	100.0(209)
X ² (df)		5.7(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표 IV-4-5〉 부모의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 인식

단위: %(명)

구분	저렴한 부모 보육료	정부의 철저한 관리	1인당 높은 보육비용 투자	질높은 교사	깨끗한 외부 환경	기타	계(수)
전체	26.5	41.5	4.8	13.0	7.0	7.2	100.0(944)
어린이집 구분							
민간 어린이집	27.9	41.0	4.8	11.9	7.3	7.1	100.0(859)
가정 어린이집	11.8	47.1	4.7	24.7	3.5	8.2	100.0(85)
X ² (df)			19.8(5)**				
영유아 구분							
영아	20.3	45.0	5.1	15.2	6.4	8.1	100.0(409)
유아	31.2	38.9	4.5	11.4	7.5	6.5	100.0(535)
X ² (df)			16.4(5)**				
지역 구분							
대도시	29.9	42.4	4.5	10.3	6.1	6.8	100.0(311)
중소도시	25.5	41.7	4.5	15.3	5.9	7.1	100.0(424)
읍면	23.4	39.7	5.7	12.4	10.5	8.1	100.0(209)
X ² (df)			11.8(10)				
2011 조사	31.8	45.1	2.5	9.7	8.4	2.4	100.0(1,2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 $p < .01$.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을 질문한 결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저렴한 보육료, 질 높은 교사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표 IV-4-5 참조).

어린이집 구분별로는 민간과 가정 모두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최고의 장점으로 들었으나 2순위에서 민간의 경우 저렴한 보육료를, 가정의 경우 질 높은 교사를 장점으로 꼽아 차이를 나타냈다. 자녀의 연령은 어릴수록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으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질 높은 교사를 꼽는 비율이 높았으며, 유아의 경우 저렴한 부모 보육료를 장점으로 꼽는 비율이 영아보다 높았다.

3) 공공형 어린이집 정보 공개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등의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아이사랑보육포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정보 공개를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59.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모른다는 응답도 40%가 넘게 차지하였다(표 IV-4-6 참조).

〈표 IV-4-6〉 공공형 어린이집 정보 공개 인지 및 검색

단위: %(명)

구분	정보 공개 인지		공개 정보 검색				계(수)
	모름	알고 있음	검색해본 적 없음	1번 들어가 봄	가끔 1번 이상 들어가 봄	자주 들어감	
전체	40.6	59.4	67.8	9.3	17.2	5.7	100.0(944)
어린이집 구분							
민간 어린이집	39.8	60.2	67.8	9.5	17.7	5.0	100.0(859)
가정 어린이집	48.2	51.8	68.2	7.1	11.8	12.9	100.0(85)
X ² (df)	2.3(1)		10.6(3)*				
영유아 구분							
영아	43.0	57.0	68.2	10.3	14.9	6.6	100.0(409)
유아	38.7	61.3	67.5	8.6	18.9	5.0	100.0(535)
X ² (df)	1.8(1)		3.8(3)				
지역 구분							
대도시	39.5	60.5	68.8	8.7	16.1	6.4	100.0(311)
중소도시	42.7	57.3	65.8	10.6	17.9	5.7	100.0(424)
읍면	37.8	62.2	70.3	7.7	17.2	4.8	100.0(209)
X ² (df)	1.6(2)		3.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 $p < .05$.

어린이집 구분별로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정보 공개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유아보다는 영아가, 읍·면과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개된 정보를 검색하는 비율은 검색해 본 적이 없다는 비율이 약 68%로 가장 높았으며 자주 들어가 검색해본다는 비율은 5.7%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구분별로는 가정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자주 들어가 검색한다는 비율이 12.9%로 5.0%인 민간어린이집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읍·면 지역의 경우 공개된 정보를 검색해본 적이 없다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 어린이집 세부 정보 인지

다음은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부모들이 알고 있는지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부모와 비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정보에 대한 인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개요

조사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은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 부모의 정보 인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정보가 급간식 식단이고 다음이 특별활동 관련 정보이다. 이들의 잘 안다는 비율은 각각 80%, 60%이다. 그러나 전체교사의 자격과 원장 경력은 17%, 14.9%만이 잘 안다고 응답하였고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총점은 14.9%이나 영역별 점수는 단지 8%만이 잘 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와의 비교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평가인증 총점과 영역별 점수이다.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각각 14.9%, 8%만이 상세히 안다고 응답한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10.3%, 4.9%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보다 상세히 안다는 인지율이 낮다. 대략 알고 있음을 포함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이 총점은 공공형 이용부모는 47.5%인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경우 39.6%이며, 평가인증 영역별 점수는 각각 30.7%, 24.5%로 차이를 보였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보다 평가인증 총점과 영역별 점수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정보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미미하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원장 경력 포괄적 인지율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모두 61% 내외로 유사하며, 전체 교사 자격 현황 역시 57% 수준으로 유사하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의 과목과 그 비용 인지율은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모두 90% 수준이고, 급간식 식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자 81~82%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표 IV-4-7〉 어린이집 정보 인지 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모름	대략 알고 있음	상세히 알고 있음	계(수)	X ² (df)
평가인증 총 점수					
국공립 어린이집	60.4	29.3	10.3	100.0(1,000)	15.7(2) ^{***}
공공형 어린이집	52.5	32.6	14.9	100.0(1,000)	
평가인증 영역별 점수					
국공립 어린이집	75.5	19.6	4.9	100.0(1,000)	12.4(2) ^{**}
공공형 어린이집	69.3	22.7	8.0	100.0(1,000)	
원장 경력					
국공립 어린이집	39.2	45.6	15.2	100.0(1,000)	0.4(2)
공공형 어린이집	38.1	47.0	14.9	100.0(1,000)	
전체 교사 자격 현황					
국공립 어린이집	42.3	41.7	16.0	100.0(1,000)	0.6(2)
공공형 어린이집	42.7	40.3	17.0	100.0(1,000)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					
국공립 어린이집	9.6	24.4	66.0	100.0(1,000)	3.8(2)
공공형 어린이집	10.0	28.0	62.0	100.0(1,000)	
급간식 식단					
국공립 어린이집	3.4	16.0	80.6	100.0(1,000)	1.3(2)
공공형 어린이집	3.6	14.2	82.2	100.0(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 $p < .01$, *** $p < .001$.

2)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 특성별 차이

가) 평가인증

다음은 자녀가 다니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정보를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지 제 특성별로 알아본 결과이다.

평가인증 총 점수의 경우 상세히 알고 있다는 비율은 가정어린이집 이용자가 더 높았으나 전체적인 인지율은 민간어린이집 이용자들이 2%p 가량 높았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평가인증 총 점수 인지 비율은 자녀가 영아일 때 더 높았으며 지역적으로는 중소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영역별 점수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가정어린이집에서 인지율이 더 높았고, 유아 부모보다는 영아 부모가,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중소도시에서 평가인증 영역별 점수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V-4-8 참조).

〈표 IV-4-8〉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총 점수 및 영역별 점수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평가인증 총점수			평가인증 영역별 점수			계(수)
	모름	대략 알고 있음	상세히 알고 있음	모름	대략 알고 있음	상세히 알고 있음	
전체	52.5	32.6	14.9	69.3	22.7	8.0	100.0(1,000)
어린이집 구분							
민간 어린이집	52.3	32.9	14.8	69.6	22.5	7.9	100.0(908)
가정 어린이집	54.3	29.3	16.3	66.3	25.0	8.7	100.0(92)
$X^2(df)$		0.5(2)			0.4(2)		
영유아 구분							
영아	50.7	34.3	15.0	68.2	24.1	7.7	100.0(440)
유아	53.9	31.3	14.8	70.2	21.6	8.2	100.0(560)
$X^2(df)$		1.2(2)			0.9(2)		
지역 구분							
대도시	53.4	32.4	14.2	70.4	23.5	6.2	100.0(324)
중소도시	50.3	33.0	16.6	67.8	22.6	9.5	100.0(451)
읍면	55.6	32.0	12.4	70.7	21.8	7.6	100.0(225)
$X^2(df)$		2.8(4)			3.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나) 원장 및 교사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원장 경력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72.8%로 나타난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60.8%로, 10%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상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도 가정어린이집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는 유아보다 영아 부모가 원장 경력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지역적으로는 중소도시에서 인지율이 높았다.

공공형 어린이집 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가정어린이집 이용

자가 알고 있다는 응답이 7.5%p 정도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도 원장 경력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유아일 때보다 영아일 때, 또한 읍·면이나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표 IV-4-9 참조).

〈표 IV-4-9〉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 경력 및 전체 교사 자격 현황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원장 경력			전체 교사 자격 현황			계(수)
	모름	대략 알고 있음	상세히 알고 있음	모름	대략 알고 있음	상세히 알고 있음	
전체	38.1	47.0	14.9	42.7	40.3	17.0	100.0(1,000)
어린이집 구분							
민간 어린이집	39.2	46.0	14.8	43.4	40.0	16.6	100.0(908)
가정 어린이집	27.2	56.5	16.3	35.9	43.5	20.7	100.0(92)
X ² (df)		5.3(2)			2.2(2)		
영유아 구분							
영아	36.4	48.4	15.2	41.4	40.7	18.0	100.0(440)
유아	39.5	45.9	14.6	43.8	40.0	16.3	100.0(560)
X ² (df)		1.0(2)			0.8(2)		
지역 구분							
대도시	40.1	45.1	14.8	45.7	42.3	12.0	100.0(324)
중소도시	35.7	49.0	15.3	40.4	39.5	20.2	100.0(451)
읍면	40.0	45.8	14.2	43.1	39.1	17.8	100.0(225)
X ² (df)		2.1(4)			9.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다) 특별활동 및 급간식 식단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 중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90.5%,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84.8%로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에서 높게 나타났다. 상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도 민간어린이집 이용자들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는 유아 부모가 93.4%로 나타나 영아 부모 인지율 85.7%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에서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았다(표 IV-4-10 참조).

급간식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모두 82% 내외로 차이가 없다. 자녀 연령별로는 상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영아 부모 83.4%, 유아 부모 81.3%로 나타나 영아 부모의 경우 급간식 식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어린이집에서 다른 지역보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급간식 식단 상세 인지율이 더 높게 나

타났다(표 IV-4-10 참조).

〈표 IV-4-10〉 공공형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 및 급간식 식단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			급간식 식단			계(수)
	모름	대략 알고 있음	상세히 알고 있음	모름	대략 알고 있음	상세히 알고 있음	
전체	10.0	28.0	62.0	3.6	14.2	82.2	100.0(1,000)
어린이집 구분							
민간 어린이집	9.5	28.4	62.1	3.4	14.3	82.3	100.0(908)
가정 어린이집	15.2	23.9	60.9	5.4	13.0	81.5	100.0(92)
X ² (df)		3.4(2)			1.0(2)		
영유아 구분							
영아	14.3	27.3	58.4	3.6	13.0	83.4	100.0(440)
유아	6.6	28.6	64.8	3.6	15.2	81.3	100.0(560)
X ² (df)		16.4(2)**			1.0(2)		
지역 구분							
대도시	12.0	28.4	59.6	4.0	14.5	81.5	100.0(324)
중소도시	10.0	26.6	63.4	3.3	13.1	83.6	100.0(451)
읍면	7.1	30.2	62.7	3.6	16.0	80.4	100.0(225)
X ² (df)		4.4(4)			1.4(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p* < .001.

다. 어린이집 만족도

다음은 자녀가 다니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를 원장, 교사,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내부 분위기, 비용 등 총 13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이다. 동일한 만족도 조사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도 실시하여 만족도를 비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의 특성별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와 비교

어린이집 만족도의 경우 각 항목별로 5점 만점에 대부분 4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IV-4-11 참조).

공공형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비용, 주변환경, 급간식 만족도에서 교차분석 또는 5점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비용과 관련하여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72%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83.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약 12%p의 차이가 나타났다. 5점 만점의 만족도 평균으로 비교하여도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의 평균은 약 4점이었던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평균 4.31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가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보다 비용에 대하여는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별활동 비용의 차이 등이 이러한 결과와 연계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급간식 관리의 만족도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8점으로 나타났고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는 4.18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다. 그러나 빈도수 분포 상 교차분석의 통계성 유의성 검증은 적절하지 않았다.

셋째,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77.1%로 국공립 이용부모에 비하여 4.5%가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5점 평균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은 평균 4점이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4.12점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았다.

〈표 IV-4-11〉 어린이집 만족도 비교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단위: %(명), 점		
						계(수)	5점 평균	
원장								
국공립 어린이집	0.7	1.8	14.8	36.2	46.5	100.0(1,000)	4.26	
공공형 어린이집	0.3	0.9	15.1	36.8	46.9	100.0(1,000)	4.29	
$X^2(df)/t$							4.7(4)	-0.9
교사								
국공립 어린이집	0.5	1.5	13.8	36.2	48.0	100.0(1,000)	4.30	
공공형 어린이집	-	1.6	10.2	39.8	48.4	100.0(1,000)	4.35	
$X^2(df)/t$							na	-1.6
주변환경								
국공립 어린이집	1.0	6.1	20.3	37.0	35.6	100.0(1,000)	4.00	
공공형 어린이집	0.5	3.3	19.1	38.1	39.0	100.0(1,000)	4.12	
$X^2(df)/t$							12.1(4)*	-2.9*
시설설비및실내환경								
국공립 어린이집	0.3	3.4	17.1	41.5	37.7	100.0(1,000)	4.13	
공공형 어린이집	0.3	1.4	19.5	40.3	38.5	100.0(1,000)	4.15	
$X^2(df)/t$							na	-0.7

(표 IV-4-11 계속)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평균
교재교구 및 장비							
국공립 어린이집	0.6	3.1	21.1	41.1	34.1	100.0(1,000)	4.05
공공형 어린이집	0.2	1.8	20.9	40.1	37.0	100.0(1,000)	4.12
X ² (df)/t			na				-1.9
내부 분위기							
국공립 어린이집	0.2	1.6	14.0	45.7	38.5	100.0(1,000)	4.21
공공형 어린이집	-	0.9	15.4	43.2	40.5	100.0(1,000)	4.23
X ² (df)/t			na				-0.8
비용							
국공립 어린이집	0.3	2.2	13.6	34.4	49.5	100.0(1,000)	4.31
공공형 어린이집	1.1	5.7	21.2	35.4	36.6	100.0(1,000)	4.01
X ² (df)/t			56.1(4) ^{***}				7.6 ^{***}
건강관리							
국공립 어린이집	0.8	1.3	16.7	40.3	40.9	100.0(1,000)	4.19
공공형 어린이집	0.5	1.7	18.9	39.3	39.6	100.0(1,000)	4.16
X ² (df)/t			2.9(4)				0.9
급간식 관리							
국공립 어린이집	0.3	1.4	14.0	39.1	45.2	100.0(1,000)	4.28
공공형 어린이집	0.2	1.7	18.8	38.7	40.6	100.0(1,000)	4.18
X ² (df)/t			na				2.7 ^{**}
안전관리							
국공립 어린이집	0.6	1.2	14.2	42.2	41.8	100.0(1,000)	4.23
공공형 어린이집	0.4	1.5	15.6	41.1	41.4	100.0(1,000)	4.22
X ² (df)/t			1.6(4)				0.5
교육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0.5	2.0	17.8	43.8	35.9	100.0(1,000)	4.13
공공형 어린이집	0.3	1.4	18.0	41.4	38.9	100.0(1,000)	4.17
X ² (df)/t			na				-1.3
부모 참여							
국공립 어린이집	0.8	4.6	23.4	40.3	30.9	100.0(1,000)	3.96
공공형 어린이집	0.8	4.4	25.8	36.4	32.6	100.0(1,000)	3.96
X ² (df)/t			3.7(4)				0.1
부모교육및상담							
국공립 어린이집	0.7	4.5	23.0	36.6	35.2	100.0(1,000)	4.01
공공형 어린이집	0.5	3.9	20.9	38.7	36.0	100.0(1,000)	4.06
X ² (df)/t			2.4(4)				-1.2

주: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 $p < .05$, ** $p < .01$, *** $p < .001$.

이외의 10개 항목의 만족도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와 원장에 대한 만족 정도, 교재교구, 실내장비는 국공립어린이집보다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다소 높은 경향이었고 건강관리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2)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특성별 만족도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 만족도의 제 특성별 차이는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는 원장에서만 유의하였다. 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민간 어린이집 이용 부모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두 번째로 아동연령별 차이는 건강관리, 교육내용, 부모참여의 세 가지 항목에서 시설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이 모두 유아 부모가 영아 부모보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건강관리의 경우 유아 부모의 만족도는 4.23점인 반면에 영아 부모의 만족도는 4.0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V-4-12〉 공공형 어린이집 특성별 만족도

구분	원장	교사	주변 환경	시설 설비 및 환경	교재 교구 및 장비	내부 분위기	비용	건강 관리	급간식 관리	안전 관리	교육 내용	부모 참여	단위: 점
													부모 교육 및 상담
전체	4.29	4.35	4.12	4.15	4.12	4.23	4.01	4.16	4.18	4.22	4.17	3.96	4.06
어린이집 구분													
민간 어린이집	4.27	4.34	4.10	4.15	4.13	4.23	3.99	4.15	4.17	4.21	4.17	3.97	4.05
가정 어린이집	4.46	4.42	4.27	4.16	4.05	4.22	4.18	4.22	4.26	4.28	4.17	3.85	4.13
t	-2.2*	-1.0	-1.8	-0.1	0.8	0.2	-1.9	-0.7	-1.0	-0.9	0.0	1.2	-0.8
영유아 구분													
영아	4.28	4.34	4.08	4.10	4.04	4.21	3.98	4.07	4.17	4.19	4.12	3.87	4.01
유아	4.30	4.36	4.15	4.20	4.18	4.25	4.03	4.23	4.19	4.24	4.22	4.02	4.10
t	-0.3	-0.4	-1.3	-1.9	-2.9	-0.9	-0.9	-3.2**	-0.3	-0.9	-2.0*	-2.6**	-1.6
지역 구분													
대도시	4.24	4.26 ^a	3.98 ^a	4.11	4.09	4.15 ^a	3.99	4.14	4.12	4.22	4.11	3.99	4.04
중소도시	4.31	4.38 ^b	4.19 ^b	4.17	4.14	4.29 ^b	4.01	4.19	4.22	4.21	4.20	3.92	4.06
읍면	4.32	4.41 ^b	4.17 ^b	4.18	4.12	4.25 ^{ab}	4.03	4.13	4.17	4.21	4.20	3.97	4.07
F	0.9	3.7*	6.1**	0.7	0.3	3.7*	0.1	0.6	1.4	0.0	1.3	0.6	0.1

주: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임.

* $p < .05$, ** $p < .01$.

세 번째로 만족도의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교사, 주변환경, 내부분위기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세 가지 항목 모두 읍·면이 도시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교사는 대도시 4.26점, 중소도시 4.38점, 읍·면 지역 4.41점으로 대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교사 만족도가 낮았다. 어린이집 주변 환경 만족도의 경우에도 대도시 3.98점으로 중소도시 4.19점, 읍·면 지역 4.17점으로 대도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어린이집 내부분위기의 경우에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어린이집의 교육 내용과 부모 참여 영역에서도 영유아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건강 관리와 마찬가지로 유아 부모의 만족도가 영아 부모의 만족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5.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 관련 의견

가.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정원 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76%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4%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⁵²⁾ 보육 관련 전문가 그룹보다 학계에서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유의미하였다(표 IV-5-1 참조).

〈표 IV-5-1〉 운영비 차등 지급하는 방법

구분	정원 구간에 따른 차등 지급		6개로 구간 나누어 지급		계(수)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전체	76.0	24.0	51.0	49.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83.1	16.9	56.9	43.1	100.0(65)
보육 관련 전문가	62.9	37.1	40.0	60.0	100.0(35)
X ² (df)	5.10(1)*		2.61(1)		
2011년 조사	85.5	14.5			100.0(2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 $p < .05$.

52) 본 조사 시점이 2013년 상반기로, 6개 구간에 의한 지원이 응답 기준이었음.

그러나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 대하여 2011년 조사보다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10%p 가까이 낮아졌다.

또한 20인 이하, 21~49인, 50~76인, 77~97인, 98~123인, 124인 이상의 6개로 구간을 나누어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51%로 절반 정도이었고, 절반 가까이는 이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보육 관련 전문가들의 경우 60%가 이러한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표 IV-5-1 참조).

운영비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에서는 반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33%로 가장 높았고, 구간을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27%, 구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25%를 나타냈다. 보육 관련 전문가의 경우 반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고, 학계에서는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식과 반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을 30.8%로 동일한 비율로 원하고 있었다(표 IV-5-2 참조).

〈표 IV-5-2〉 운영비 지원 체계 개선안

구분	구간 세분화	구간 지원금 상향조정	반 수에 따른 차등지원	기타	단위: %(명)
					계(수)
전체	27.0	25.0	33.0	15.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30.8	24.6	30.8	13.8	100.0(65)
보육 관련 전문가	20.0	25.7	37.1	17.1	100.0(35)
X ² (df)					1.4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나. 공공형 어린이집 사후관리

사후 관리체계의 필요성에서는 상세 운영 정보를 공개, 공공어린이집 선정 기준 준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의무 가입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점 평균으로도 모두 4.6점 이상이다.

한편 가장 필요성이 낮게 나타난 응답은 평일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항목인데, 이 항목도 76%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5점 평균 4.03이다. 즉,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다(표 IV-5-3 참조).

<표 IV-5-4>는 학계와 보육전문가 의견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활동 관리지침 준수를 제외하고는 학계의 응답 점수가 보육전문가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5-3〉 사후 관리체계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평가인증 점수 90점 유지	-	1.0	3.0	42.0	54.0	100.0(100)	4.49
취약보육 1개 이상 실시	1.0	2.0	15.0	49.0	33.0	100.0(100)	4.11
보료 정부지원 단가와 동일	1.0	1.0	5.0	44.0	49.0	100.0(100)	4.39
담임교사 급여 국공립 1호봉 이상	-	3.0	6.0	29.0	62.0	100.0(100)	4.50
평일 7:30까지 12시간 운영	-	4.0	20.0	45.0	31.0	100.0(100)	4.03
특별활동 관리지침 준수	-	1.0	6.0	46.0	47.0	100.0(100)	4.39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	-	3.0	33.0	64.0	100.0(100)	4.61
상세 운영 정보 공개	-	-	5.0	27.0	68.0	100.0(100)	4.63
공공어린이집 선정 기준 준수	-	-	4.0	31.0	65.0	100.0(100)	4.61
사후품질관리 의무 참여	-	1.0	6.0	38.0	55.0	100.0(100)	4.47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표 IV-5-4〉 응답자 특성별 사후 관리체계 필요성: 5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체	교수	보육전문가	t
평가인증 점수 90점 유지	4.49	4.49	4.49	0.05
취약보육 1개 이상 실시	4.11	4.14	4.06	0.48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와 동일	4.39	4.43	4.31	0.77
담임교사 급여 국공립 1호봉 이상	4.50	4.55	4.40	0.98
평일 7:30까지 12시간 운영	4.03	4.09	3.91	1.03
특별활동 관리지침 준수	4.39	4.37	4.43	-0.48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4.61	4.63	4.57	0.51
상세 운영 정보 공개	4.63	4.68	4.54	1.10
공공어린이집 선정 기준 준수	4.61	4.63	4.57	0.50
사후품질관리 의무 참여	4.47	4.49	4.43	0.46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다. 공공형 어린이집 발전 가능성

1)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기능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기제로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을지 묻는 문항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의견은 74%이었으며, 특히 보육 관련 전문가들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한 응답이 26.2%인데, 보육 관련 전문가는 11.4%만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표 IV-5-5 참조).

공공형 어린이집이 전반적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는 가능하다는 응답과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응답을 합쳐 94%가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보육 관련 전문가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개선 역할을 더 기대하였다(표 IV-5-5 참조).

〈표 IV-5-5〉 공공형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가능 여부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대체			질적 수준 상승 역할			계(수)
	가능	어느 정도	불가능	가능	어느 정도	불가능	
전체	5.0	74.0	21.0	24.0	70.0	6.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4.6	69.2	26.2	15.4	78.5	6.2	100.0(65)
보육 관련 전문가	5.7	82.9	11.4	40.0	54.3	5.7	100.0(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이러한 응답은 부모들의 응답에 비하여 매우 긍정적 평가이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서는 공공형, 서울형·부산형 등의 공인어린이집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응답자 중 45.8%로 절반이 조금 못 되는데, 이들 중 30.7%가 공인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이 유사하고 나머지 69.3%는 공인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과는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적정 규모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국적 적정 분포에 대한 의견에서는 전체 어린이집의 20%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30%로 가장 많았고, 전체 어린이집의 10~20%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25%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계 및 보육 관련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육 관련 전문가의 경우 37.1%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한

다는 의견을 나타내, 학계보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높은 비중을 원하였다(표 IV-5-6 참조).

〈표 IV-5-6〉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국적 적정 분포 의견

구분	단위: %(명)					계(수)
	5% 미만	5%	5~10%	10~20%	20% 이상	
전체	10.0	19.0	16.0	25.0	30.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10.8	18.5	10.8	33.8	26.2	100.0(65)
보육 관련 전문가	8.6	20.0	25.7	8.6	37.1	100.0(35)
X ² (df)	10.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 $p < .05$.

〈표 IV-5-7〉 공공형 어린이집의 민간 어린이집 대비 적정 분포 의견

구분	단위: %(명)						계(수)
	10% 미만	10~20%	20~30%	30~40%	40~50%	50% 이상	
전체	17.0	25.0	24.0	16.0	6.0	12.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16.9	21.5	27.7	13.8	6.2	13.8	100.0(65)
보육 관련 전문가	17.1	31.4	17.1	20.0	5.7	8.6	100.0(35)
2011년 조사	28.0	36.5	18.8	4.3	3.9	8.5	100.0(282)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적절한 공공형 어린이집의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10~20%가 25%, 20~30%가 24%, 10% 미만 17% 순으로 응답하였다. 2011년 조사보다 민간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높은 분포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V-5-7 참조).

6. 요약 및 논의

본 장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의 개요를 소개하며,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 기준과 선정 결과의 적절성 그리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부모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조사와 비교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및 선정 기준이 적절하

다는 응답이 많아졌다. 특히 기본 점수 항목에서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를 90점 이상으로 두는 경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84%로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자격에 있어 하한선을 두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졌다. 배점을 20점으로 30점으로 대폭 조정한 1급 보육교사 비율 항목의 경우, 2년 전보다 변별성이 높다는 응답이 늘어났다. 그러나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로 보는 항목은 변별성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20% 정도이었다.

둘째, 일부 선정 지표의 경우 어린이집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우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사항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의 10% 이상이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실내공기 질 측정 비율이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을 필요로 한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보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별활동비도 더 많이 납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의 경우 그 선택권을 보장하여 수강여부를 부모가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 수강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수강 비율보다 높았다.

넷째,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나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인지율은 높았으나,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인지율은 낮았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임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약 95%에 달하였고, 보육료가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함과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80% 이상이었다. 반면 아이사랑 보육포털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은 60% 미만이었으며, 한 번도 검색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약 70%에 달했다. 특히 평가인증 관련 정보 인지율은 낮았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보다 높았다.

다섯째,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대체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 주변환경 등 어린이집 각 항목의 만족도는 대부분 항목이 5점 만점에서 4점 이상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 비용과 급간식 관리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주변 환경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여섯째, 전문가들은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였다. 다만 운영비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에서 반 수에 따른 차등 지원, 구간 세분화, 구간 지원금 상향 조정 순으로 체계 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공공형 어린이집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기제로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을지 묻는 문항에서 3/4 정도가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이 개선된다면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자가로의 한정 등 구조 개선이나 또는 지원을 통하여 운영 여건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V. 양육수당 수혜와 관련 인식

제5장은 2013년 무상보육과 더불어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어지면서 보편적 정책이 된 양육수당으로 구성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부모 대상 전화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면담 자료이다. 제1절은 먼저 양육수당 수혜자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일반적 특성과 기관 이용, 모의 취업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2절은 양육수당의 효용성과 만족도, 제3절은 2013년 초에 논란이 되었던 바우처 방식으로의 전달 방식 전환 관련 논의 및 부모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1. 양육수당의 수혜자 특성

가. 수혜자 일반적 특성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인 양육수당이 모든 영유아로 확대되었다. 이로 2013년 3월 25일 현재, 양육수당 수혜 아동 수는 826,000명으로 2013년 1월 110,000명 대비 716,000명이 증가하였다. 전체 영유아 2,958,000명 중 양육수당 수혜율은 28%이다.

2013년 3월 기준 양육수당 수혜아동 연령 분포를 보면 12개월 미만인 46.0%이고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 30.2%,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 10.3%로 36개월 미만 아동이 모두 86.5%이고 나머지 13.5% 정도만이 유아이다. 양육수당 수혜자의 약 87%가 36개월 미만의 아동이다. 양육수당 지원 아동은 12개월 미만 아동이 3만 8천여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72개월 이상 아동이 8천 900여명으로 가장 적었다(표 V-1-1 참조).

〈표 V-1-1〉 양육수당 신청 아동 연령 분포: 2013. 3 기준

연령	단위:%(명)							계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48개월 미만	48-60개월 미만	60-72개월 미만	72개월 이상	
비율	46.0	30.2	10.3	4.3	3.9	4.2	1.1	100.00
(수)	(379,946)	(249,420)	(85,392)	(35,528)	(32,284)	(34,798)	(8,891)	(826,259)

자료: 2013년 3월 22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양육수당 지원아동 82만 6천명 중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아동은 1,930명,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아동은 5,745명이다.

양육수당 수혜아동 분포를 지역규모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46% 내외로 유사하고 읍·면 거주 아동이 7.2%이다. 영유아의 지역규모별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V-1-2 참조).

시·도로 구분해 보면 영유아 분포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표 V-1-3 참조).

〈표 V-1-2〉 지역규모 분포: 2013. 3 기준

단위: %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계
비율	46.0	46.8	7.2	100.0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내부자료.

〈표 V-1-3〉 시·도 분포: 2013. 3 기준

단위: %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비율	21.74	6.23	4.54	6.10	2.80	3.08	2.55	0.22	25.85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비율	2.44	2.99	3.91	2.93	3.14	4.54	6.08	0.86	100.00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내부자료.

〈표 V-1-4〉 연령별 모취업 및 소득수준 분포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계
모취업								
취업	4.1	18.1	18.1	19.3	31.6	39.5	42.1	13.4
휴직중	25.2	5.7	6.0	8.0	1.3	1.2	-	14.4
자영업·재택	1.2	4.3	1.9	3.4	6.6	10.5	10.5	3.0
미취업	67.0	70.5	72.6	68.2	59.2	47.7	47.4	67.4
부재 등	2.4	1.3	1.4	1.1	1.3	1.2	-	1.8
가구 소득								
149만원 이하	8.6	10.4	11.9	3.6	4.8	2.5	5.9	8.9
150~299만원	49.4	40.8	37.6	28.6	15.9	7.4	5.9	41.3
300~499만원	31.1	30.3	34.2	36.9	39.7	32.1	35.3	31.8
500만원 이상	10.9	18.5	16.3	31.0	39.7	58.0	52.9	1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19)	(601)	(215)	(88)	(76)	(86)	(19)	(2,0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표 V-1-4>는 본 조사결과로 아동연령별로 모의 취업과 소득수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모의 취업 특성을 보면 미취업모가 67.4%이고 현재 취업 중이 13.4%, 휴직 중이 14.4%이다.

3월 기준 아동 실제 연령별로는⁵³⁾ 0세아는 육아휴직 중인 비율이 현재 모 취업 비율보다 훨씬 높다. 1세 이상부터는 미취업모의 비율이 감소하고 모 취업 비율이 18% 이상으로 증가한다.

가구소득 분포는 150~299만원과 300~499만원이 각각 41.3%, 31.8%로 다수를 차지하고 500만원 이상이 18.0%이다. 연령별로는 차이가 크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수혜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에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 아동의 기관 이용

1) 유사기관 이용

현재 양육수당 수혜자의 10.8%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외 기관에 다니고 있다. 이 비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증가하여 5세는 84%에 달한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기관을 다닌다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들이 다니는 기관은 시간제 특기학원, 영어학원, 기타 반일제 학원, 시간제 보육, 놀이방, 문화센터 등이다. 영아는 시간제 보육, 문화센터, 시간제 특기학원 비율이 높고 유아는 영아학원, 기타 반일제 기관 비율이 높다(표 V-1-5 참조). 기관에 다니는 빈도는 주 5일 이상이 72%이고 20.3%는 주 1~2회이다. 영아는 대부분이 주 1~2회이고 유아는 대부분이 주 5일로 유사 보육·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1-6 참조).

53) 개월을 2013년 3월 기준 연령으로 표기함.

〈표 V-1-5〉 어린이집, 유치원 외 다른 기관 이용 여부 및 기관 종류

단위: %(명)

구분	기관 이용			기관 종류						
	다니고 있음	아무데도 안다님	계(수)	시간제 특기학원	영어 학원	기타 반일제	시간제 보육	놀이방	문화 센터	계(수)
전체	10.8	89.2	100.0(2,004)	28.6	28.1	20.3	15.2	4.1	3.7	100.0(217)
자녀연령										
0세	0.1	99.9	100.0(919)	-	-	100.0	-	-	-	100.0(1)
1세	5.0	95.0	100.0(601)	40.0	3.3	-	36.7	3.3	16.7	100.0(30)
2세	14.4	85.6	100.0(215)	58.1	3.2	9.7	22.6	3.2	3.2	100.0(31)
3세	26.1	73.9	100.0(88)	26.1	13.0	26.1	21.7	8.7	4.3	100.0(23)
4세	60.5	39.5	100.0(76)	26.1	32.6	34.8	4.3	2.2	-	100.0(46)
5세	83.7	16.3	100.0(86)	12.5	51.4	20.8	11.1	2.8	1.4	100.0(72)
6세	73.7	26.3	100.0(19)	35.7	28.6	21.4	-	14.3	-	100.0(14)
X ² (df)	900.2(6)***			na						
지역 규모										
광역시	10.9	89.1	100.0(938)	26.5	33.3	14.7	18.6	2.0	4.9	100.0(102)
중소도시	12.0	88.0	100.0(957)	30.4	23.5	25.2	12.2	6.1	2.6	100.0(115)
읍면	-	100.0	100.0(109)	-	-	-	-	-	-	-
X ² (df)	14.6(2)**			na						
모 취업여부										
취업	27.1	72.9	100.0(269)	23.3	32.9	21.9	13.7	5.5	2.7	100.0(73)
휴직중	3.1	96.9	100.0(288)	11.1	11.1	44.4	22.2	-	11.1	100.0(9)
자영업·채택	25.0	75.0	100.0(60)	26.7	40.0	26.7	-	6.7	-	100.0(15)
미취업	8.7	91.3	100.0(1,351)	33.9	23.7	16.9	17.8	3.4	4.2	100.0(118)
부재 등	5.6	94.4	100.0(36)	-	100.0	-	-	-	-	100.0(2)
X ² (df)	111.5(4)***			na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3.6	96.4	100.0(169)	-	33.3	16.7	33.3	16.7	-	100.0(6)
150~299만원	3.7	96.3	100.0(787)	58.6	3.4	10.3	10.3	-	17.2	100.0(29)
300~499만원	11.7	88.3	100.0(605)	31.0	31.0	15.5	16.9	4.2	1.4	100.0(71)
500만원 이상	27.7	72.3	100.0(343)	18.9	33.7	25.3	14.7	5.3	2.1	100.0(95)
X ² (df)	155.8(3)***			na						

주: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 $p < .01$, *** $p < .001$.

〈표 V-1-6〉 어린이집, 유치원 외 다른 기관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주 5일 이상	주 3~4일	주 1~2일	월 1~3일	계(수)
전체	71.9	6.9	20.3	0.9	100.0(217)
자녀연령					
0세	100.0	-	-	-	100.0(1)
1세	26.7	3.3	66.7	3.3	100.0(30)

(표 V-1-6 계속)

구분	주 5일 이상	주 3~4일	주 1~2일	월 1~3일	계(수)
2세	32.3	9.7	54.8	3.2	100.0(31)
3세	87.0	4.3	8.7	-	100.0(23)
4세	82.6	10.9	6.5	-	100.0(46)
5세	91.7	5.6	2.8	-	100.0(72)
6세	92.9	7.1	-	-	100.0(14)
지역 규모					
광역시	68.6	3.9	25.5	2.0	100.0(102)
중소도시	74.8	9.6	15.7	-	100.0(115)
모 취업 여부					
취업	83.6	4.1	11.0	1.4	100.0(73)
휴직중	66.7	-	33.3	-	100.0(9)
자영업·재택	86.7	6.7	6.7	-	100.0(15)
미취업	62.7	9.3	27.1	0.8	100.0(118)
부재 등	100.0	-	-	-	100.0(2)
가구 소득					
149만원 이하	66.7	-	16.7	16.7	100.0(6)
150~299만원	31.0	13.8	55.2	-	100.0(29)
300~499만원	67.6	5.6	26.8	-	100.0(71)
500만원 이상	86.3	6.3	6.3	1.1	100.0(95)

주: X^2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2)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이유 및 향후 이용 의사

조사 대상 양육수당 수혜 아동 중 7% 정도만이 최근 3개월간 기관 이용 경험이 있다. 영아는 기관 이용, 특히 어린이집 이용 경험률이 낮다.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경험 비율이 각각 5~8% 정도이고 기타 기관 비율이 높다. 특히 5세아는 58.1%가 다른 기관에 다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1-7 참조).

양육수당과 기관 이용 중단이 관련이 있다는 비율은 16%이고 무관하다는 비율이 76.7%이다. 소득계층이 높은 가정에서의 양육수당과 기관 이용 중단이 관련이 없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당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표 V-1-8 참조).

〈표 V-1-7〉 연령별 최근 보육 관련 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에 다녔음	유치원에 다녔음	다른 기관에 다녔음	아무데도 안 다녔음	계(수)
전체	0.8	0.7	5.5	93.0	100.0(2,004)
0세	0.2	-	-	99.8	100.0(919)
1세	0.3	-	1.5	98.2	100.0(601)
2세	0.5	0.5	2.3	96.7	100.0(215)
3세	-	-	17.0	83.0	100.0(88)
4세	6.6	6.6	35.5	51.3	100.0(76)
5세	5.8	8.1	58.1	27.9	100.0(86)
6세	5.3	5.3	21.1	68.4	100.0(19)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표 V-1-8〉 가구소득 수준별 기관 이용 중단과 양육수당 관계 여부

단위: %(명)

구분	관계있음	양육수당과 무관함	기타	계(수)
전체	16.7	76.7	6.7	100.0(27)
150-299만원	12.5	62.5	25.0	100.0(8)
300-499만원	10.0	90.0	-	100.0(10)
500만원 이상	22.2	77.8	-	100.0(9)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표 V-1-9〉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가정에서 키우려고	아이가 너무 어려서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다른 곳에 보내려고	양육수당 보탬이 되어서	아이가 아파서	4월부터 보내고 있음	곧 외국에 나갈 것 같아서	육아휴직 기간직접 키우고 싶어서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71.8	11.0	8.9	5.3	0.9	0.8	0.5	0.4	0.2	0.1	100.0(2,004)
0세	83.6	14.8	0.7	0.1	0.0	0.2	0.1	0.0	0.4	0.1	100.0(919)
1세	72.0	13.0	10.6	0.7	1.8	0.8	0.7	0.3	-	-	100.0(601)
2세	68.8	2.3	19.5	2.3	2.3	2.3	1.4	0.9	-	-	100.0(215)
3세	56.8	1.1	23.9	14.8	2.3	1.1	0.0	-	-	-	100.0(88)
4세	26.3	1.3	30.3	32.9	-	2.6	2.6	2.6	-	1.3	100.0(76)
5세	15.1	-	20.9	59.3	-	2.3	-	2.3	-	-	100.0(86)
6세	36.8	-	21.1	42.1	-	0.0	-	-	-	-	100.0(19)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기관 미이용 이유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너무 어려서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가정에서 키우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다른 곳에 보내려고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5세아는 60% 정도가 '다른 곳에 보내려고'라고 응답하였다(표 V-1-9 참조).

향후 66.9%는 어린이집, 18.1%는 유치원에 보낼 것이라고 응답하고 11.4%는 보내지 않을 것이라 응답하였다. 5세를 기준으로 보면 양육수당 수혜자의 72%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영어학원, 기타 반일제 등 사설 기관 이용 비율이 72% 수준이다(표 V-1-10 참조).

〈표 V-1-10〉 향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의사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생각 없음	모름/무응답	계(수)
전체	66.9	18.1	11.4	3.6	100.0(2,004)
0세	80.6	8.5	6.6	4.2	100.0(919)
1세	75.5	12.8	8.7	3.0	100.0(601)
2세	56.7	35.8	4.2	3.3	100.0(215)
3세	18.2	68.2	11.4	2.3	100.0(88)
4세	6.6	65.8	23.7	3.9	100.0(76)
5세	2.3	22.1	72.1	3.5	100.0(86)
6세	-	10.5	84.2	5.3	100.0(19)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표 V-1-11〉 향후 기관 이용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후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개월 후)
전체	2.8	7.0	37.4	23.3	15.7	8.7	5.0	100.0(1,703)	21.4
0세	0.6	3.4	23.9	29.5	24.3	13.4	4.8	100.0(819)	26.7
1세	3.6	8.7	43.9	21.3	11.5	6.8	4.3	100.0(531)	19.3
2세	1.2	14.1	53.8	16.1	4.0	1.5	3.0	100.0(199)	13.4
3세	2.6	7.9	71.1	11.8	-	-	6.6	100.0(76)	11.9
4세	7.3	12.7	63.6	-	-	-	16.4	100.0(55)	10.0
5세	9.5	19.0	57.1	-	-	-	14.3	100.0(21)	9.0
6세	100.0	-	-	-	-	-	-	100.0(2)	1.0
F									51.6***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 p < .001.

향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기에 대하여 약 2.8%는 1개월 이내에 보낸다고 응답하였다. 1년 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간다는 비율이 0세아 27.9%, 1세아 56.2%, 2세아 69.1%이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 21개월 이후로 계산되었다(표 V-1-11 참조).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은 심층면담에서 기관 이용 적절 월령은 36개월 이상으로 보았다.

3) 양육수당 수혜 부모의 근로

양육수당 수혜 후 부모가 일을 그만 두었다는 비율이 14.7%이고 일을 줄였다는 비율이 3.2%이다. 영아 부모의 경우 이러한 응답 비율이 높아서, 0세아 부모는 22.7%가 일을 그만 두고 5.9%가 일을 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V-1-12〉 제 특성별 수당 지급후 부모 근로시간 변동 여부

구분	단위: %(명)					계(수)
	하던 일을 그만둠	하던 일을 줄임	변동 없음	일하는 시간이 늘어남	육아휴직을 씀	
전체	14.7	3.2	81.2	0.4	0.6	100.0(2,004)
0세	22.7	5.9	69.7	0.3	1.3	100.0(919)
1세	10.1	1.2	88.5	0.2	-	100.0(601)
2세	7.9	0.9	90.7	0.5	-	100.0(215)
3세	4.5	-	94.3	1.1	-	100.0(88)
4세	2.6	1.3	96.1	-	-	100.0(76)
5세	-	-	97.7	2.3	-	100.0(86)
6세	5.3	-	94.7	-	-	100.0(19)

주: X^2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도시보다 읍·면에서, 가구소득 150~299만원 집단에서 양육수당 수혜 후 부모가 일을 그만 두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즉, 양육수당이 일부 계층에는 소득보완 효과와 근로 대체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1년(유해미 외, 2011) 연구나 2012년 연구(서문희·김혜진, 2012)에서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2. 양육수당의 사용처과 영향

가. 사용처

1) 사용 대상 및 범주

양육수당 사용처는 90% 정도는 전액을 자녀에 사용하고 8%는 일부를 자녀에게 사용하며 2.5%는 구분없이 가계지출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구분없이 가계지출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3, 4세아와 저소득층 영아 부모인 3월 이전부터 수혜자에게서 5%대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V-2-1 참조).

지역규모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읍·면에서 아이에게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모취업에 따라서는 취업 중인 부모가 아이에게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처를 질문하였다. 양육수당 사용처로 자녀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아이물품 구매가 64.4%, 아이 이름으로 저금 17.8%, 자녀 돌봄 비용 12.9%이고 4.4%는 교육비에 보탠다고 응답하였다. 영아는 물품구매 비율이 높고 연령이 많아지면서 교육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거주하는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에서 아이 물품 구매와 아이에게 저금해 준다는 비율이 도시보다 높았고, 도시에서는 교육비로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13%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의 취업 상태별 차이는 돌봄 비용에 보탠다는 응답이 취업모 27.5%, 자영업 및 재택 22% 수준으로 비교적 높았고, 동시에 교육비에 보탠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취업모와 휴직 중인 부모는 아이물품 구매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은 수준이 낮으면 아이 물품 구매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아이 저금, 돌봄 비용, 교육비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수준 500만원 이상을 보면 21.6%가 저금을 하고 27.9%가 돌봄에 사용하며 12.9%는 교육비에 보태는 반면에 소득 149만원 미만은 82.4%가 아이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2-1 참조). 즉, 취업모와 고소득자는 양육수당 사용처가 타 집단에 비하여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1〉 제 특성별 자녀를 위한 양육수당 사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사용 대상			자녀에 사용 시 사용처					계(수)
	전액 자녀에 사용	일부 자녀에 사용	구분없이 가계 지출	아이 물품 구매	아이 저금	돌봄 비용	교육비 보통	치료비 보통	
전체	89.5	8.0	2.5	64.4	17.8	4.4	13.0	0.5	100.0(2,002)
자녀연령									
0세	88.8	9.3	2.0	83.1	13.8	2.6	0.1	0.4	100.0(918)
1세	88.7	8.5	2.8	61.6	21.2	8.9	8.2	-	100.0(601)
2세	93.0	4.7	2.3	50.5	21.9	2.9	23.3	1.4	100.0(215)
3세	88.6	5.7	5.7	26.8	22.0	2.4	46.3	2.4	100.0(88)
4세	93.3	1.3	5.3	17.1	25.7	1.4	55.7	-	100.0(75)
5세	88.4	10.5	1.2	8.2	18.8	1.2	71.8	-	100.0(86)
6세	100.0	-	-	5.3	-	5.3	89.5	-	100.0(19)
지역 규모									
광역시	88.2	9.0	2.9	63.4	17.8	4.6	13.4	0.7	100.0(938)
중소도시	90.5	7.3	2.2	64.8	17.0	4.3	13.5	0.3	100.0(955)
읍면	91.7	6.4	1.8	68.2	23.4	3.7	4.7	-	100.0(109)
모 취업여부									
취업	92.9	5.2	1.9	35.1	18.3	27.5	18.7	0.4	100.0(268)
휴직중	88.2	10.1	1.7	80.9	11.3	5.3	2.1	0.4	100.0(288)
자영업·재택	88.3	8.3	3.3	51.7	13.8	22.4	12.1	-	100.0(60)
미취업	89.1	8.2	2.7	67.0	19.5	11.3	1.8	0.5	100.0(1,350)
부재 등	88.9	5.6	5.6	73.5	8.8	14.7	2.9	-	100.0(36)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89.3	8.3	2.4	82.4	11.5	6.1	-	-	100.0(169)
150~299만원	89.1	8.1	2.8	74.0	17.3	6.0	1.8	0.8	100.0(786)
300~499만원	89.1	8.9	2.0	62.9	17.4	15.0	4.4	0.3	100.0(605)
500만원 이상	90.9	7.0	2.0	37.2	21.6	27.9	12.9	0.3	100.0(342)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표 V-2-2>는 연령을 구분하여 가구소득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사용 대상은 각 연령 구분 모두에서 소득수준별 차이가 의미있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녀에게 사용할 경우에 사용처는 연령구분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6개월 이상의 경우 소득 500만원 이상은 70% 이상이 비공식 부분 보육비에 보태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V-2-2〉 연령 및 소득수준별 자녀를 위한 양육수당 사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사용 대상				자녀에 사용 시 사용처					
	전액 자녀에 사용	일부 자녀에 사용	구분없이 지출	계(수)	아이 물품	아이 저금	돌봄 비용	교육비 보탬	치료비 보탬	계(수)
24개월 미만										
전체	88.6	9.1	2.3	100.0(1,456)	74.8	16.6	5.1	3.2	0.3	100.0(1,422)
149만원 이하	90.4	8.8	0.7	100.0(136)	86.7	11.9	-	1.5	-	100.0(135)
150~299만원	88.3	8.8	2.8	100.0(669)	79.0	16.2	1.7	2.6	0.5	100.0(649)
300~499만원	88.4	9.8	1.8	100.0(448)	73.2	16.8	5.5	4.3	0.2	100.0(440)
500만원 이상	88.7	8.9	2.5	100.0(203)	56.1	20.7	19.2	4.0	-	100.0(198)
X ² (df)		3.3(6)					na			
24~36개월 미만										
전체	93.1	4.5	2.5	100.0(202)	51.3	20.8	3.0	23.4	1.5	100.0(197)
149만원 이하	83.3	8.3	8.3	100.0(24)	81.8	9.1	-	9.1	-	100.0(22)
150~299만원	94.7	2.6	2.6	100.0(76)	55.4	21.6	-	21.6	1.4	100.0(74)
300~499만원	92.8	7.2	-	100.0(69)	50.7	17.4	2.9	27.5	1.4	100.0(69)
500만원 이상	97.0	-	3.0	100.0(33)	21.9	34.4	12.5	28.1	3.1	100.0(32)
X ² (df)		na					na			
36개월 이상										
전체	91.4	5.7	2.9	100.0(244)	14.5	20.9	1.7	62.1	0.9	100.0(235)
149만원 이하	88.9	-	11.1	100.0(9)	12.5	12.5	-	75.0	-	100.0(8)
150~299만원	90.2	7.3	2.4	100.0(41)	27.5	27.5	7.5	32.5	5.0	100.0(40)
300~499만원	89.8	5.7	4.5	100.0(88)	19.0	20.2	-	60.7	-	100.0(84)
500만원 이상	93.4	5.7	0.9	100.0(106)	5.8	19.4	1.0	73.8	-	100.0(103)
X ² (df)		na					na			

주: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2) 주요 아이 물품

양육수당 사용처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을 3순위까지 조사하였다.

먼저 1순위로 부모들이 제시한 품목은 기저귀로 66.4%가 이를 제시하였고, 2순위는 분유(우유)로 17.6%이다. 이외는 간식(이유식)이 5.3%이고 아기 의류, 아기 전용 용품, 놀이용품, 교육용품, 병원비 등은 3% 이하이다(표 V-2-3 참조).

아이 연령별로는 소요되는 품목이 다른 만큼 당연히 차이가 크다. 1순위로써 기저귀는 점차 감소하고 분유(우유), 간식(이유식), 의류, 아기 전용 용품, 놀이용품, 교육용품, 병원비 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V-2-3〉 제 특성별 가장 많이 구매한 물품(1순위)

단위: %(명)

구분	기저귀	분유	간식	아기 의류	교육 용품	아기 전용품	놀이 용품	병원비	모름	계(수)
전체	66.4	17.6	5.3	3.0	2.2	2.0	1.7	0.9	0.9	100.0(1,255)
0세	73.5	20.5	1.2	1.1	0.1	2.3	0.4	0.8	0.1	100.0(747)
1세	65.6	13.6	9.4	3.1	3.3	1.9	1.4	-	1.7	100.0(360)
2세	41.5	9.4	17.9	8.5	8.5	0.9	8.5	1.9	2.8	100.0(106)
3세	13.6	27.3	4.5	27.3	13.6	-	9.1	4.5	-	100.0(22)
4세	8.3	8.3	25.0	16.7	8.3	-	16.7	16.7	-	100.0(12)
5세	-	28.6	14.3	14.3	28.6	-	-	-	14.3	100.0(7)
6세	-	-	-	100.0	-	-	-	-	-	100.0(1)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표 V-2-4〉 연령 및 소득수준별 가장 많이 구매한 물품(1순위)

단위: %(명)

구분	기저귀	분유	간식	아기 의류	교육 용품	아기 전용품	놀이 용품	병원비	모름	계(수)
24개월 미만										
전체	71.1	18.1	3.9	1.7	1.2	2.3	0.6	0.6	0.6	100.0(1,064)
149만원 이하	73.5	17.1	3.4	1.7	0.9	0.9	1.7	0.9	-	100.0(117)
150~299만원	73.3	18.1	3.1	1.8	0.8	1.4	0.4	0.6	0.6	100.0(514)
300~499만원	68.6	17.1	5.3	0.9	2.2	4.0	0.3	0.6	0.9	100.0(322)
500만원 이상	64.9	22.5	4.5	3.6	0.9	2.7	0.9	-	-	100.0(111)
24~36개월 미만										
전체	42.6	9.9	17.8	7.9	8.9	-	7.9	2.0	3.0	100.0(101)
149만원 이하	50.0	11.1	11.1	11.1	-	-	11.1	5.6	-	100.0(18)
150~299만원	41.5	9.8	24.4	4.9	12.2	-	7.3	-	-	100.0(41)
300~499만원	37.1	11.4	17.1	8.6	11.4	-	2.9	2.9	8.6	100.0(35)
500만원 이상	57.1	-	-	14.3	-	-	28.6	-	-	100.0(7)
36개월 이상										
전체	11.8	23.5	11.8	26.5	8.8	-	11.8	2.9	2.9	100.0(34)
149만원 이하	-	-	-	100.0	-	-	-	-	-	100.0(1)
150~299만원	9.1	27.3	-	27.3	-	-	18.2	9.1	9.1	100.0(11)
300~499만원	18.8	18.8	18.8	25.0	12.5	-	6.3	-	-	100.0(16)
500만원 이상	-	33.3	16.7	16.7	16.7	-	16.7	-	-	100.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표 V-2-4>는 1순위를 연령을 구분하여 소득수준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전 연령층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즉,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사용처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하겠다.

양육수당 사용처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3순위까지 합하면 가장 많이 사

는 물품은 기저귀, 분유(우유), 간식(이유식), 아기 의류, 아기 전용 용품, 놀이용품, 교육용품, 병원비의 순이다. 이 역시 연령별 차이가 커서 영아는 분유와 기저귀, 아기 전용 용품 비율이 높고, 유아는 교육 관련 지출 비율이 높다(표 V-2-5 참조).

〈표 V-2-5〉 제 특성별 가장 많이 구매한 물품(1+2+3순위)

단위: %(명)

구분	기저귀	분유	간식	아기 의류	아기전용용품	놀이용품	교육용품	병원비	모름	(수)
전체	85.2	64.9	19.5	17.5	17.1	7.9	5.8	5.5	0.9	(1,255)
0세	95.4	78.6	5.8	17.1	21.7	4.0	0.9	7.2	0.1	(747)
1세	82.2	48.3	37.5	15.0	11.9	9.7	8.9	1.9	1.7	(360)
2세	52.8	34.9	50.0	20.8	9.4	26.4	20.8	3.8	2.8	(106)
3세	13.6	50.0	27.3	40.9	-	9.1	22.7	9.1	-	(22)
4세	8.3	25.0	50.0	16.7	-	33.3	33.3	16.7	-	(12)
5세	-	28.6	14.3	57.1	-	-	42.9	-	14.3	(7)
6세	-	-	100.0	100.0	-	-	-	-	-	(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표 V-2-6〉 연령 및 소득수준별 가장 많이 구매한 물품(1+2+3순위)

단위: %(명)

구분	기저귀	분유	간식	아기 의류	교육용품	아기전용용품	놀이용품	병원비	모름	(수)
24개월 미만										
전체	91.4	68.4	16.3	16.3	3.6	18.7	5.5	5.5	0.6	(1,064)
149만원 이하	94.9	70.9	23.9	19.7	0.9	16.2	6.8	9.4	-	(117)
150~299만원	93.2	69.6	13.8	16.3	3.3	19.6	6.0	5.6	0.6	(514)
300~499만원	87.9	65.5	16.1	14.6	5.6	20.8	4.0	4.3	0.9	(322)
500만원 이상	89.2	68.5	19.8	17.1	1.8	10.8	6.3	4.5	-	(111)
24~36개월 미만										
전체	52.5	35.6	51.5	20.8	20.8	8.9	26.7	3.0	3.0	(101)
149만원 이하	61.1	44.4	55.6	27.8	11.1	5.6	16.7	11.1	-	(18)
150~299만원	56.1	39.0	56.1	14.6	22.0	9.8	24.4	-	-	(41)
300~499만원	40.0	31.4	45.7	25.7	25.7	5.7	28.6	2.9	8.6	(35)
500만원 이상	71.4	14.3	42.9	14.3	14.3	28.6	57.1	-	-	(7)
36개월 이상										
전체	11.8	44.1	32.4	44.1	23.5	-	14.7	5.9	2.9	(34)
149만원 이하	-	-	100.0	100.0	-	-	-	-	-	(1)
150~299만원	9.1	45.5	27.3	45.5	18.2	-	18.2	9.1	9.1	(11)
300~499만원	18.8	37.5	37.5	43.8	25.0	-	12.5	6.3	-	(16)
500만원 이상	-	66.7	16.7	33.3	33.3	-	16.7	-	-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표 V-2-6>은 1~3순위 합한 것을 연령을 구분하여 소득수준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인데, 여기에서도 전 연령층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3) 돌봄 비용 사용처

양육수당 사용처로 돌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은 조부모가 54.7%로 가장 높다. 이외 비혈연인 37.2%, 친인척 8.1%이다(표 V-2-7 참조).

<표 V-2-7> (돌봄 비용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제 특성별 많이 사용하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조부모	비혈연인	친인척	계(수)
전체	54.7	37.2	8.1	100.0(86)
0세	60.9	30.4	8.7	100.0(23)
1세	55.8	36.5	7.7	100.0(52)
2세 이상	36.4	54.5	9.1	100.0(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4) 양육 이외 사용처

양육수당을 자녀 양육 이외에 사용한 경우, 사용처는 생활비, 식비, 공과금 등 일반 가계지출 비용이다. 연령별 차이는 사례수가 적어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표 V-2-8 참조).

<표 V-2-8> 제 특성별 양육 이외에 사용한 경우 사용처

단위: %(명)

구분	가계 생활비	가계 식비	기타	공과금/ 세금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52.0	20.0	10.0	6.0	12.0	100.0(50)
0세	50.0	16.7	11.1	11.1	11.1	100.0(18)
1세	64.7	11.8	11.8	5.9	5.9	100.0(17)
2세 이상	40.0	33.3	6.7	-	20.0	100.0(15)

주: X^2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나. 가계 도움 및 만족도

1) 가계 도움

가) 제 특성별 차이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 부모가 자녀 교육·보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325,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비용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높아지는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표 V-2-9 참조). 또한 소득수준, 거주지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⁵⁴⁾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서는 교육·보육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208,700원으로 조사되었는데, 본 조사결과와 1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교육비 지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교육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장난감, 교재교구, 서적, 견학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2년 한 조사에서 장난감과 서적 구입비만 월 평균 54,000원 정도로 산출되었다(서문희·양미선, 2012).

자녀 교육·보육비 이외 비용은 평균 354,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비용은 연령이 많아지면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 격차가 보육·교육비처럼 크지는 않다(표 V-2-10 참조). 이 비용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지역규모가 커지면서 높아진다.

〈표 V-2-9〉 제 특성별 보육·교육비

단위: %(명), 만원

구분	비용 없음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60만원	60만원 초과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전체	29.0	4.1	8.7	7.8	8.6	4.5	5.9	15.1	16.2	100.0(2,004)	32.5
0세	41.5	2.4	4.2	4.2	7.5	4.4	5.0	9.6	21.2	100.0(919)	24.7
1세	26.3	6.3	13.8	11.6	7.8	2.7	5.5	12.8	13.1	100.0(601)	28.0
2세	14.9	9.3	16.7	11.2	14.9	5.6	4.7	11.6	11.2	100.0(215)	31.5
3세	9.1	2.3	13.6	17.0	13.6	5.7	1.1	22.7	14.8	100.0(88)	39.2
4세	2.6	1.3	3.9	5.3	7.9	11.8	19.7	38.2	9.2	100.0(76)	63.6
5세	-	-	1.2	3.5	2.3	7.0	12.8	67.4	5.8	100.0(86)	95.2
6세	-	-	5.3	10.5	21.1	15.8	15.8	26.3	5.3	100.0(19)	55.6
F											41.2***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 p < .001.

54) 표 제시는 생략함.

〈표 V-2-10〉 자녀 연령별 보육·교육비 외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비용 없음	10만원 이하	10~20 만원	20~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60 만원	60만원 초과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전체	2.4	0.6	9.6	19.1	23.5	10.3	11.4	7.8	15.4	100.0(2,004)	35.4
0세	4.9	0.5	8.9	17.1	23.0	10.3	9.6	6.5	19.2	100.0(919)	34.4
1세	0.3	0.8	10.5	20.5	25.3	11.6	11.3	9.2	10.5	100.0(601)	35.4
2세	-	0.5	12.6	24.7	28.4	8.4	13.0	5.1	7.4	100.0(215)	32.3
3세	-	1.1	6.8	22.7	17.0	12.5	17.0	12.5	10.2	100.0(88)	42.3
4세	1.3	-	9.2	15.8	13.2	5.3	17.1	5.3	32.9	100.0(76)	36.0
5세	-	-	7.0	15.1	20.9	8.1	16.3	16.3	16.3	100.0(86)	44.8
6세	-	-	5.3	21.1	15.8	10.5	10.5	10.5	26.3	100.0(19)	40.7
F											2.6*

주: X^2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 $p < .05$.

〈표 V-2-11〉 제 특성별 양육수당 가계 도움 여부와 비용 지출

단위: %(명)

구분	별 도움 안됨	어느 정도 도움됨	많은 도움됨	계(수)
전체	29.3	63.4	7.3	100.0(2,004)
0세	24.0	68.1	7.8	100.0(919)
1세	29.0	64.2	6.8	100.0(601)
2세	33.5	59.1	7.4	100.0(215)
3세	47.7	46.6	5.7	100.0(88)
4세	47.4	48.7	3.9	100.0(76)
5세	45.3	45.3	9.3	100.0(86)
6세	21.1	73.7	5.3	100.0(19)
$X^2(df)$		54.4(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 $p < .001$.

양육수당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70% 정도가 되고 7%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표 V-2-11 참조).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졌다. 이는 양육수당이라는 하나의 정책에 대한 반응과 평가라기보다는 부모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도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수당의 도움 여부에 대한 소득 수준과 지역, 모 취업여부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다분류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양육수당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을 '별 도움

안됨'을 0점으로, '어느 정도 도움됨'과 '매우 도움됨' 1점으로 재부호화하여 코딩하였다. 이때 아동 연령은 분석에 변수(Co-Variate)로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양육수당 수혜 아동의 연령 외에 양육수당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구소득 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수당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소득수준은 1분위 대비 4분위가 양육수당의 가계 도움 정도가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모의 학력이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수당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표 V-2-12〉 양육수당 도움에 대한 다분류 회귀분석

구분	B(se)	Exp(β)
(상수)	-1.73(1.07)	
연령(연속변수)	0.16(0.04)***	1.17
지역(준거: 대도시)		
중소도시	-0.14(0.10)	0.87
읍면	0.03(0.24)	1.03
모 취업(준거: 미취업)		
취업	-0.10(0.12)	0.90
소득4분위(준거: 1분위)		
소득2분위	0.22(0.16)	1.25
소득3분위	0.01(0.17)	1.01
소득4분위	-0.32(0.19)#	0.72
모 학력(준거: 중학 이하)		
고등학교	0.28(0.35)	1.32
전문대	0.30(0.37)	1.35
대학교	0.25(0.34)	1.28
대학원 이상	0.17(0.38)	1.19
-2 Log Likelihood	772.6	
X ² (df=11)	57.6***	

$p < .1$,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2) 만족도

가) 만족 정도

양육수당 금액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56.2%이다. 연령별로 0세가 60%가 넘고, 1세가 53% 수준으로 기타 연령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표 V-2-13 참조).

2012년 조사(서문희·김혜진, 2012)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으나 만족한다는 비율은 15.5%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양육수당을 수혜받은 첫 달에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인 것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V-2-13〉 제 특성별 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매우 만족	만족	불만	매우 불만	모름/무응답		
전체	2.1	54.1	36.6	5.0	2.2	100.0(2,004)	2.46
0세	2.9	58.9	30.8	4.0	3.4	100.0(919)	2.37
1세	1.8	51.9	40.1	5.2	1.0	100.0(601)	2.49
2세	0.5	46.0	46.0	6.5	0.9	100.0(215)	2.59
3세	2.3	46.6	43.2	6.8	1.1	100.0(88)	2.55
4세	0.0	52.6	43.4	2.6	1.3	100.0(76)	2.49
5세	1.2	48.8	36.0	10.5	3.5	100.0(86)	2.58
6세	-	47.4	42.1	10.5	-	100.0(19)	2.63
F							5.9***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 $p < .001$.

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요인들의 양육수당의 만족여부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분류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양육수당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 0점, '만족'과 '매우 만족' 1점으로 재부호화하여 코딩하였다. 이때 양육수당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 연령은 분석에 변수(Co-Variate)로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양육수당 수혜 아동의 연령 외에 양육수당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 학력 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 연령은 어릴수록 만족도가 높고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수당에 대하여 불만족을 나타내고, 모의 학력은 중학 대비 대학이나 대학원 이상 학력 집단에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나타냈다.

변수별로 방향성을 보면 연령, 모 취업여부, 소득수준, 모 학력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나, 지역은 다른 방향성을 갖는다. 즉, 모 학력이 높아질수록 양육수당에 불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의하지 않았지만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수당 금액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V-2-14> 양육수당 만족에 대한 다분류 회귀분석

구분	B(se)	Exp(β)
(상수)	2.90(1.02)**	
연령(연속변수)	-0.16(0.03)***	0.85
지역(준거: 대도시)		
중소도시	0.10(0.10)	1.11
읍면	0.10(0.21)	1.11
모 취업(준거: 미취업)		
취업	-0.14(0.11)	0.87
소득4분위(준거: 1분위)		
소득2분위	-0.12(0.15)	0.89
소득3분위	-0.13(0.16)	0.88
소득4분위	-0.11(0.19)	0.90
모 학력(준거: 중학 이하)		
고등학교	-0.48(0.33)	0.62
전문대	-0.63(0.35)	0.53
대학교	-0.75(0.33)*	0.47
대학원 이상	-0.89(0.37)*	0.41
-2 Log Likelihood	766.7	
X ² (df=11)	38.3***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3) 불만족 시 적정 금액

<표 V-2-15>는 양육수당 금액에 불만족할 시 원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표 V-2-15> 제 특성별 (양육수당 불만족 시) 적정 금액

구분	단위: %(명), 만원						평균	
	20만원 이하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모름/무응답		
전체	0.6	18.0	40.3	17.1	19.1	4.9	100.0(834)	35.4
0세	0.3	0.9	34.1	29.1	31.3	4.4	100.0(320)	41.5
1세	0.4	19.9	48.5	11.8	14.0	5.5	100.0(272)	33.2
2세	1.8	45.1	40.7	6.2	5.3	0.9	100.0(113)	28.4
3세	-	31.8	43.2	4.5	15.9	4.5	100.0(44)	30.8
4세	-	40.0	37.1	2.9	5.7	14.3	100.0(35)	29.9
5세	2.5	27.5	27.5	17.5	15.0	10.0	100.0(40)	33.5
6세	-	30.0	60.0	10.0	-	-	100.0(10)	28.5
F								24.4***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 $p < .001$.

전체 희망하는 양육수당 평균은 354,000원으로 산출되었다. 자녀 연령별로 특히 보육료 지원금이 77만원 수준인 0세아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금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의 생각하는 적정한 지원 금액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서문희·김혜진, 2012) 결과인 369,000원 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3. 양육수당 바우처 관련 논의

가. 양육수당 바우처 논의

1) 양육수당과 양육수당 바우처의 개념

바우처는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달리 주로 특정 형태의 소비자를 보조하여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토록 유인하는 장치이다. 이는 특정 형태의 소비자에게 화폐에 준하는 증서를 발급하여 제공하여 이를 소비자가 시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재량과 선택을 발휘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토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금전적인 보조와의 차이점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재정지원을 통해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소비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종류의 상품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재정을 통한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가능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선호를 왜곡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이다. 모의 취업과 연계하여 영아 양육수당을 도입한 일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정부가 공적 서비스를 확보해 주며, 그렇지 못한 경우 부모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양육수당도 어느 정도는 공적 기관 이용 대신에 다른 대안적 서비스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배경에서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나 형평성 원칙 등이 그러한 의도를 어느 정도는 반영한다. 더욱이 2013년부터는 국가 공통과정으로 홍보하는 누리과정의 적용 대상인 3~5세 아동에게까지도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준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가? 수당은 전통적으

로 현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육수당은 바우처로 준다면 이는 양육수당이 아니라 양육바우처가 된다. 이는 수당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재화와 서비스 지원의 일종이 됨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아동에 해당되는 재화로 판단되는 특정재화의 소비로 사용되기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양육바우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육바우처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고 목적은 무엇인지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양육바우처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적 보육, 유아교육 서비스와 연계시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배경에는 특히 보육서비스가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서비스이며 그 이외에는 다른 지원이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보육서비스가 보육이 필요한 부모에게 한정된 맞춤형 서비스가 될 때 이러한 양육바우처는 보편성을 요구받을 수 있다.

2) 바우처로의 전환 가능성

양육수당과 양육수당 바우처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용처의 선택권 보장 정도이다. 바우처로 지급할 경우에는 수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바우처로 지급하면서 구매 가능 품목을 제한하기는 현재로서는 바우처가 통용되는 별도의 폐쇄 쇼핑몰을 만들지 않는 한 현재 시장에서는 불가능하다. 현재는 클린카드⁵⁵⁾와 같이 전체 350여 업종 중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만을 제한할 수 있다.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시 아이사랑카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통합은 별 의미가 없다. 관리 및 행정 비용을 감안해 보면 전면적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체계의 전면 개편이 아니고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사례와 같이 보육료 차등 지원과 양육수당을 결합하여 이용시간에 따라 수당에 차등을 주는 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나. 부모 의견

1) 특성별 차이

부모 조사에서 현금인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전환하는데 대해서는 14.5%가 찬

55) 유흥, 위생, 사행 등 40개 세부업종에서 결제가 금지됨.

성하고 41.4%는 절대 반대하며 44.1%는 반대하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표 V-3-1〉 제 특성별 양육수당 바우처 전환 시 의견

단위: %(명)

구분	바우처 전환에 대한 찬반 의견				바우처 전환 시 카드 방식			계(수)
	절대 반대	반대하는 편	찬성하는 편	적극 찬성	구입 가능 품목 지정	구입 불가 품목 제한	모름 /무응답	
전체	41.4	44.1	13.6	0.8	19.4	70.6	10.1	100.0(2,004)
자녀연령								
0세	38.7	46.2	14.0	1.0	21.0	68.3	10.7	100.0(919)
1세	42.1	45.1	11.8	1.0	16.3	74.4	9.3	100.0(601)
2세	48.4	33.5	18.1	-	25.1	69.3	5.6	100.0(215)
3세	35.2	48.9	15.9	-	19.3	68.2	12.5	100.0(88)
4세	38.2	46.1	14.5	1.3	10.5	76.3	13.2	100.0(76)
5세	54.7	33.7	10.5	1.2	14.0	72.1	14.0	100.0(86)
6세	52.6	47.4	-	-	31.6	52.6	15.8	100.0(19)
X ² (df)	na				25.0(12)*			
지역 규모								
광역시	48.6	36.2	14.0	1.2	19.5	69.2	11.3	100.0(938)
중소도시	35.8	50.4	13.2	0.6	19.1	72.1	8.8	100.0(957)
읍면	28.4	56.9	14.7	-	20.2	68.8	11.0	100.0(109)
X ² (df)	520(6)***				3.8(4)			
모 취업여부별								
취업	47.6	39.0	12.6	0.7	14.1	75.1	10.8	100.0(269)
휴직중	40.3	43.1	16.0	0.7	18.8	71.5	9.7	100.0(288)
자영업·재택	31.7	53.3	15.0	-	18.3	73.3	8.3	100.0(60)
미취업	40.7	45.2	13.2	1.0	20.7	69.4	9.9	100.0(1,351)
부재 등	47.2	36.1	16.7	-	13.9	69.4	16.7	100.0(36)
X ² (df)	na				8.9(8)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1.4	44.1	13.6	0.8	19.4	70.6	10.1	100.0(2,004)
150~299만원	33.7	49.7	14.8	1.8	22.5	63.9	13.6	100.0(169)
300~499만원	39.5	46.0	13.9	0.6	20.3	69.5	10.2	100.0(787)
500만원 이상	44.0	41.7	13.7	0.7	20.2	72.2	7.6	100.0(605)
X ² (df)	44.9	40.8	13.1	1.2	14.9	77.6	7.6	100.0(343)
	11.6(9)				16.0(6)*			

주: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 $p < .05$, *** $p < .001$.

찬성한다는 비율은 아동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으나 일관성은 없고, 기타 요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지역규모와 가구소득 수준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반대하는 정도가 도시 거주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강할 뿐이고 반대한다는 비율이나 찬성한다는 비율 자체의 차이는 거의 없다(표 V-3-1 참조).

부모 면접 결과, 바우처에 대하여 찬성하는 소수의 경우, 어차피 자녀를 위한 물품 구매에 최대 20만원인 수당 금액 정도는 대부분 사용하므로 바우처로 지급 하여도 별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이었다.

한편으로 바우처 방식에서의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는 상당히 다양하였다. 그러나 그 골자는 현금 사용이 바우처보다 선택권 보장 범위가 넓다는 데서 기인 한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아이를 위한 물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일상적 가계지출에는 식품, 주거 등 공동비용이 많은데,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과 다른 가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아이 물건을 사는데 사용한다고 하여도 원하는 물품 구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아이물품이라고 하여도 바우처를 받는 곳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선택이 제한되므로 가격이 다소 비싸도 물건을 그냥 사야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또한 재래시장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이웃이나 베품시장에서 중고 의류나 서적, 장난감 같은 물건을 헐값에 사기도 하는데 이도 불가능하다는 불만도 제시되었다.

셋째는 현금 사용의 불가능의 문제이다. 현재 비용 뿐 아니라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이 더 많아질 것을 예상하여 우선 저금을 하는 중인데, 바우처 지급 시 억지로 사용하게 되므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리보육 비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자녀를 대리 양육해주는 조부모님께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바우처로 전환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소득수준이 중 이상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넷째는 양육수당의 목적과 성격에 관한 이견이다.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신에 받는 것인데, 엄마가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하여 사서 먹는 차나 커피도 자녀를 위한 것일 수 있어서 목적의 적합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섯째는 사용자의 사용능력이나 부적절한 활용도 우려하였다.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일이 많은데 노인층에서는 바우처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고,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물건을 사서 싼 값에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여섯째,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아이사랑 카드와 통합하면 몰라도 또 새로운 카드를 또 만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에 대해 불만도 있었다. 바우처 발행

이나 수수료 부담 등은 모두 행정 비용을 수반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일을 만들어서 국가 재정을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V-3-2〉 연령 및 소득수준별 양육수당 바우처 전환 시 의견

단위: %(명)

구분	바우처 전환에 대한 찬반 의견				바우처 전환 시 카드 방식			계(수)
	절대 반대	반대하는 편	찬성하는 편	적극 찬성	구입 품목 지정	구입 불가 품목 제한	모름 /무응답	
24개월 미만								
전체	40.1	45.8	13.1	1.0	19.3	71.3	9.4	100.0(1,457)
149만원 이하	33.8	48.5	15.4	2.2	22.8	63.2	14.0	100.0(136)
150~299만원	39.9	46.9	12.5	0.7	19.6	70.1	10.3	100.0(670)
300~499만원	41.1	44.6	13.4	0.9	19.6	73.2	7.1	100.0(448)
500만원 이상	42.9	43.3	12.8	1.0	15.3	76.4	8.4	100.0(203)
X ² (df)	5.9(9)				11.2(6) [#]			
24~36개월 미만								
전체	47.5	33.2	19.3	-	24.8	70.8	4.5	100.0(202)
149만원 이하	37.5	45.8	16.7	-	29.2	66.7	4.2	100.0(24)
150~299만원	36.8	34.2	28.9	-	26.3	68.4	5.3	100.0(76)
300~499만원	55.1	31.9	13.0	-	23.2	71.0	5.8	100.0(69)
500만원 이상	63.6	24.2	12.1	-	21.2	78.8	-	100.0(33)
X ² (df)	13.0(6) [*]				na			
36개월 이상								
전체	44.1	42.0	13.1	0.8	16.3	71.8	11.8	100.0(245)
149만원 이하	22.2	77.8	-	-	-	66.7	33.3	100.0(9)
150~299만원	39.0	53.7	7.3	-	22.0	61.0	17.1	100.0(41)
300~499만원	50.0	34.1	15.9	-	20.5	68.2	11.4	100.0(88)
500만원 이상	43.0	41.1	14.0	1.9	12.1	79.4	8.4	100.0(107)
X ² (df)	na				na			

주: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 $p < .1$, * $p < .05$.

한편, 그래도 양육수당을 바우처 카드로 전환할 경우에 방식을 질문한 결과에는 70%가 구입하면 안 되는 품목을 제한한 카드 형태를 선호하고 19.3%만이 구입이 가능한 품목이 정해진 카드를 선호하였다.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이 그 이외 부모에 비하여 구입이 가능한 품목이 정해진 카드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표 V-3-1 참조). 심층면접에서도 바우처 카드가 도입되게 된다면 대부분 구입 가능 물품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보다 구입 불가 품목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찬성하였다.

아동 연령을 나누어서 소득수준별로 보면 전 연령집단에서 모두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구입 불가 품목을 제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V-3-2 참조).

2) 바우처 전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V-3-3>는 양육수당 바우처 전환 의견에 대한 다분류 회귀분석 결과이다. 양육수당의 바우처 전환 여부에 대한 소득 수준과 지역, 모 취업여부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다분류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양육수당 바우처 전환 의견에 대한 응답을 '절대 반대'와 '반대하는 편'을 0점으로, '찬성하는 편'과 '적극 찬성' 1점으로 재부호화하여 코딩하였다. 이 때 연령은 분석에 변수(Co-Variate)로 포함하였다.

<표 V-3-3> 양육수당 바우처 전환 찬성 의견에 대한 다분류 회귀분석

구분	B(se)	Exp(β)
(상수)	-3.45(1.21) ^{***}	
연령(연속변수)	-0.03(0.05)	0.97
지역(준거: 대도시)		
중소도시	0.11(0.13)	0.41
읍면	0.28(0.31)	0.37
모 취업(준거: 미취업)		
취업	-0.10(0.15)	0.91
소득4분위(준거: 1분위)		
소득2분위	-0.03(0.21)	0.97
소득3분위	-0.09(0.22)	0.91
소득4분위	0.01(0.26)	1.01
모 학력(준거: 중학 이하)		
고등학교	0.48(0.39)	0.22
전문대	0.70(0.42) [#]	0.09
대학교	0.81(0.39) [*]	0.04
대학원 이상	0.20(0.43)	0.63
-2 Log Likelihood	591.0	
X ² (df=11)	13.8	

[#] $p < .1$, ^{*} $p < .05$,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분석결과 양육수당 바우처 전환 찬성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 학력 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모 학력이 중학 이하 대비 전문대와 대학교 학력자가 바우처 방식 전환에 찬성하

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고졸 학력과 대학원 이상은 중학 이하 학력자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모가 미취업보다는 취업할 경우에 양육수당 바우처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외 아동 연령, 지역 소득수준은 집단간 차이가 없이 동일한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하겠다.

4. 정책 시사점

이상의 결과를 두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수당 대상이 대부분 영아로 유아 대상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약함을 알 수 있다. 12개월 미만 46.0%,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0.2%,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0.3%로 영아가 86.5%이고 나머지 14.5% 정도만이 유아이다. 특히 유아는 기타 기관 이용 비율이 높는데, 양육수당이 기타 기관 이용 기보다는 기타 기관 이용 아동에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기관은 대체로 고가의 영어 학원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대다수가 양육수당을 자녀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별도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음을 나타냈다. 수혜자의 90% 정도는 전액을 자녀에 사용하고 8%는 일부를 자녀에게 사용하며 2.5%는 구분없이 가계지출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셋째, 소득계층이나 어머니의 취업 관련된 양육수당의 영향 가능성은 여전함을 나타내어서 향후 정책 추진 시 민감한 대응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수혜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수혜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에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미이용은 소득계층이 영향을 받으나 유아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용처도 일반 가계지출에 포함하여 사용한다는 응답이 3, 4세아와 저소득층 영아 부모인 3월 이전부터 수혜자에게서 5%대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전자는 그 액수의 미미함에서 비롯되고 후자는 가정 사정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육수당 수혜 후 부모가 일을 그만 두었다는 비율이 14.7%이고 일을 줄였다는 비율이 3.2%이다. 특히 0세아 부모는 22.7%가 일을 그만 두고 5.9%가 일을 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액수가 비교적 많은 0세아 양육수당이 상대

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지원 수준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도나 만족도가 높아서, 제도 도입 시기 조사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단 정책적 성과는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수당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70% 정도가 되고 7%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수당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소득수준은 4분위 대비 1분위가 양육수당의 가계 도움 정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양육수당 금액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56.2%로 높다. 이는 양육수당을 수혜 받은 첫 달에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인 것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은 양육수당에 불만족할 시 원하는 양육수당은 과거 다른 연구결과와도 유사하게 35만원 수준이었다.

다섯째, 현금 지원인 양육수당을 바우처로의 전환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하였으나 만약에 제도가 도입된다면 구입 불가 항목 제한 방식이 적절함을 나타냈다. 부모 조사에서 현금인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전환하는데 대해서는 41.4%는 절대 반대하며 44.1%는 반대하는 편으로 85.5%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그래도 양육수당을 바우처 카드로 전환할 경우에 방식을 질문한 결과에는 70%가 구입하면 안 되는 품목을 제한한 카드 형태를 선호하고 19.3%만이 구입이 가능한 품목이 정해진 카드를 선호하였다.

VI.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2012년 및 2013년 주요 보육사업 검토 결과, 공공형 어린이집과 양육수당 심층 검토 결과 등에 의거하여 향후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⁵⁶⁾

1. 향후 정책과제

가. 비용 부담 경감

2012년은 영아 무상보육,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보육아동의 90.8%이었고 2013년은 전 연령, 전 계층, 전액 지원을 달성하였다. 소위 무상보육을 실현한 것이다.⁵⁷⁾ 3, 4세 무상보육 실현 이전인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아도 가구소득 대비 어린이집 이용 비용 비율이 3.5%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44.0%로 2009년 조사 결과 64.2%보다 10%p 가까이 낮아졌다.

2013년에는 양육수당 덕분에 어린이집 이용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12년에 겪었던 지방정부의 분담금 부족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갈등,⁵⁸⁾ 취업모 등 보육 실수요자의 역차별, 가정어린이집의 증가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문제 등은 반복되었다.

한편에서는 무상보육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 기타 필요경비나 추가 비용 부담으로 부모 부담이 적지 않아서 반쪽 무상보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별활동이나 기타 비용은 다소 올라갔고, 시·도나 시·군·구가 제시하는 비용 상한액도 올라가고 항목도 강사 파견 없이 교재교구비 수납이 가능한 특성화비가

56) 아이사랑 플랜(2009-2012)에 이은 차기 중장기 발전방안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별도의 과제로 추진하므로 본 장에서는 주제와 추진 방향성만 제시하였음.

57) 보건복지부는 영아 어린이집 쏠림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육 지원 재설계안을 내놓았으나 이러한 방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무상보육 폐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폐기되고 전면 무상보육과 전연령, 전계층 양육수당이 채택되었음.

58) 2012년에는 국고 부족분 2,478억원 이외에도 지방정부 추가 분담금 6,639억원 중 4,351억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게 되었음.

신설되는 경향을 보였다.⁵⁹⁾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침 준수 및 기타 경비 부담 해소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수납하는 비용은 보육료 지원단가와 상한액 차액과 특별활동 등 기타 필요경비인데, 특히 특별활동 비용의 비중이 크다.

우선은, 단기 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4개월 미만 아동 특별활동 금지, 오전 특별활동 금지, 부모의 선택권도 보장 등의 특별활동 적정관리지침이 지키도록 한다.

둘째, 특별활동이나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경비 수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다.⁶⁰⁾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설정은 지방정부 결정사항이므로 지역마다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은 물론 항목과 기준이 각기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는 2013년에 특별활동 비용 증액의 어려움으로 그 대안으로 교재교구비 수납이 가능한 특성화 비용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고, 점차 이러한 항목을 두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특별활동 적정관리지침의 준수와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개념, 내역, 상한 기준은 물론 각 항목별로 연령별 이용가능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당 주당 빈도, 1회당 교육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집의 기타 경비 관련 활동이나 수납액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2013년 하반기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명과 업체명, 부모부담 등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부 사업체와의 계약관계나 비용 사용 결산을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정하여 이를 심의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추가적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별활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표준보육과정 연계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사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비용을

59) 2012년 전국보육실태 가구조사 결과를 보아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지불이동 기준으로 평균 64,000원으로 2009년 53,800원보다 1만원 정도 증가함.

60) 보건복지부 수탁과제로 추진한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경감 방안’(서문희·양미선·송신영, 2013)에 제시한 구체적 대안 참조

지원한다. 이는 표준보육비용과도 연계된다.

다섯째,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이 주축이 되어 전문적 능력이 필요한 예체능 등의 특별활동 인력은 전문 강사 풀을 구축하여 어린이집에 강사를 파견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인력풀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서울시에서도 시도하고 있는데 인적 자원이 많은 도시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취약지역에는 정부가 전문인력 파견 형태로 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2)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보육료 지원단가에 반영

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이나 그 동안 연구자들이 산정한 표준보육비용보다 낮다. 이러한 실제 부모 부담 비용과 지원단가간의 격차로 전액 지원의 체감도를 낮춘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현재 22만원이고 이외에 오후반비도 지원되고 있으나 그 지원 수준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지원 단가를 점차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산출하도록 한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떤 항목의 서비스를 어느 수준으로 제공할 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나라 전체적 소득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보육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법적 기준에 맞추어야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보조교사나 비담임교사 배치 등과 같은 근본적이고 전반적 개선, 이용시간 다양화와 이에 따른 이용시간별 보육서비스 비용 등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보육비용과 보육료 지원단가간의 관계 정립도 필요하다. 전액 보육료 지원금 이외에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시설보조금이나 아동별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도 보육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3) 저소득층 아동에 기타 필요경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기타 필요경비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무상 보육 등으로 보편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저소득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 저소득층은 실제 지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높아서 실제 부모들이 느끼는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특별활동이나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시

에서는 비용을 직접 지원하고,⁶¹⁾ 특별활동 강사를 구하기 어렵고 부모의 비용 부담도 어려운 이중 부담을 지는 농촌 어린이집에는 특별활동 강사를 파견하는 정책이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4) 지방정부 분담

보육국고 지원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구성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급보조율 내역 중 제89호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을 보면 기준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로 규정하고, 가감 조건을 두고 있다.⁶²⁾ 2012년, 2013년 영아 무상보육 확대를 지방정부의 분담금 부족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갈등은 서울시의 현수막을 통한 중앙 정부 공격으로까지 이어지는 불상사를 연출하였다.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분담 비율은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도 보육예산을 재검토하여 사용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보육정책은 가장 우선적으로 취업모, 전업주부 등 부모의 특성별 보육 요구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비용 지원을 포함한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전반적으로 부모들의 보육 요구의 차이에 대한 차등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모의 취업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은 부족하고, 어린이집 중심의 12시간 보육으로 획일화된 정책은 모든 아동의 장시간 보육을 초래하고 나가서 교사의 업무 과중 결과를 낳고 있다. 이용시간과 유형의 다양화, 부모-자녀 이용시설 확대를 포함하여 수요자 맞춤 서비스의 제공 강화가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61)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음.

62) 회계연도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률 10%를 인상하고,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률 10% 인하(다만,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하여만 적용)한다고 규정함.

1) 일하는 부모 우선 보육 지원체계 마련

현재 모든 어린이집에 작용되는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규정이 있다. 그러나 9가지 조건이 1순위로 동순위이고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가 2순위다. 각 조건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아동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입소우선순위 위반 시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조치가 가능하다.⁶³⁾ 그런데 이러한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모 자녀의 장시간 보육을 꺼리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그러나 위반하여도 위반여부를 밝히기가 어려워서 규제의 실효성 제고가 과제가 된다.

입소 우선순위가 준수되도록 전산체계를 통하여 신청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직장맘지원센터와 같이 일하는 부모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은 실수요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 상시 수요는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7.8%로, 실제 보육아동의 3.3%의 두 배 정도가 된다. 그만큼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어려운 서비스이다. 우선은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더라도 향후에는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시간연장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별로 거점형 어린이집을 두어야 한다. 이는 적정 규모를 확보하여 연령별 프로그램 운영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이다.

2) 이용시간 개념 도입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아동의 이용시간을 동일시하면서 지원단가가 12시간 보육 기준이라고 오해하는 현상은 수 년간 그대로 달라지지 않았다.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을 구분하고,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용시간을 오후 2~3시 경에 귀가하는 유형⁶⁴⁾과 종일제로 구분하고 비용도 이용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수납한다. 시간 단위 이용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63)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 제38조 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임.

64) 미취업모 자녀의 등원시간은 비교적 늦기 때문에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혼란이 우려됨.

이용시간 개념 도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린이집 운영 비용이다. 아동의 일정 수가 일찍 귀가한다고 교사도 함께 퇴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기 귀가 아동의 보육비용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특히 영아는 보육비용 중 인건비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채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시간선택제 교사가 많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재정 투자와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3) 자녀양육 지원 전달체계 구축

영유아를 기르는 부모가 자녀 양육 관련 정보나 상담을 지원받고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영아 무상보육 도입 이후 어린이집 쏠림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양육수당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미이용자를 위한 시간제 서비스나 부모와 자녀 이용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한다. 우선 육아지원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최소 1개가 설치되어야 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는 인구규모에 따라 권역별로 복수 설치한다. 2011년 이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은 바람직하다.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한 지역간 균형 배치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장난감 도서관, 시간제 보육, 파견보육 사업 등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을 브랜드화하여 기관 및 사업 인지도를 높여서 부모들의 활용 가치를 제고한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인지율은 장난감·도서 대여가 가장 높은데, 그 비율은 28.7% 정도에 머문다.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설치비 이외에 운영비도 지원하여 지역적 불균형을 최소화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의 자질과 처우 개선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4) 일시보육 체계 구축

정부는 2013년에 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를 위하여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

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일시보육⁶⁵⁾은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하거나 육아지원센터 등 별도 유형의 기관을 두어 운영한다. 운영은 점차 시간제 일시보육보다는 주 2~3회 단시간 정규 보육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5) 아이돌봄 인력 접근성을 제고 및 자격관리

공적 영역의 아이돌봄 사업은 지정기관의 수를 늘려서 접근성을 제고한다.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저소득층 이외에 비용 지원보다는 질 높은 도우미를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비예산 부분을 확대하여 정부 지원 없이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부모의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또한 돌보미를 좋은 여성의 일자리로 만들어 가는 문제도 주요 과제이다. 아이돌봄 시간당 수당이 5,000원에 머물러 임금수준이 기대치보다 낮아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 아이돌봄이뿐 아니라 영리회사에서 파견되는 베이비시터를 포함하는 모든 보육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을 받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법적 근거 마련, 돌봄 인력 단기교육, 인력을 등록시켜 관리하는 기구 등이 필요하다.

다. 양육수당 제도 개선

2013년에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교육이 달성된 해이며, 또한 양육수당도 자산 조사가 없어졌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아동의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 2013년 확대된 양육수당은 단기적으로는 어린이집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 대비 3월에 보육 비율이 0세는 6.2%p, 1세는 11.1%p 낮아졌다.⁶⁶⁾ 양육수당과 관련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65) '일시보육'이라는 용어는 이미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적 용어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 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종전에 사용하던 시간제 보육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불분명함.

66) 3월의 이용률은 0세 12.2%, 만1세 57.7%로 2013년 1월 0세 18.4%, 만1세 68.4%와 대비됨(2012. 3. 22일자 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1) 양육수당 정책 대상 0, 1세로 제한

양육수당 대상이 대부분 영아로 유아 대상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약함을 알 수 있다. 12개월 미만 46.0%,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0.2%,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0.3%로 영아가 86.5%이고 나머지 14.5% 정도만이 유아이다. 특히 유아는 기타 기관 이용 비율이 높는데 기타 기관 이용 아동에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육서비스 대체로서의 양육수당은 영아 대상 정책이어야 한다. 현재 저소득층 영아에게서 보육서비스 대체효과가 부분적으로 작동한다고 하겠으므로, 국가 유아 커리큘럼인 누리과정 대상인 유아로의 확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부모의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에 따라 아동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최소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양육수당 지원금 소폭 증액

양육수당 수혜 후 부모가 일을 그만 두었다는 비율이 14.7%이고 일을 줄였다는 비율이 3.2%이다. 특히 0세아 부모는 22.7%가 일을 그만 두고 5.9%가 일을 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액수가 비교적 많은 0세아 양육수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소득계층이나 어머니의 취업 관련된 양육수당의 영향 가능성은 있다. 수혜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수혜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에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미이용은 소득계층이 영향을 받으나 유아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용처도 일반 가계지출에 포함하여 사용한다는 응답이 3, 4세아와 저소득층 영아 부모인 3월 이전부터 수혜자에게서 5%대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전자는 그 액수의 미미함에서 비롯되고 후자는 가정 사정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수당 금액은 0, 1세를 중심으로 다소 증액시킬 수 있으나, 그 금액은 최고 30만원 미만이 적절하다. 본 조사에서 부모들이 원하는 양육수당은 평균은 35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다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3) 현금 지원 방식 유지

양육수당의 사용처 제한 수단으로 바우처로 지급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의 현금 지원 방식을 유지한다.

양육수당과 비우체 제도의 성격과 근본적 개념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지급방식의 변경으로 간주할 사항은 아니다.

또한, 양육수당 수혜자 다수가 양육수당을 자녀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별도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 조사 결과, 수혜자의 90% 정도는 전액을 자녀에 사용하고 8%는 일부를 자녀에게 사용하며 2.5%는 구분 없이 가계지출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부모들도 현금인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전환하는데 대해서는 85.5%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바우처로 지급할 경우에도 어떤 형태를 취하건 행정비용 대비 실효성은 낮다.

라. 공공 어린이집 확대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두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 극히 일부만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공공 어린이집은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나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직장, 법인 및 단체어린이집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비중은 아동 기준으로 25% 미만이다. 이 비율의 확대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민간개인어린이집 설치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져 감소하는 경향이다.

1) 국공립어린이집 전국 균형 배치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여전히 아동을 기준으로 10% 수준에 머문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과거보다 신규 설치 확대 수를 늘렸으므로 다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고 지원 기준은 과거와 동일하고 시·군·구의 비용 부담은 여전하다. 질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전국에 균형 배치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재정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지원 항목 대상을 건축비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부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 기준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지원 단가도 최소한 공공건물 건축비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기준 규모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아동 규모당 일정 규모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배치되도록 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필요 시에 국고로 전액 지원하는 등 기존의 지원 틀을 벗어나는 강력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균형 배치 원칙이나 기준, 그리고 설치비 지원 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특별한 법의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

최근에 민간 기업이나 기업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으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규모는 한계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촉진한다.

2)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난 수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였다.⁶⁷⁾ 특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를 법제화로 인하여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주저하던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에서 어린이집 설치를 서두르게 되었다. 어린이집 설치 대신 수당 및 타 어린이집 위탁 조항도 삭제를 추진한다.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기업의 입장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도시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파견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밀집지역에는 기업이 설치하고 국가 운영하는 형태의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

마.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개선

2013년 조사와 비교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은 많이 개선되었고, 지원도 2013년 하반기부터 다소 증액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지원 수준은 낮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특별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고 특별활동비도 더 많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활동의 경우 의무 수장 비율이 40%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

67) 2010년에 기업 세제지원 기간 연장, 감면 세율 7%에서 10%로 확대, 설치비 용자 규모도 2010년에 7억원으로 확대 및 시설전환비 지원금 증액을 추진함. 2011년에는 산업단지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고, 2011년 12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를 법제화하였음.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장소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보육정원의 1/3 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여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하고, 어린이집 설치 대신 수당 및 타 어린이집 위탁 조항도 삭제함.

집의 의무 수강 비율보다 높았다. 부모 만족도에서도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만족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5점 만점에서 4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비용과 급간식 관리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즉, 공공형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나 부모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기제로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을지 묻는 문항에서 3/4 정도가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공공 어린이집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기준 점수 배점에서 가·감점 항목은 100점 점수 체계 안에 넣어서 점수산정 체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 기준 점수도 재검토한다. 둘째, 공공어린이집 신청 조건으로 대표자 1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수를 제한하고 임대를 제한하며 자가 시설의 경우에도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내실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한다. 셋째, 운영비 지원 체계를 구간별 운영비에서 교사 수나 반당 지원으로 보육비용 지원체계를 점차 개선한다. 넷째, 클린카드 사용, 1시설 1계좌 사용, 재무회계 기준 준수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꾸준히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특별활동적정관리지침 등 정부가 제시하는 제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지도한다. 아울러 공공형 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바.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2013년 초 무상보육 실시에 맞추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온갖 부적절한 사례들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보육은 국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인식을 전 국민에게 심어주기 충분하였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민간어린이집 설치 조건 강화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는 2012년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 시 자기자본 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였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에 의하면 자가 비율이 민간어린이집 48.2%, 가정어린이집 65.6%이고, 용자금도 응답자 평균으로 각각 3억원, 1억원이었다.

건물 임차료나 용자금 이자 부담 없는 운영은 질 높은 보육시설 운영에 필수 조건이다. 앞으로는 개인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자가 시설로 한정하고 보육시설을 건물과 대지가 합쳐진 개념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가인 경우에도 자기자본 비율을 제시하여 보육비용의 효율적 사용 여건을 확보하도록 한다.

2) 평가인증제도는 의무신청제나 평가제도로 전환

현재는 평가인증 2주기로, 2010년부터는 평가지표와 운용체계를 개선하였고 2013년에 기본확인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관찰 시 관찰일 사전 고지를 없앴으며 평가가 없는 기간에 확인점검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 가구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81.7%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선택 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비율도 37.0%이다.

2013년 9월에 평가인증 결과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다. 평가보고서를 전면 공개는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 제도 하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참가나 인증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체계를 그대로 두고 의무신청 평가제도로 개편하거나 평가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모든 어린이집 평가와 연결된 또 다른 과제는 재정지원과의 연계이다. 2011년부터 교재교구와 평가인증을 연계하였고 취사부 인건비 지원과도 연계하고는 있으나, 점차 기본보육료나 보육료와 같은 강력한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도 인증유지율은 크게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평가인증 유지율은 70% 미만이다.

운영체계도 개편이 필요하다. 점수체계를 현장관찰 결과 중심으로 개선한다. 평가인증 점수 산정 시에 관찰평가 점수 배점을 높이고, 자체평가보고서 점수는 삭제하고 심의과정을 간략하게 하여 배점도 축소 조정한다. 사후관리는 점차 강화하여 확인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그러나 확인점검은 평가인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3) 과정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사 지원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어린이집에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강화하여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 운영에서 내용 상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자율 장학 등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장려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적으로 전문인력의 균등 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시·도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시·군·구와 연계하면서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2012년 전국보육실태 어린이집조사에서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55만원이며 평일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28분으로 산출되었다. 2013년 들어서는 누리과정 교사 수당 30만원과 일반 보육교사 수당 12만원으로의 증가로 급여 수준이 다소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치원교사 담임수당이 2013년 51만원⁶⁸⁾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유보간의 격차는 상당하다.

1) 추가 인력 배치 및 이용시간 체계 개편

교사 1인이 거의 종일 한 반을 담당하여야 하는 근무 조건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한 가지 다행한 일은 누리과정에 따른 종일반 비용 지원금을 활용하여 2013년부터 누리과정 반이 3개 이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어린이집은 보조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사업은 그 규모가 450명 규모에서 증가되지 않았다. 주중에 5일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 사용상 제한 사항은 여전하다. 현재 규모로는 교사의 교육이나 단기휴가 등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대체교사를 확충한다. 그러나 점차 비담임교사 배치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누리과정반 이외에 영아반에도 보조교사가 필요하다.

보육은 기본적으로 취업모 자녀 등 장시간 보육 요구가 있는 아동보육을 담

68) 비담임교사 수당은 40만원임.

당하여야 하므로 교사의 장시간 근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용시간 규정 부재로 인하여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원칙과 아동의 보육시간을 동일시하면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지 않는 아동까지도 종일제 장시간 보육하여야 하는 부담, 상시 대체 인력이나 비담임교사의 부재 등도 교사 근무환경 약화의 요인이 된다. 실수요자별로 적절한 이용시간 개념 도입을 통한 근본적 교사 근무환경 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2) 보육교직원 교육 및 경력 관리 체계 구축

현재 보수교육 실시 시 직무교육은 40시간 기준으로 1인당 6만원, 승급교육은 80시간 기준으로 1인당 12만원으로 정해진 지원 예산 수준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 교육과 경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보육인력의 자격과 보육경력, 평가인증과 같은 특수한 경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인력관리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연계하는 전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3) 보육인력 자격체계 개편 및 급여 수준 조정

중장기 과제로 학력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격 기준은 개선한다. 보육교사의 학력을 전문대, 4년제 학사출신으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학과 중심의 자격검정으로 체계를 개선하여 자질은 담보할 수 없는 과다 공급 요인을 해소한다.

기준 학력 조정과 함께 보육교사의 기본급을 상향조정하고 학력 차이를 호봉에 반영한다. 인건비가 높은 경력자가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근무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준의 수당을 지원하는 주임교사제도를 신설하여 전문학사와 학사취득자 간의 차별과 교사 경력에 따른 장기근무자를 우대하는 차등화를 도입한다.

아. 지도·점검의 실효성 확보

어린이집의 다수는 개인이 운영 주체이다. 특히 개인이 투자,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부모 참여와 운영 투명성 제고, 정보의 공개 강화 등 재정 지원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주요 정책과제이다.

1) 정보 공개

현재 서울형과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보 공개 대상이 되고 있고, 평가인증 결과도 가감없이 모두 공개하였다. 기관의 운영관련 정보의 공개는 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이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기본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특별활동 등 외부 사업체와의 계약 관련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2) 재무회계 관리 체계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만들어 일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보고를 추출하여 점검하도록 한다. 현재 매달 어린이집에서 월 결산자료를 재무회계 전산 양식에 입력은 하고 있지만, 이를 검토할 수 있는 행정 인력은 부족하고 또한 재무회계 계정과목 관-항-목으로는 어린이집의 운영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재무회계전산시스템 개편과 계정과목을 개정하여 예산 사용 상태가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3) 각종 평가와 점검 체계 정리

현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부모모니터링, 아이사랑모니터링, 행정 담당자 지도 점검 등의 여러 가지 종류의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점검 대상인 항목이나 기준들도 다 제각각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나 교사 입장에서 중복 점검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피로 정도가 높고, 이는 무엇보다도 아동보육에 소홀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검들이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반적 지도체계를 점검하여 체계화하여야 한다.

2. 맺는 말

본 보고서는 2013년 보육정책의 실적을 검토하고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주요 지표를 산출하였고, 개별 정책으로 양육수당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분석하였다.

2013년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보육료 지원 확대 결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었고 누리과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부분적으로 공통 요인을 만들어냈다. 질 높은 어린이집의 확보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도 그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으로 채택한 공공형 어린이집도 100여개가 넘게 지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재정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2012년부터 부각된 어린이집에서의 각종 부적절 사례들은 비용 지원 확대와 더불어 규제 강화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증가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다. 재정 투자를 늘리고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개선해 나가는 할 것이다.

특히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 특성이 보육의 질은 담보하는데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기관의 공공성과 투명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주요 정책과제가 되었다. 자가 시설로의 제한 등 진입 과정은 개선되어야 하고, 아울러 평가인증 제도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와 재정지원을 연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모두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보육정책의 획일성은 취업모, 전업주부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 공급에 실패하였다. 이용시간과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부모-자녀 이용시설 확대, 양육수당 정책을 포함하여 수요자 맞춤 서비스의 제공 강화가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 재정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가장 소홀해 온 것으로 비판받는 교사의 처우는 누리교사 수당과 영아 교사 수당 지급으로 조금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교사 급여와의 격차가 커지면서 만족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급여나 근로기준법 준수와 같은 전반적인 근로환경의 개선의 지속적 개선과 더불어 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의 개선은 앞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가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모니터링, 운영위원회 등 어린이집 운영에의 부모 참여 확대, 어린이집의 다양한 운영 정보 공개, 재무회계 적용 등도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2). 2012년 여성과 취업. 고용노동부.
- 교육부(2013). 예산 내부자료.
- 기획재정부·국방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2013. 6. 10). 보도자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http://www.mosf.go.kr에서 인출)
- 김은설·황성온·정영혜(2012).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경상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김재환(2009).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기준·평가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4), 141~173.
- 농림축산식품부(2013). 주요 사업보고.
- 변용찬·서문희·이상현(2001). 보육료 지원사업 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1. 4. 26). 보도자료: “민간 어린이집이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거듭나는 길”(http://www.mw.go.kr에서 인출)
- 보건복지부(2013. 1. 30). 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최초 공표”(http://www.mw.go.kr에서 인출)
- 보건복지부(2013. 5. 8). 보도자료: “’13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 3,820억원으로 확정”(http://www.mw.go.kr에서 인출)
- 보건복지부(2009-201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8-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8-201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2011-2013).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내부자료.

- 서문희·김은기·이정원·송신영·원종욱(2010). 평가인증 활성화 및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안재진·최혜선·소마 나오코(2009).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효과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송신영(2011).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송신영(2013).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경감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상현(2001). 보육사업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여성가족부(2003-2008).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05-200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0-2012). 아이돌보미 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림·도남희·권미경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조병구·조윤희(2007). 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보고서: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한국개발연구원.
- 제갈현숙·김송이(2010).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공보육 확대를 위한 원칙. 사회공공연구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내부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2012). 내부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내부자료.

행정안전부(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통계.

Piketty, T.(1998). L'impact des incitations financières au travail sur les comportements individuels: une estimation pour le cas français. *Economie et prévision*, 132~133.

Abstract

Achievements of the Childcare Policy in 2013 and Future Tasks

Moonhee Suh Hyemin Lee

In the year 2013, free childcare had been achieved. Three to five year old children were provided with Nuri Curriculum, the common curriculum for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long with a full childcare cost subsidy. Non-users of all income classes were also supplied with child-rearing costs.

This research exercise was launched to review the childcare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esearch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budget-based projects including childcare facility supply, government subsidies to childcare centers, service quality management and child rearing benefits for non childcare center or preschool users. Among the policies examined, the pilot project for running government-approved childcare centers and child rearing benefit for non childcare center or preschool users examined closely.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the future direction and matters for improvement have been presented.

As in the case of policy changes including full childcare subsidy for all users, the childcare budget has gradually increased; the proportion of the childcare subsidy to the nation's GDP accounted for 0.325% in 2013, while the total childcare budget to GDP was 0.64%. In 2012, the childcare center supply rate stood at 61.1% and the childcare service usage rate to the number of children was 51.8%. Additionally, the usage rate of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s to the number of children stood at 10.8%. As of April 2013,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pass rate was 85.1%, while less than 70 are sustaining the quality level. In 2013,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results was disclosed to the public in order to utilize the

evaluation results, while failing to contribute to enhancing childcare service quality in the absence of financial support. It was recommended that uniting the system was mandatory and necessary.

Regarding government-approved childcare centers was launched in the second half of 2011 and extended to 1,000 childcare centers in 2013, the effectiveness of the designation standards was examined with those personnel most concerned with childcare. In general, designation standards change was positively evaluated. Meanwhile, the cut-off point for designation as government-approved childcare centers needed to be raised, and subsidies should be provided directly to the children concerned or on a class basis. Three quarters of expert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possibility of public childcare centers replacing national childcare centers. Parents' overall satisfaction levels were similar to that of national childcare center users, while on the quality of meals and snacks were lower. Also, the number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were relatively higher. In terms of childcare center operation standards, use of the Clean Card and observance of the guidelines 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ve been suggested as measures to be implemented.

Childrearing subsidies were mostly given to infants. The implementation of an additional policy regarding the control of the use of childrearing subsidies was not necessary due to the high rate of proper use. The younger the child was the proportion of lower income families was larger. Parents who quit their jobs after receiving the subsidies were 14.7% and those who worked lesser hours were 3.2%. Parents of children under 1 who quit their jobs were 22.7% and 5.9% reduced their work, which still shows the possibility of childrearing subsidies affecting the employment of mothers. Thus calls for responsive measures in executing future policies. Although the results are from the survey held at the period of introduction of the policy, the effectiveness of childrearing subsidies were high, notifying an achievement. Proposals to switch cash subsidies to vouchers were disapproved by 85.5% of the parents. Since the policies for subsidies and vouchers are distinct, maintaining the ready money subsidies are judged to be appropriate.

부 록

부록 1. 시·도 특수보육시책

부록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과 배점

부록 3. 공공형 어린이집 전문가 조사표

부록 4. 공공형 어린이집 부모 조사표

부록 5.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표

부록 1. 시·도 특수보육시책

〈부표 III-2-1〉 서울시 특수보육시책: 2013

단위: 천원, %

내용	시 예산	시 분담비율
시 소계	259,966,318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88,500,519	30~100
서울형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제 운영	500,000	50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원장, 교사 처우개선비, 교사 중식비 등	77,006,611	50
법정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차액 및 현장학습비 지원	542,754	50
천기저귀 지원	362,880	100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 지원	144,000	100
보육시설 배상보험지원	1,136,000	100
보육시설 기능보강(민간보육시설서비스향상)	1,216,800	100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69,000,000	50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173,500	50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171,000	50
장애아 시설 운영비 지원	1,416,930	50
장애아 보육지원센터 지원	461,883	50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비	125,000	50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160,000	100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인건비지원	1,972,713	50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	609,950	50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218,248	100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지원	10,229,440	50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600,925	100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508,165	100
서울상상나라 건립 운영(구서울키즈센터건립)	2,889,000	100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20,000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부표 III-2-2〉 대구시 특수보육시책: 2013

단위: 천원, %

내용	시 예산	시 분담비율
시 소계	4,823,142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국공립, 법인시설 교사 수당 포함)	2,911,000	50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840,000	50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210,000	50
정부지원시설 교재구입비	100,000	50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활성화	85,000	100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324,000	100
방과후보육교사 인건비	15,817	50
시청 어린이집 운영 및 기능 보강 지원	324,500	100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12,825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부표 III-2-3〉 부산시 특수보육시책: 2013

단위: 천원, %

내용	시 예산	시 분담비율
시 소계	11,330,440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294,500	100
정부지원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150,000	100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원	6,790,000	100
평가재인증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구수당	972,000	100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수당	150,000	100
다자녀가정 보육료 지원	120,480	100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	659,000	100
영아어린이집 전문보육 도우미 배치	300,000	100
영아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30,000	100
민간어린이집 공보육 운영 지원	1,122,000	100
초등학교 내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60,000	100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쿨 운영	12,500	100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 지원	30,000	100
시 아이사랑 보육모니터단 운영	15,360	100
보육지원센터, 장남간도서관 운영 지원	460,000	100
공립 한빛어린이집 자연체험학습장 조성 지원	100,000	100
보육유관기관 단체지원	64,600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부표 III-2-4〉 인천시 특수보육시책: 2013

단위: 천원, %

내용	시 예산	시 분담비율
시 소계	13,652,982	
보육시설지원 사업	134,000	100
평가인증지원 사업	95,000	100
육아지원사업	30,000	100
교재교구 대여	400,000	100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29,640	100
만5세아 공통과정 직무교육	50,000	100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69,630	50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	8,668	50
법정 저소득중아동 필요경비 지원	1,304,000	50
법정 저소득중아동 민간차액 지원	455,040	50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89,440	50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398,169	50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96,000	50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700,000	50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57,600	50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	175,000	50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7,458,000	50
대체교사 인건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38,707	50
보육정보센터, 보육상담실 운영	140,000	50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995,000	50

(부표 III-2-4 계속)

내용	시 예산	시 분담비율
만4세아 무상보육료	706,588	50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찾아가는 부모교육)	100,000	50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정보 사업	122,500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부표 III-2-5〉 광주시 특수보육시책: 2013

단위: 천원, %

내용	시 예산	시 분담비율
시 소계	3,618,000	
셋째아 보육료	500,000	50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92,000	50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12,000	50
민간시설 도서구입비	228,000	50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1,800,000	50
평가인증 시설 지원	200,000	50
평가인증 조력 지원	50,000	100
보육인 역량증진	50,000	100
보육시설 아동 현장학습	12,000	100
보육시설 안전공제	374,000	100
보육도우미 파견	300,000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부표 III-2-6〉 대전시 특수보육시책: 2013

단위: 천원, %

내용	시 예산	시 분담비율
시 소계	17,478,66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800,000	100
보육교사 시간 외 근무수당	1,680,000	100
특수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수당	2,016,000	50
영유아반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100,000	50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1,440,000	50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369,360	100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800,000	100
차량 유지비	40,500	50
교재 교구비	33,600	50
보육시설 도서구입비 지원	219,900	100
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117,383	50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조교사 수당	352,500	50
영유아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600,000	100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582,048	100
특수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126,180	50
셋째아 보육료 지원	1,080,000	50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265,050	100

(부표 III-2-6 계속)

내용	시 예산	시 분담비율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	197,500	50
평가인증 조력지원	2,850	100
평가인증 어린이집 프로그램 개발비	469,800	100
어린이집 교원 교육	5,000	100
도 및 시 영유아지원센터 운영	28,300	100, 50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000	100
보육 교재교구 개발평가 및 전시회, 행사 등	49,860	100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및 인력은행 지원	99,813	50,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부표 III-2-7〉 울산시 특수보육시책: 2013

단위: 천원, %

내용	시 예산	시 분담비율
시 소계	12,432,056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625,840	50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60,000	50
영아 장애아반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266,400	50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132,000	50
국공립 법인취약 보육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180,000	50
24시간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부담 인건비 지원	19,560	50
노후장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432,000	50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172,800	50
법정저소득층 차액 보육료 지원	109,756	50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	900,000	50
만5세아 보육료	5,550,600	50
만5세아 누리과정 종일반비	1,766,100	50
보육시설 부모교육	10,000	50
보육시설 성폭력 예방 교육사업	10,000	50
보육시설 영양사 순회 파견사업	23,000	50
종사자 교육 및 연수 지원	50,000	50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	15,000	50
장애아 통합보육 지원	29,000	50
대체인력 지원 사업	30,000	50
보육주간행사	50,000	5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부표 III-2-8〉 경기도 특수보육시책: 2013

단위: 천원, %

내용	도 예산	도 분담비율
도 소계	179,339,968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4,634,400	50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3,214,321	50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12,105,960	50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8,694,680	50

(부표 III-2-8 계속)

내용	도 예산	도 분담비율
대체인력인건비	3,356,667	50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	2,177,729	50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536,350	50
장애아 교사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9,193,800	50
0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	8,366,669	50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944,400	50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	198,767	50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3,476,880	5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000,000	50
아이리브담 카페 운영	1,880,000	50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68,000	50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3,120,000	50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신규)	900,000	50
도 보육정보센터지원(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235,145	100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활성화	250,000	100
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 설치 운영(신규)	400,000	100
지도점검 활성화 여비(신규)	5,400	100
실내용 공기질 자동 측정 장비(신규)	37,400	100
부모되기 지원, 육아상담서비스 운영	60,000	100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설치운영	278,500	100
세미나, 보육정책위원회, 경기보육인대회 등	105,900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부표 III-2-9〉 강원도 특수보육시책: 2013

내용	단위: 천원, %	
	도 예산	도 분담비율
도 소계	1,601,940	
저소득층아동 입소지원	42,280	50
동절기 난방비	87,300	50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53,140	50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89,120	50
종사자 격무수당	168,000	50
장애아전담시설 보육교사 수당	10,800	50
보육교사대체인력 지원	24,500	50
강릉시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15,000	50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196,800	50
강원어린이집 한마음 대회	15,000	5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부표 III-2-10〉 충북과 충남 특수보육시책: 2013

단위: 천원, %

내용	도 예산	도 분담비율
충청북도	3,271,536	
도 소계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10,000	100
평가인증 조력사업 지원	10,000	100
보육시설 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교육지원	10,000	100
보육시설 도서 장난감 구입	40,000	100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2,654,496	50
평가인증시설 참여 수수료 지원	19,740	50
평가인증시설 환경 개선비 지원	85,800	50
장애아 전담시설 운전원 인건비 지원	59,000	50
어린이집 석면 및 실내공기 질 조사비용 지원	126,800	100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공제료 지원	52,000	50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지원	37,200	50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94,500	50
보육사업안내 책자 유인, 행사 지원 등	72,000	100
충청남도	10,363,560	
도 소계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도비 30%)	1,548,000	50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 지원(도비 20%)	38,760	50
보육두레 운영비 지원(도비 30%)	5,400	50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도비 20%)	4,355,460	50
인건비지원시설 교재교구비(도비 20%)	64,800	50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지원	900,000	50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도비 20%)	1,344,000	50
대체교사 인건비(자체)(도비 20%)	72,000	50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도비 30%)	25,740	50
셋째아 무상보육료 지원(도비 30%)	1,859,800	50
야간어린이집 운영	30,000	50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지원	99,600	50
보육의 날 행사 및 교재교구 작품 평가대회	20,000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부표 III-2-11〉 전북 특수보육시책: 2013

단위: 천원, %

내용	도 예산	도 분담비율
도 소계	3,412,630	
민간, 가정 보육시설 농어촌 차량 운영비	63,000	50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2,715,480	50
장애아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	20,650	50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303,500	50
보육교사 양육기술향상교육	20,000	100
보육시설 기능보강	25,000	100
시단위 보육정보센터설치	200,000	100
보육인 한마음대회, 부모 설명회	65,000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부표 III-2-12〉 전남 특수보육시책: 2013

단위: 천원, %

내용	도 예산	도 분담비율
도 소계	12,659,020	
영아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21,600	50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냉난방비 지원	19,500	50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	791,000	50
시단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61,920	50
평가인증 조력사업	55,000	100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지원	11,032,000	50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3,000	100
종사자 한마음 대축제, 연찬회 등 행사 지원	84,000	50-1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부표 III-2-13〉 경북과 경남 특수보육시책: 2013

단위: 천원, %

내용	도 예산	도 분담비율
경상북도		
도 소계	66,681,584	
어린이집 활성화 프로그램	10,000	100
평가인증 조력 프로그램 운영	80,000	100
어린이집 부모 교육	20,000	100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운영	30,000	100
장애아 (통합)보육 프로그램 운영	25,000	100
어린이집 교직원 순회 교육	10,000	100
다문화 보육 프로그램 운영	35,000	100
저소득 보육 아동 간식비	8,333,334	50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	290,000	50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257,758	50
보육 교직원 수당 지원	9,710,325	50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지원	360,000	50
보육아동 장애 조기 검진비	16,667	50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480,000	50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64,000	50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500,000	50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200,000	50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기능 보강	1,933,000	50
장난감 도서관 운영	334,000	50
장애 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168,000	50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운영	20,000	100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비	182,500	50
만5세아 누리과정	42,804,000	100
방과후 보육료	648,000	50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지원	94,500	50
보육인 대회, 정책홍보, 어린이집연합회 지원 등	170,000	50-100

(부표 III-2-13 계속)

내용	도 예산	도 분담비율
경상남도		
도 소계	6,132,615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지원	284,168	50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212,000	50
셋째아 무상보육료	1,021,111	50
평가인증 조력비 지원	70,000	100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405,336	50
보육시설단체운영 및 행사 지원	40,000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부표 III-2-14〉 제주 특수보육시책: 2013

내용	단위: 천원, %	
	도 예산	도 분담비율
도 소계	142,000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도)	100,000	50
제주 삼다 공동육아 운동 프로그램 운영	8,000	100
장애아 통합 보육지원센터 지원	80,000	100
영유아 세시풍속 전통 문화체험사업	5,000	100
제주생태 공동체 전통육아 캠페인	5,000	100
토론회, 국제세미나 등 행사	44,000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부록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과 배점

〈부표 IV-1-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과 배점

배점 항목	2012년 현행			2013년 변경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 평가인증 접수	35점			35점		
○ 평가인증 접수 97.5점 ~ 100점	35점			35점		
○ 평가인증 접수 95점 ~ 97.49점	30점			32점		
○ 평가인증 접수 92.5점 ~ 94.99점	28점			30점		
○ 평가인증 접수 90점 ~ 92.49점	25점			28점		
□ 놀이터 구비 (기본 신청자격)						
○ 정원 50인 이상 시설 중 자체부지에 3종 이상 놀이기구가 구비된 옥외놀이터 구비 시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으면 가점 인정)		3점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본 신청자격)						
□ 건물 소유이용형태	20점			20점		
○ 자가 전용 어린이집	20점			20점		
○ 자가 복합 어린이집	10점			15점		
○ 임대 전용 어린이집	5점			10점		
○ 임대 복합 어린이집	0점			5점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3점			2점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5점			3점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7점			7점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10점			10점
□ 보육교직원 전문성	30점			35점		
○ 1급 보육교사 비율	20점			30점		
- 70% 이상 *농어촌 50% 이상	20점			30점		
- 60% 이상 70% 미만 *농어촌 40% 이상 50% 미만	14점			24점		
- 50% 이상 60% 미만 *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8점			13점		
- 45% 이상 50% 미만 *농어촌 25% 이상 30% 미만(구간 신설)				5점		
- 45% 미만 *농어촌 25% 미만(조정)				0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10점			5점		
- 15년 이상	10점			5점		
- 7년 이상 15년 미만	7점			3점		
- 7년 미만	5점			1점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점			최대 5점			최대 5점
-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2점			3점	
- 원장의 최종학력이 보육관련 석사 이상		1점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 교사 경력이 3년 이상					1점	
-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1점	

(부표 IV-1-1 계속)

배점 항목	2012년 현행			2013년 변경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input type="checkbox"/>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10점			5점		
- 2개 이상 실시	10점			5점		
- 1개 실시	7점			3점		
- 미실시	4점			1점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정보공개		4점			4점	
- 모두 공개		4점			4점	
- 3-4개 공개		1점			1점	
- 3개 미만 공개					0점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여부		2점				
<input type="checkbox"/>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5점			5점		
<input type="checkbox"/>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이상 충족					3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3점	
<input type="checkbox"/>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3점	
<input type="checkbox"/>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최대 10점	
	100점	12점	15점	100점	28점	15점

부록 3. 공공형 어린이집 전문가 조사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34조에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조사표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희 선임연구위원(02-398-7711, suhmh@kicce.re.kr)

이혜민 연구원(02-398-7727, hmlee@kicce.re.kr)

※ 귀하의 인적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이름	
성별	남 () 여 ()
소속기관	
직위	

육아정책연구소

□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 하거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공공형 어린이집은 설치기준 준수, 평가인증 90.00점 이상, 정원충족률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건물 소유-이용 형태, 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등 세부 선정기준에 의한 총 합계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고득점순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원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받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료와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의 보육교사 급여 지급, 어린이집 정보 공개 별도의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관리체계에 따라 품질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운영 및 관리 체계, 지원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방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자격 기준의 적절성

1.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제외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도 예외없이 적용)	①	②	③	④	⑤	
2)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3) 대표자가 다른 시설 원장으로 재직 중이거나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도 설치·운영 중인 경우	①	②	③	④	⑤	

2. 공공형 어린이집 기본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신청자격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2)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3) 2)번의 경우, 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완화하여 적용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세부 항목별 점수 배점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5.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점수 배점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절한 배점은 무엇입니까?

항 목	점수	1) 항목별 배점이 적절합니까?	2)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절한 배점을 적어 주세요
1) 평가인증 점수	35점	___ ① 매우 부적절	점
2) 건물 소유·이용 형태	20점	___ ② 부적절	점
3) 보육교사 전문성	30점	___ ③ 보통	점
4) 원장 전문성	5점	___ ④ 대체로 적절	점
5)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5점	___ ⑤ 매우 적절	점
6) 지자체 특성화 지표(예시: 일시보육, 주치의제, 석면검사 및 무검출, 시범사업 참여 등)	5점		점

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별 점수 배점이 보육서비스 질을 평가할 정도의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 항목	점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평가인증점수							
① 평가인증 점수 97.50점~100점	35점						
② 평가인증 점수 95점~97.49점	32점	①	②	③	④	⑤	
③ 평가인증 점수 92.50점~94.99점	30점						
④ 평가인증 점수 90점~92.49점	28점						
2) 건물 소유·이용 형태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20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5점	①	②	③	④	⑤	
③ 임대 전용 어린이집	10점						
④ 임대 복합 어린이집	5점						
3) 보육교직원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							
① 70% 이상 *농어촌 50% 이상	30점						
② 60% 이상 70% 미만 * 농어촌 40% 이상 50% 미만	24점						
③ 50% 이상 60% 미만 * 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13점	①	②	③	④	⑤	
④ 45% 이상 50% 미만 * 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5점						
⑤ 45% 미만 * 농어촌 25% 미만	0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① 15년 이상	5점						
② 7년 이상 15년 미만	3점	①	②	③	④	⑤	
③ 7년 미만	1점						
4)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 다문화 보육 중)							
① 2개 이상 실시	5점						
② 1개 실시	3점	①	②	③	④	⑤	
③ 미실시	1점						
5) 지자체 특성화 지표 (예시: 일시보육, 주치의제, 석면검사 및 무검출, 시범사업 참여 등)							
	5점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세부 항목의 가점·감점 배점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7.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중 다음 세부항목에 대해 가점을 할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 항목	가점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현 어린이집 근속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3점	①	②	③	④	⑤	
2) 원장의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1점	①	②	③	④	⑤	
3)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1점	①	②	③	④	⑤	
4) 어린이집 비용 등 정보에 대한 공개(아이사랑보육포털 연계) (어린이집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							
① 모두 공개	4점						
② 3~4개 공개	1점	①	②	③	④	⑤	
③ 3개 미만 공개	0점						
5) 총 현원대비 유아현원 30% 이상 충족	3점	①	②	③	④	⑤	
6)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3점	①	②	③	④	⑤	
7)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3점	①	②	③	④	⑤	
8)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최대 10점	①	②	③	④	⑤	

8. 귀하는 다음 세부항목에 대해 감점을 할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 항목	감점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건물 소유 형태	①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00% 미만	2점					
	②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00% 이상 10.00% 미만	3점	①	②	③	④	⑤
	③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00% 이상 15.00% 미만	7점					
	④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00% 이상	10점					
2)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①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점	최대 5점					

3.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정원별로 구간을 정하여 구간당 일정 액수를 다음과 같이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20인 이하	21~49인	50~76인	77~97인	98~123인	124인 이상
96만원	248만원	440만원	560만원	824만원	870만원

12. 어린이집 정원 구간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현재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법	의견
1) 운영비를 정원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	__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
2) 구간을 나눌 경우에 위와 같이 6개로 나누는 방식	__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

13. 운영비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구간 세분화
- ② 구간 지원금 상향조정
- ③ 반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④ 기타(무엇: _____)

4.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체계

14. 귀하는 다음의 사후 관리체계가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평가인증 점수 90점 유지	①	②	③	④	⑤	
2) 취약보육 1개 이상 실시	①	②	③	④	⑤	
3)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와 동일	①	②	③	④	⑤	
4) 담임교사 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 지급	①	②	③	④	⑤	
5) 평일 7:30분까지 12시간 운영	①	②	③	④	⑤	
6) 특별활동 관리지침 준수	①	②	③	④	⑤	
7)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①	②	③	④	⑤	
8) 어린이집 상세 운영 정보 공개(아이사랑보육포털)	①	②	③	④	⑤	
9) 공공어린이집 선정 기준 준수	①	②	③	④	⑤	
10)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 의무 참여	①	②	③	④	⑤	

5.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 관련

15.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대체 가능 _____ ② 어느 정도 가능 _____ ③ 불가능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6.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전반적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가능 _____ ② 어느 정도 가능 _____ ③ 불가능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7.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전체 어린이집의 5% 미만(국공립어린이집보다 적은 수준)
 _____ ② 전체 어린이집의 5%(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 수준)
 _____ ③ 전체 어린이집의 5~10%
 _____ ④ 전체 어린이집의 10~20%
 _____ ⑤ 전체 어린이집의 20% 이상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8.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몇 %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민간어린이집의 10% 미만 _____ ② 민간어린이집의 10~20%
 _____ ③ 민간어린이집의 20~30% _____ ④ 민간어린이집의 30~40%
 _____ ⑤ 민간어린이집의 40~50% _____ ⑥ 민간어린이집의 50% 이상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장시간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4. 공공형 어린이집 부모 조사표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표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어린이집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질문지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희 선임연구위원 02-398-7711 이해민 연구원 02-398-7727

가구 정보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도시 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전화번호						
시설 정보										
어린이집명										
유형	① 국공립	② 민간	③ 가정	시설코드						

조 사 지 침

- 첨부한 명단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명단입니다.
- 코드번호는 조사 대상 명단에 있는 번호를 그대로 이기합니다.

육 아 정 책 연 구 소

5-2 귀하는 공공형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어느 정도 그렇다
- ⑤ 잘 모르겠다
- ③ 조금 다르다
- ④ 전혀 다르다

5-3.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점이 어린이집 신규 이용 및 계속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 ③ 많이 영향을 미쳤다
- ④ 비해당

5-4. 귀하가 생각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렴한 부모 보육료
- ② 정부의 철저한 관리에 따른 신뢰
- ③ 1인당 높은 보육비용 투자
- ④ 질 높은 교사
- ⑤ 깨끗한 외부 환경
- ⑥ 기타(_____)

5-5. 귀하는 아이사랑 포털을 통하여 이 자녀가 다니는 공공형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아이사랑 포털에 들어가서 어린이집 정보를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어린이집 정보 공개 인지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2) 어린이집 공개 정보 검색	① 검색해 본적 없음 ② 1번 들어가 보았음 ③ 가끔 이상 들어가 보았음 ④ 자주 들어감. ④ 자주 들어감. ⑧ 비해당(모름)

6.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만 질문)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들어본 적이 있다
- ② 잘 안다
- ③ 모른다(9번 질문으로).

6-1.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다는 점과 정부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보육료가 국공립어린이집과 같다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6-2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어느 정도 그렇다
- ⑤ 잘 모르겠다
- ③ 조금 다르다
- ④ 전혀 다르다

7. 지난 8월 한 달 동안 어린이집에 납부한 금액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항목	금액
특별활동비	()원
기타 비용	()원
총계	()원

8. 8월에 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 받은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은 몇 개입니까?	()개
2)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① 모두 선택 가능 ② 일부는 선택 가능 ③ 모두 의무 수강

9. 자녀 부모의 연령, 학력, 취업상태를 질문합니다.

구분	부	모
1) 부모의 만 연령을 질문합니다.	만()세	만()세
2) 부모의 학력을 질문합니다. ① 고졸 이하 ② 전문(3년제)대학 졸 ③ 4년제대학 이상 ④ 대학원 이상 ⑤ 비해당(부재, 사망, 이혼)		
3) 부모의 취업상태를 질문합니다. ① 종일제 출근 ② 시간제 출근 ③ 휴직 중 ④ 자영업(가족 고용) ⑤ 재택(가내) 작업 ⑥ 미취업 ⑨ 비해당		
4) 귀댁의 한달 가구 소득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① 149만원 이하 ② 150~199만원 ③ 200~249만원 ④ 250~299만원 ⑤ 300~349만원 ⑥ 350~399만원 ⑦ 400~499만원 ⑧ 500~599만원 ⑨ 600~699만원 ⑩ 700만원 이상		
5) 귀하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해당 아동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① 모 ② 부 ③ 조부모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

부록 5.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표

지역번호	—	시도	—	조사표 번호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양육수당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제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4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 사 지 침

- 아동코드는 조사 대상 명단에 있는 연번(예: 0001)을 그대로 이기합니다.
- 연령 등을 파악해서 조사 대상 명단에 있는 아동을 확인하고 그 아동을 중심으로 질문하여야 합니다.
- 한 가구에서는 한 아동만 대상으로 질문하세요.

육 아 정 책 연 구 소

※ 귀댁에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살이고, 이름은 무엇인지요?
 (양육수당을 모르는 경우 설명 필요.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직접 계좌로 현금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함.)

1. 귀 가정의 총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1

1-1. (1명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의 출생순위는 무엇입니까?
 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 1-1

1-1-1. (②,③ 둘째아 이상일 경우) 초등학교 이상의 형제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1-1-1

2. 귀하께서 올해 3월에 받으신 양육수당은 처음 받으신 것입니까?
 ① 처음 받음 ② 3월 이전부터 받아옴 2

3. 귀댁 가족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① 양부모 가족 ② 부자가정 ③ 모자가정 ④ 기타() 3

3-1. 귀댁은 조부모님이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동거 조부모 ② 조모만 동거 ③ 조부만 동거 ④ 비동거 3-1

4. 귀댁 자녀는 최근(작년 12월~올 2월) 기관을 다닌 적이 있습니까?
 (여러 군데의 경우, 가장 최근에 다닌 기관을 기준으로 함)
 ① 어린이집에 다녔음 ② 유치원에 다녔음
 ③ 다른 기관에 다녔음 ④ 아무데도 안 다녔음 4

4-1. (①,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녔다고 응답한 경우만)
 그 곳에 다니는 것을 중단한 것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까?
 ① 그러함 ② 양육수당과 무관함 ③ 기타 4-1

5. 귀댁의 자녀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외한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 다니고 있음 ② 아무데도 안 다님 5

5-1. (① 다니는 경우) 그 기관의 종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영어학원 ②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③ 시간제 특기 학원
 ④ 시간제 보육 ④ 기타() 5-1

5-2. (① 다니는 경우) 그 기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① 주 5일 이상 ② 주 3-4일 ③ 주 1-2일 ④ 월 1-3일 5-2

6. 자녀를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가정에서 키우려고 ② 마땅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어서
 ③ 아이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④ 다른 곳에 보내려고
 ⑤ 양육수당이 가계에 보탬이 되므로 ⑥ 기타() 6

7. 이 아이를 키우는데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나요?
 보육·교육비 _____ 원
 기타 비용 _____ 원 7

 원

연구보고 2013-28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이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6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56-5 93330